

釜山史料叢書 13

국역왜인구칭등록(Ⅲ)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6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왜인구청등록 전 8책(인조 15년, 1657년 ~ 경종 4년, 1724년) 중 제 3책(1665. 1 ~ 1676. 11)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외교 및 무역과 관계되는 공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을 하되, 외교 및 무역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시대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썼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부터는 국역 왜인구청등록(Ⅰ)과 (Ⅱ)에서 사용된 이두, 인명, 용어 등이 특별하게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각주 처리는 하지 않았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1665. 1 ~ 1676. 11)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해제 13

□ 乙巳(1665년, 顯宗 6년)

- 1월 13일 代官倭가 前日 求貿之物의 下送 催促 49
 - 該曹와 各道에서 倭人求貿物種을 急速 輸送토록 할 것
 - 倭人求貿 有毛熊皮는 五六令으로 減數하여 下送할 것
 - 該曹回關 傳達을 잘못된 撥將을 重治할 것
- 16일 館守倭가 江戶所用 求貿物 5種을 許貿 및 丹青別堂營造 要請 51
 - 人蔘, 苧布는 防塞하고 나머지는 量減하여 許貿할 것
 - 丹青別堂의 營造 要請은 防塞할 것
- 3월 16일 館守倭가 島主 求貿物 7種의 許貿 要請 53
 - 紅氈 等 5種은 防塞하고 活鶯 等 2種은 減數 許貿할 것
- 24일 頭倭가 江戶執政 求貿物인 白馬尾蠅鞭과 前日 求請한 胡桃 等の 許貿 要請 54
 - 蠅鞭은 50柄만 造給하고 나머지는 白馬尾로 隨得 許貿할 것
 - 前日 求貿物인 胡桃, 柏子, 葦末은 折半 許貿할 것

- 4월 25일 代官倭가 前日 造給한 螺鈿의 未盡之事로 螺鈿匠의 招給 要請 …… 56
 - 螺鈿匠은 許給하고 同匠人을 依前名數로 定送할 것
- 5월 17일 頭倭가 大君求請物인 月羅兒馬의 質得 要請 …………… 56
 - 慶尙道에서 急速 計給할 것
- 20일 差倭 橘成陳이 別求請雜物 28種의 許質 要請 …………… 57
 - 虎肉 等 4種은 慶尙道에서 從便 覓給, 人蔘 等은 該曹에서 措備 下送할 것
 - 鷹子 等 나머지 求請物은 防塞할 것
- 8월 4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質物 10種의 許質 要請 …………… 59
 - 紅氈 等 4種은 防塞하고 大眞墨 等 6種은 許質할 것
- 10월 10일 慶尙監司가 大君求請 月羅馬의 搜得不可로 他道 覓送을 要請 …… 60
 - 忠淸, 全羅道에 大君求請馬 從便廣求 指示
- 9월 4일 館守倭가 島主 求質物 3種 許質 및 入給한 蠅鞭의 改備加 數造給 要請 …………… 62
 - 紅氈 等 3種은 減數許質하고 蠅鞭은 精造改備 및 準數 造給할 것
- 7일 紅氈 等 唐物 3種은 防塞하고, 蠅鞭 50柄은 精造許質할 것 …… 64
- 16일 慶尙道에서 島主求質月羅兒馬의 搜得入給으로 他道 覓送 中止 指示 … 65
- 10월 9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質物인 畫龍筆의 許質 要請 …………… 66
 - 該曹에서 그 見樣에 따라 精造 下送할 것
- 17일 頭倭가 島中所用物인 柏子, 胡桃의 許質 要請 …………… 67
 - 慶尙道에서 折半만 許質할 것

□ 丙午(1666년, 顯宗 7년)

- 1월 5일 倭人求請物 중 紅氈 等 5種은 防塞하고, 大口魚, 柏子は 減數 許質할 것 … 67
 - 人蔘, 活獐, 活鶯, 尾扁은 許質할 것
- 3월 18일 代官倭가 江戶所用物인 各色尾扁 等 6種의 許質 要請 …………… 68
 - 各色尾扁 等은 許質하고, 活鶯은 産出即時 覓給할 것
 - 島主大船 所用物은 釜山의 年例應給分에서 入給

- 3월 25일 頭倭가 前日求請物 黃鶯, 鷹子の 入給 催促 및 油紙 等 4種 許貿 要請 … 69
 - 黃鶯, 鷹子は 急速 入給하고 油紙 等 4種은 減定許貿할 것
- 5월 7일 東萊府使가 倭人求請物 白苧布, 菘豆末의 折半減定 報告 …………… 70
- 5월 10일 倭人求請物 13種을 或減或防할 것 …………… 70
 - 問慰譯官 下送事는 馳啓를 기다려 處理할 것
 - 求貿物에 대한 從不從 및 減定後錄
- 6월 10일 各色大緞 等 3種은 防塞하고, 藥蓼 等 8種은 減半하고, 眞墨은 準許할 것 …………… 72
 - 黃蜜은 折半許貿할 것

□ 丁未(1667년, 顯宗 8년)

- 2월 28일 頭倭가 江戸入往時 所用物 6種 및 島主求貿物 17種의 許貿 要請 …… 73
 - 江戸所用求貿物 중 大緞 等 3種은 防塞하고 나머지는 減數許貿할 것
 - 島主求貿物 중 深衣 等 5種은 許貿하고 나머지는 防塞할 것
- 4월 1일 頭倭가 島主求貿物인 大晝龍燭 15柄 許貿 要請 …………… 75
 - 10柄만 該曹에서 急速造備 下送할 것
 - 備邊司에서 島主求貿 晝龍燭의 元數許貿 要請
- 15일 頭倭가 前日 求貿物 晝龍燭의 入給 催促 …………… 76
 - 晝龍燭 및 差倭回禮禮單을 이미 下送함
- 윤4월 17일 禁徒倭가 島主所用求貿物인 大小眞墨의 許貿 要請 …………… 77
 - 該曹에서 依數 許貿할 것
- 5월 9일 倭人이 島主入往江戸時 所用物로 諸色尾扁 等 4種의 許貿 要請 … 78
- 16일 館守倭가 島主入往江戸時 所用物로 13種의 許貿 要請 …………… 78
 - 大緞 等 9種은 防塞, 活鶯 馬省은 元數 許貿, 苧布, 紅氈은 減數許貿할 것
 - 許貿物目에 대한 減數內容 및 造備該司
- 29일 島主가 江戸上使接待用膳物 3種의 貿送 要請 …………… 80
 - 金海 梁山에서 魚物을 促送해 入給함

- 6월 19일 代官倭가 前日 入給한 深衣 等 7種에 대한 改造를 要請 …………… 81
- 該曹에서 改造下送할 것
- 10월 24일 島主求請藥材 熟地黃을 海西에 分定해 許貿할 것 …………… 82
- 11월 5일 代官倭가 島主在江戶所用物 7種에 대한 許貿 要請 …………… 82
- 黃蜜 等 5種은 依數許貿하고, 代棗 乾柿는 折半 許貿할 것

□ 戊申(1668년, 顯宗 9년)

- 1월 3일 館守倭가 江戶所用物 10種의 許貿 要請 …………… 83
- 白苧布 等 5種은 元數許貿하고 菘豆末 等 5種은 減數許 貿할 것
- 23일 頭倭가 江戶所用藥材인 熟地黃의 求貿 要請 …………… 84
- 熟地黃을 元數許貿할 것
- 2월 9일 頭倭가 江戶所用藥材인 人蔘 30斤 求貿 要請 …………… 84
- 15斤만 該曹에서 許貿할 것
- 25일 頭倭가 江戶所用藥材인 油芑의 許貿 要請 …………… 85
- 慶尙道에서 依數許貿할 것
- 3월 5일 頭倭가 江戶所用藥材인 菘末과 咨筆의 許貿 要請 …………… 86
- 咨筆은 元數許貿하고, 菘末은 200斤만 減數許貿할 것
- 15일 倭人の 菘末加貿 要請으로 300斤을 許貿할 것 …………… 86
- 16일 頭倭가 江戶執政所用物 9種에 대한 許貿 要請 …………… 87
- 油芑 等 6種은 依數許貿하고, 人蔘 等 3種은 減數許貿 할 것
- 24일 此後 島主求貿人蔘은 釜山에서 商蔘을 收合해 入給토록 指示 …… 88
- 4월 23일 禁徒倭가 前日求貿 上品人蔘의 入給 催促 …………… 89
- 倭人에게 商蔘收合 入給時 絶乏品劣 이유를 역관이 설명토록 指示
- 7월 24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貿物인 大口漁와 黃狗皮의 許貿 要請 …………… 89
- 大口漁는 折半許貿하고, 黃狗皮는 依數許貿할 것
- 10월 23일 頭倭가 江戶執政求貿物 16種의 許貿 要請 …………… 90
- 11월 14일 求貿人蔘을 私商에게 收合入給토록 했으나, 倭人이 品劣을 이유로 退却 … 91
- 倭人求貿人蔘을 戶曹에서 急速貿給할 것

- 11월 28일 館守倭가 江戸求貿物인 眞墨 等 5種의 許貿 要請 91
 - 黃毛筆 等 2種은 依數許貿하고, 眞墨 等 3種은 減數許貿할 것

□ 己酉(1669년, 顯宗 10년)

- 1월 21일 館守倭가 江戸求貿物 8種의 許貿 要請 92
 - 虎舌 等 4種은 依數許貿하고, 黃大口漁 等 4種은 減數 許貿할 것
- 3월 27일 代官倭가 島主求貿物인 畫龍筆의 求貿 要請 93
 - 畫龍筆은 依數許貿할 것
- 6월 8일 頭倭가 江戸執政求貿物 4種의 求貿 要請 93
 - 虎皮, 豹皮는 減數許貿하고, 生苧布 白苧布는 依數許貿 할 것
- 8월 20일 倭人이 島主江戸所用物로 咨筆 및 翰林風月の 許貿 要請 95
 - 譯官에게 措辭防塞토록 指示
- 10월 16일 頭倭가 江戸執政所用物 活鯉漁의 許貿 要請 96
 - 東萊府使가 隣近官에 分定覓給할 것을 慶尙監司에게 報告
- 12월 11일 代官倭가 江戸所用物 10種의 許貿 要請 96
 - 活鯉漁 活鶯은 防塞, 木防己 等 8種은 準數許貿, 大乾柿 等 4種은 減數할 것

□ 庚戌(1670년, 顯宗 11년)

- 1월 26일 頭倭가 江戸求貿物 活鯉漁 等の 許貿 要請 98
 - 減數許貿 指示
- 윤2월 22일 代官倭가 求貿物 大口漁 雄鷹의 許貿 및 鐘馨 等の 鑄造匠人 起送 要請 98
 - 東萊府使가 大口漁는 이미 入給하고 鑄造匠人은 境內 鋤匠 起送을 報告
- 3월 7일 代官倭가 島主在江戸所用物 7種의 許貿 要請 99
 - 活獐 等 4種은 減數許貿하고, 生鵲 等 3種은 依數許貿할 것
- 4월 2일 頭倭가 江戸執政求貿物 柏子 乾大口漁의 許貿 要請 100
 - 各各 半減하여 慶尙道에서 許貿할 것

- 4월 16일 慶尙監司가 倭人求請柏子 折半의 原裏道 移定 要請 …………… 100
- 慶尙道에서 賃得하여 推移輸送할 것
- 6월 1일 代官倭가 求賃한 活鶯, 活鶻을 東萊府使가 防塞함 …………… 101
- 29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賃物 書冊 7種과 紅氈, 唐鞍의 許賃 要請 … 102
- 大學章句補遺 等 3種만 許賃하고 沙器之土는 慶尙道에서 量宣覓給할 것
- 7월 16일 頭倭가 島主身柄所用藥材 18種의 許賃 要請 …………… 103
- 求賃藥材는 依數許賃하되 熟地黃, 生地黃은 黃海道에서
- 8월 15일 慶尙監司가 島主求賃藥材 중 牛膽, 天南星, 滑石의 下送을 催促함 … 104
- 牛膽, 天南星은 兩醫司에서 이미 下送하고 滑石은 忠淸道에서 直輸함
- 9월 7일 頭倭가 江戶執政求賃物 唐貂皮 等 3種 許賃 要請 …………… 105
- 唐貂皮, 唐鐵鯨은 防塞하고, 常貂皮는 折半 許賃할 것
- 10월 5일 頭倭가 島主身柄所用藥材 18種의 許賃 要請 …………… 106
- 11월 12일 島主求請虎舌 5部를 慶尙道에서 許賃할 것 …………… 107
- 12월 4일 頭倭가 江戶求賃物 柏子 30石 等 3種의 許賃 要請 …………… 107
- 紅氈, 柏子는 減數許賃할 것

□ 辛亥(1671년, 顯宗 12년)

- 1월 15일 島主奉行 橘眞重이 出來하여 島主入往江戶所用物 16종의 求賃 要請 … 108
- 倭人이 橘眞重 療病次 醫官 朴尙文 下送 要請
- 醫官 朴尙文의 下送을 該院에 催促할 것
- 越隣香 等 9種은 減數許賃하고, 大棗 等 7種은 依數許賃할 것
- 2월 10일 頭倭가 島主切用物 黃栗 및 榛子の 求賃 要請 …………… 110
- 兩種 求賃物을 各各 減數하여 慶尙道에서 許賃할 것
- 4월 18일 代官倭가 島主求賃 藥材 3種 및 醫書의 許賃 要請 …………… 111
- 藥材는 依數許賃하고, 醫書는 痘疹源論은 防塞할 것
- 5월 18일 代官倭가 강호구청물 웅피 등 3종의 허무 요청 …………… 111
- 該曹와 慶尙道에서 依數許賃할 것
- 7월 13일 館守倭가 江戶求賃書冊 8種의 許賃 要請 …………… 112
- 朝鮮所無로 措辭防塞할 것

- 8월 10일 代官倭가 島主求請物 熊膽 等 5種의 許貿 要請 …………… 114
 - 生麻布는 減數許貿하고, 나머지는 依數許貿할 것
- 10월 9일 館守倭가 島中切用物로 羊皮 等 3種의 許貿 要請 …………… 114
 - 各各 減數許貿할 것
- 20일 代官倭가 江戸求請物 14種의 許貿 要請 …………… 115
 - 大紗 等 4種은 防塞, 大口漁 等 5種은 許貿, 大棗 等 5種은 依數許貿할 것
- 11월 6일 館守倭가 求貿雜物の 入送催促 및 江戸求貿物 活獐, 活鶯의 許貿 要請 … 116
 - 前日 求貿雜物은 下送하며, 活獐은 慶尙道에서 覓給, 活鶯은 防塞할 것
- 12월 12일 東萊府使가 倭人求貿 紫石英은 慶尙道에서 覓給할 예정임을 報告 … 117

□ 壬子(1672년, 顯宗 13년)

- 3월 20일 代官倭가 島主江戸所用物 11種의 許貿 要請 …………… 117
 - 東萊府使가 可減之物을 防塞酌定할 예정임을 報告
- 22일 代官倭가 江戸執政求貿 活野鶴의 求貿 要請 …………… 118
 - 倭人求貿 野鶴은 忠淸道에 分定하여 入給케 할 것
- 25일 倭人이 前日 求請한 島主江戸所用雜物에 대한 防塞 및 減數與否 論議 … 119
 - 大紗는 防塞, 貂皮 等 3種은 依數許貿, 菘豆末 等 6種은 減數할 것
- 4월 20일 倭人求貿雜物 中 咨筆은 元數許貿하고, 絳氈은 30立만 許貿할 것 … 121
- 6월 29일 代官倭가 以酏菴 長老僧의 身病治療次 良醫 派送 要請 …………… 122
 - 對馬島主가 良醫 派送 要請하는 東萊釜山了書契
 - 醫官 中 術業精明者 1인을 各別 擇定하여 急速下送할 것
 - 典醫監에서 對馬島入送醫員으로 鄭信敏을 差定함
 - 對馬島入送醫官에게 給馬發送토록 할 것
- 7월 2일 對馬島入送醫官에게 來待하지 않은 兩醫司 掌務官을 治罪할 것 … 124
 - 對馬島入送醫官으로 差定된 鄭信敏을 外司醫官 中 1인으로 改定할 것
 - 惠民署醫員 咸得一을 對馬島入送醫官으로 改定하고 急速 下送할 것
- 5일 館守倭가 醫官入送催促 및 東萊軍官 中 粗解醫術者의 先期入送 要請 … 125

- 7월 11일 頭倭가 島中第1奉行 平成令의 出來通報 및 京接慰官 差定 要請 … 127
 - 頭倭가 以 酌菴長老僧 身死 後 島主 得病으로 前日講送 醫員의 入送 催促
 - 京接慰官과 解事官譯은 差倭 倒着 後 決定할 것
 - 島主身病講送醫官은 前日 差定한 咸得一을 急速 入送할 것
- 윤7월 24일 代官倭가 江戶所用藥材 牛黃 5兩의 許貿 要請 …………… 130
 - 減數해 牛黃 2兩을 該書에서 隨便覓副할 것
- 8월 7일 館守倭가 前日求貿 牛黃의 入送 催促 및 求貿藥材 白朮, 蒼朮의 求貿 要請 …………… 131
 - 白朮 蒼朮은 依數許貿하고, 牛黃은 今方覓送함
- 9월 14일 代官倭가 大君前進上物인 鷹子와 人蔘의 許貿 要請 …………… 132
 - 求請人蔘 200斤 중 70斤만 該書에서 措備下送할 것
- 10월 5일 館守倭가 移館差倭 出來通報 및 前日求貿人蔘의 入送催促 ……… 134
 - 接慰官은 差倭 倒着 後 決定하고 人蔘은 곧 下送함
- 9일 館守倭가 島主病患所用藥材 14種 및 江戶所用物 5種의 求貿 要請 … 135
 - 求貿雜物 중 代口魚 等 3種은 減數許霧 大棗 等 2種은 依數許貿할 것
 - 求請藥材 중 白朮은 減數許貿하고, 나머지는 대개 依數許貿할 것
- 12월 18일 館守倭가 島主病患所用物 및 例給公木과 未收鷹字의 準數許貿 要請 … 138
 - 公木, 鷹子 未收分은 準數入送, 活鯉魚 等은 所産官에 覓給入送케할 것
- 19일 代官倭가 江戶所用求貿物 葦末과 馬省의 許貿 要請 …………… 140
 - 各各 減數許貿할 것

□ 癸丑(1673년, 顯宗 14년)

- 1월 3일 館守倭가 島主在江戶所用物로 東醫寶鑑 等 5種의 許貿 要請 …… 141
 - 五經大全은 防塞하고, 나머지는 準數許貿할 것
- 10일 代官倭가 島主病中所用藥材 2種과 江戶所用咨筆의 許貿 要請 …… 143
 - 倭人求請物은 依數許貿할 것
- 2월 8일 代官倭가 江戶所用藥材 10種의 許貿 要請 …………… 144
 - 黃芩 等 9種은 依數許貿하고, 桑寄生은 折半許貿할 것

- 4월 2일 代官倭가 島主江戸所用物 活鶯의 許貿 要請 146
- 慶尙道에서 從便覓給할 것
- 7일 관수왜가 강호집정구무물 녹말, 백저포, 호두골의 許貿 要請 146
- 倭人과 合意한대로 減數許貿할 것
- 5월 5일 代官倭가 江戸求貿物 15種의 許貿 要請 148
- 大緞 등 6種은 防塞, 筆墨 등 5種은 折減, 苧布 등 4種은 依數許貿할 것
- 9월 12일 頭倭가 江戸執政求貿物 10種의 許貿 要請 149
- 柏子 등 3種은 減數許貿하고, 黃狗皮 등 10種은 依數許貿할 것
- 10월 16일 館守倭가 島主兒子所用으로 兒馬의 許貿 要請 151
- 慶尙道에서 依數覓給할 것
- 12월 23일 館守倭가 島主入往江戸所用物인 葦末과 石鱗의 許貿 要請 152
- 倭人과 減定한대로 依數許貿할 것

□ 甲寅(1674년, 顯宗 15년)

- 9월 5일 대관왜가 도중절용물 인산 증 5종의 許貿 要請 153
- 동래부에서 국상을 이유로 조사방색함
- 11월 10일 代官倭가 江戸執政求貿物 7種의 許貿 要請 154
- 五經大全 등 4種은 防塞, 赤犬皮는 半減, 黃 은 量減許貿할 것
- 29일 東萊府에서 江戸求請物 중 黃蠟을 減定해 報告함 155
- 減定한 대로 800斤 중 600斤을 許貿할 것

□ 乙卯(1675년, 肅宗 1년)

- 4월 8일 代官倭가 島主還島後 切用求貿物 19種의 許貿 要請 156
- 倭人과 全數防塞에 合意한 金線 등 4種 외에 羊皮, 紅氈도 防塞할 것
- 苧布 등 9種은 減數許貿하고, 葦末 등 4種은 依數許貿할 것
- 24일 東萊府使가 倭人求貿物 중 羊皮, 紅氈의 全數防塞을 報告 159
- 8월 22일 館守倭가 江戸執政處賂用雜物 11種의 許貿 要請 159
- 大紗 등 5種은 防塞하고, 苧布 등 6種은 半數許貿할 것

- 11월 27일 代官倭가 島主구무지물 6종의 허무 요청 161
 - 三色紙 3種은 依數許貿하고, 葦末 등 3種은 減數許貿할 것

□ 丙辰(1676년, 肅宗 2년)

- 1월 10일 問慰譯官護行差倭 橘成真이 出來하여 島中切用品 白馬髮의 許貿 要請 ... 162
- 25일 倭人이 前日求貿한 白馬髮에 關해 東萊府에 상세한 報告를 指示함 ... 163
- 2월 15일 館守倭가 島中切用品 醫書 4種의 許貿 要請 163
 - 該曹 醫司 慶尙道에서 許貿하고, 人蔘은 20斤만 減數許貿할 것
- 25일 惠民署에서 倭人求請醫書인 和濟局方의 搜得不可로 防塞토록 指示 ... 164
- 7월 1일 館守倭가 島主求請物 苧布 等 5種의 許貿 要請 165
 - 該曹와 慶尙道에서 許貿할 것
- 8월 11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求貿物 乾大口漁 等 4種의 許貿 要請 166
 - 倭人과의 減定分에서 더 減數하여 許貿할 것
- 27일 倭人求貿物 中 乾大口漁의 減數指示에 倭人不應을 東萊府使가 報告 ... 167
 - 乾大口漁는 減數대로 100束을 許貿할 것
- 8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所用物 8種의 許貿 要請 170
 - 人蔘 等 5種은 防塞하고, 赤犬皮, 筆墨 等 3種은 依數許貿할 것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第3冊 173

□ 찾아보기 327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해제

김 동 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차 례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買)
3. 『왜인구청등록』 개관
4. 구청 물품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6.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7.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개관
8.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해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사대(事大)와 교린(交隣) 등 여러 가지 통교(通交) 관계가 존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수평적인 대등한 교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대마번[대마도]과는 조공적 기미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의 통교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간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고, 서계는 조선의 예조·동래부·부산진과 일본의 대마번 등 실무부서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이 국서와 서계에는 별폭(別幅)이라는 문서가 달려 있었다. 별폭은 예물(禮物)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 목록이다.

이 외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형태의 물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의 국교는 1609년 5월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사이의 무역은 기유약조가 체결된 지 2년 후인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견(歲遣) 제1선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는 모두 사절이 탄 사선(使船), 사송선(使送船)이었다. 따라서 왜관의 입항에서 출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다. 왜관에 도착한 사절 일행은 부산진의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에게 바다를 건너온 인사를 하였다. 이것을 ‘다례의(茶禮儀)’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마도주가 조선의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가 여기서 전달되었다. 이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헌상하는 물품 목록인 별폭이 붙어 있었다. 일정한 예식(例式)에 따라 진헌(進獻)의 의식이 행해졌다. 이것을 진상(進上 ; 후에는 封進으로 바뀜)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으로부터 서계와 함께 회사(回賜)라는 답례 물품이 내려졌다.

사절이 탄 사선(使船) 1척마다 물품의 접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의례적인 물품을

주고 받는 '진상과 회사'가 기본이었다. 사선에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을 위한 무역품도 있었다. 즉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1척의 사선에는 진상·공무역·개시무역[사무역] 3종류의 물품이 실려 있었다.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貿)

예조에서 편찬한 외교자료집인 『춘관지(春官志)』 연례송사(年例送使)조에서는 공무역·회례·구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춘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국에서 헌납하는 것에는 '진상'이란 것이 있고, '공무역'이란 것이 있다. 진상이란 것은 후추, 백반, 단목, 주홍, 화연갑, 동반(銅盤), 금병풍, 구리거울 등이다. 서계 안에 별폭을 마름질해 넣고 진상 물품을 나열하여 적기 때문에 별폭진상이라 한다. 공무역이란 것은 구리, 납 두 물건 및 단목, 흑각이다. 이 물건을 헌납하고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회례(回禮)가 있고, 공무가목(公貿價木)이 있고, 구청조(求請條)가 있다. 회례란 별폭진상에 답례하는 것으로 인삼, 호피, 표피, 백명주, 흑명주, 매, 돛자리, 붓, 떡 등이다. 모든 물건의 양쪽 끝에는 모두 예조의 조인(照印)을 찍는다. 회례를 주고 또 그 진상 물품에 따라 값을 쳐서 무명베를 주는 것을 진상가목(進上價木)이라 한다. 공무가목이란 구리, 납, 흑각의 값을 쳐서 무명베로 주었던 것이다.

구청이란 왜인들의 구걸로 인하여 주는 것이다. 인삼·매·다리미·마성·종이·붓·대추·밤·울무 등속인데, 왜국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증물(贈物)이라고도 한다(求請者 因倭人求乞而賜給者也 人參鷹火熨斗馬省紙筆棗栗薏苡之屬 倭地所不產之物 或謂之贈物)。

『춘관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헌납하는 것으로는 진상과 공무역, 조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는 회례, 공무가목, 구청이 있다.

구청이란 일본측에서 자국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구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를 사급(賜給)·증여(贈與)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은 증물(贈物), 증급(贈給)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구청은 서계·별폭 등의 외교적 의식을 띠지 않고, 특별히 요청한 물건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상과 회사와 구분된다. 또한 물품 요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거래' 의미의 공무역과도 구분된다.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을 조선측이 무상(無償)으로 지급하는 ‘좁은 의미의 구청’ 외에, 유상(有償)으로 지급하는 ‘넓은 의미의 구청’이 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청’을 흔히 구무(求買)라고 부른다. 즉 구청에는 구무(求買)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구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측에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조선측에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무에 해당된다. 역으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요청 자체는 구무이지만 결과는 구청인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일본측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조선측이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춘관지』에서도 구청을 조선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좁은 의미의 구청’이 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면, ‘넓은 의미의 구청’은 공무역의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춘관지』에는 연례송사조에 구청 항목이 있는 것 외에, ‘구청’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구청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구청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나 희귀한 것으로서, 중세 이래로부터 그들의 구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을 증급(贈給)이라 부르고 혹은 구청이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춘관지』 구청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지급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구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청이란 대마도주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에도(江戸)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측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 조선측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특별한 형식이나 규정은 없었다. 구청, 구무, 청구, 증급, 증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편찬된 여러 외교 자료집에도 구청은 다양한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다. 『춘관지』에서는 구청(求請), 『동문회고』에서는 청구(請求), 『변례집요』에서는 구무(求買)조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3. 『왜인구청등록』 개관

『왜인구청등록』은 예조(禮曹)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 8책이다. 원본은 필사본(筆寫本)으로 책 크기는 41×26.6cm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奎 12955)에 소장되어 있다. 1637년(인조 15) 3월부터 1724년(경종 4)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에 관련하여, 동래부사·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계(回啓)를 예조 전객사에서 등록한 원본이다.

전객사는 예조의 속사(屬司)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의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야인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의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왜인구청등록』의 수록 시기를 원본의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책 : 1637년(인조 15) 3월~1653년(효종 4) 2월.
- 제2책 : 1653년(효종 4) 3월~1664년(현종 5) 12월.
- 제3책 : 1665년(현종 6) 1월~1676년(숙종 2) 11월.
- 제4책 : 1677년(숙종 3) 1월~1678년(숙종 4) 12월.
- 제5책 : 1677년(숙종 3) 1월~1687년(숙종 13) 10월.
- 제6책 : 1688년(숙종 14) 1월~1692년(숙종 18) 10월.
- 제7책 : 1693년(숙종 19) 4월~1704년(숙종 30) 11월.
- 제8책 : 1717년(숙종 43) 7월~1724년(경종 4) 4월.

대체로 한 달에 두세 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뒤쪽에는 서너 달에 한 번, 또는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된 곳도 있다. 1677·1678년분은 제4·5책에 날짜와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1704년 12월부터 1717년 6월까지의 기록은 없다. 간혹 날짜가 뒤바뀐 기사가 수록되는 등 편집상의 착오가 보이기도 한다.

『왜인구청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1~2책, 제2권에는 원본 3~5책, 제3권에는 원본 6~8책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낱자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실고 있어서, 『왜인구청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김윤제(金允濟)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필자가 이를 참고·인용하면서 국역본의 해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여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와 이에 대한 예조와 비변사의 논의 및 처리과정에 대한 각종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구청물목, 동래부에서의 구청사실 및 감정(減定) 협상 보고, 예조 및 비변사의 논의과정과 처리지침, 구청물품의 각도 및 해사(該司)에 대한 조치와 분정(分定)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에 관한 각종 등록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류를 상세하게 분석한 한문중(韓文鍾)의 연구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는 30여 종에 이른다. 참고로 그 제목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양차왜등록목록(各樣差倭謄錄目錄)』, 『고부차왜등록(告訃差倭謄錄)』, 『공작미등록(公作米謄錄)』, 『도주고환차왜등록(島主告還差倭謄錄)』, 『고환등록(告還謄錄)』, 『도중실화등록(島中失火謄錄)』, 『동래부접대등록(東萊府接待謄錄)』,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논상사미등록(論賞賜米謄錄)』, 『별차왜등록(別差倭謄錄)』, 『서계위식등록(書契違式謄錄)』, 『세선응련등록(歲船鷹連謄錄)』, 『세선정탈등록(歲船定奪謄錄)』, 『세선항식출래등록(歲船恒式出來謄錄)』, 『역관상언등록(譯官上言謄錄)』, 『왜관수리등록(倭館修理謄錄)』, 『왜관이건등록(倭館移建謄錄)』,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왜인작나등록(倭人作拏謄錄)』, 『재판차왜등록(裁判差倭謄錄)』, 『전객사별등록(典客司別謄錄)』, 『조위차왜등록(弔慰差倭謄錄)』, 『진하차왜등록(陳賀差倭謄錄)』, 『징채등록(徵債謄錄)』, 『치하(차왜)등록(致賀(差倭)謄錄)』,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舉行謄錄)』, 『통신사초등록(通信使草謄錄)』, 『표왜입송등록(漂倭入送謄錄)』, 『표왜입송회사등록(漂倭入送回謝謄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차왜등록(漂人領來差倭謄錄)』, 『회사차왜등록(回謝差倭謄錄)』

30여 종의 등록 가운데 동래부에서 편찬한 『동래부접대등록』, 『동래부접왜장계등록 가고사목록초책』과 광주부에서 편찬한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예조나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예조에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록류도 실체는 대부분 예조 속사인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등록이란 이전의 전례(前例)를 적어 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그 집무 사항을 적은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사수록(謄寫收錄)한 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의 '등록(謄錄)'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등록 작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중요문서로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행해졌다. 등록에는 문서를 연월일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이나 고설(考說)을 붙이지 않은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조정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등록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춘관지』 구청조에 보면,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혹은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그것은 본조 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지금은 오직 그 조목만 들어서 후일의 상고(相考)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조 등록'이 바로 『왜인구청등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춘관지를 편찬하는데 『왜인구청등록』이 일차 사료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관지』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외교자료집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변례집요』(예조 전객사 편), 『동문회고』(예조 승문원 편), 『통문관지』(김지남·김경문 편), 『증정교린지』(김건서 편) 등을 편찬하는데도 『왜인구청등록』을 비롯한 대일관계 등록류가 일차 사료로 이용되었다.

4. 구청 물품

일본은 대마도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에도(江戶)막부에서 요청한 각종 구청 물품을 연례송사나 각종 차왜가 파견될 때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변례집요』 구무조에 따르면, 1609년 5월에 일본 사신이 구하는 황납(黃蠟) 200근을 강원도와 경상도에 분정(分定)하고, 준마(駿馬) 4필 가운데 3필은 평시서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내려 보내고, 1필은 경상도에서 구입하여 주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본측에서 황납 200근과 준마 4필을 구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년 6월에는 일본 사신이 요구하는 우황 4냥, 청심원(淸心元) 30환(丸), 금박(金箔) 600장, 서각(犀角) 1냥,

석웅황(石雄黃) 4돈, 육종용 1근 10냥, 천궁(川芎) 1근 1냥, 인삼 13근, 응담 1부(部), 황단(黃丹) 5냥, 매화연(梅花硯) 3부, 황모필(黃毛筆) 90병(柄), 궁궁(芎穹) 10냥, 우황 1부, 황기(黃芪) 10냥, 현호색(玄胡索) 5냥 등을 내려 보내라는 예조의 관문(關文)이 있었다.

『변례집요』 구무조를 보면, 기유약조 체결 후 최초로 파견된 1611년 9월에 도항한 세건제1선은 조선측에 노루[獐子], 사냥개[獵犬], 원정(蚊蜻), 모직물[遼東帽段], 무림목박백지(無簾目薄白紙), 매[俊鷹] 등을 구무(求買)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노루·사냥개·원정은 훈도에게 명하여 상인에게서 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종류와 새로 구청한 응담은 구하기 어려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1609년 국교가 재개되면서 일본인들의 구청 요구는 지속되었다. 구청 물품은 『왜인구청등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문종의 연구에는 『왜인구청등록』에 나와 있는 구청 물품을 다음의 10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문종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적류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절요(朱子節要), 사기평림(史記評林), 논어, 맹자, 증용, 춘추,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맹자집주(孟子集註), 용학집주(庸學集註), 언해무경칠서(諺解武經七書), 칠서직해(七書直解),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대장경, 문한통고(文韓通考), 속문한통고,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퇴계집, 성재집(誠齋集), 동파집(東坡集), 전등신화(剪燈新話), 호전집해(胡典集解), 이문집람(吏文輯覽), 마의서언해본(馬醫書諺解本), 의학입문, 의학정전(醫學正傳), 의림촬요(醫林撮要), 동의보감, 두진원론(痘疹源論), 비급초본(備急草本), 화제국방(和劑局方), 응골방(鷹鵠方), 참동계(參同契), 십이율(十二律), 대명령(大明令), 예기(禮記), 진간재시집(陳簡齋詩集),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 육상산문집(陸象山文集), 문장변체(文章辨體), 산곡내외별집(山谷內外別集), 이백시집(李白詩集), 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영규율수(瀛奎律髓), 조선지도

② 약재류

인삼, 사삼(沙蔘), 오미자, 결명자, 우황, 응담, 호담(虎膽), 호두골(虎頭骨), 구미

(九味)청심원, 숙지황, 백출(白朮), 창출(蒼朮), 황금(黃芩), 황기(黃芪), 상기생(桑寄生), 생호간(生虎肝), 육종용(肉蓯蓉), 목방기(木防己), 지모(知母), 시호(柴胡), 전호(前胡), 마황(麻黃), 상산(常山), 하수오(何首烏), 백렴(白蘘), 천문동(天門冬), 승마(升馬), 천마(天麻), 백두옹(白頭翁), 창이(蒼耳), 소계(小薊), 관중(貫中), 호본(蒿本), 누로(漏蘆), 백미(白薇), 호황련(胡黃連), 의이(薏苡), 원지(遠志), 위령선(葳靈仙), 백선피(白蘚皮), 진교(秦艽), 상륙(商陸), 목단, 속단(續斷), 여로(藜蘆), 대계(大薊), 보골지(補骨脂), 목숙(苜蓿)

③ 금수류

응자(鷹子), 양마(良馬), 월라준마(月羅駿馬), 마상재마(馬上才馬), 체대마(體大馬), 나자(驪子), 황앵(黃鶯), 생장(生獐), 생조(生雕), 백양(白羊), 금조(禽鳥), 혈연(穴燕), 전옹(鸚鵡), 야학(野鶴), 활위(活蝟)

④ 모피류

호피, 표피, 양피, 유모옹피(有毛熊皮), 황구피, 적견피(赤犬皮), 당초피(唐貂皮), 어피, 산서피(山鼠皮), 황광피(黃獺皮), 청서피

⑤ 다기·제기류

다완, 등롱(燈籠), 목욕탕기, 종경(鍾磬), 유기, 향로, 축대, 화병

⑥ 문방구류

진묵(眞墨), 대모필(玳瑁筆), 황모필(黃毛筆), 자필(咨筆), 화룡필(畫龍筆), 오죽필(烏竹筆), 홍당죽필(紅唐竹筆), 화병대필(畫柄大筆), 백죽필(白竹筆), 용편필(龍鞭筆), 도화지, 소유지(小油紙), 색납지(色蠟紙), 색지, 주지(紬紙), 우산지, 금묵(琴墨)

⑦ 직물류

백조포(白照布), 백저포, 세저포, 홍전(紅氈), 잠사(蠶絲), 대금백(大金錦), 생조포(生照布), 대선단(大線段), 대사(大紗)

⑧ 어패류

건대구어, 황대구어, 이어(鯉魚), 문어, 부어(鮑魚), 석린(石鱗), 자안패(子安貝)

⑨ 과일류

호도, 송자(松子), 백자(栢子), 조속(棗栗), 진자(榛子)

⑩ 기타

갑주, 목궁(木弓), 예복, 심의, 원선자(圓扇子), 미선(尾扇), 향선추(香扇墜), 마성(馬省), 석대성(石帶星), 옥대구(玉帶鉤), 금수(錦綉), 영롱당철(玲瓏唐鐵), 지포(紙砲), 당화(唐貨), 백합피갑(白蛤皮甲), 적축(躑躅), 적죽(笛竹), 오죽, 악기, 녹두말(菘豆末), 황납(黃蠟), 자석영(紫石英), 산호, 황옥석(黃玉石), 백양석(白羊石), 흑양석, 부후석(浮厚石)

이와 같이 왜인이 구청한 물건은 서적, 약재, 금수, 모피, 다기·제기, 문방구, 직물, 해산물, 과일 등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매와 말 등의 금수류는 주로 대마도주가 막부 장군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다기·제기류는 막부장군 등 최고 지배층의 구청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제기류는 동조권현궁(東照權現宮; 德川家康), 대유원(大猷院; 德川家光), 엄유원(嚴猷院; 德川家綱) 등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서적류는 유교경전이 많으며, 의학 서적, 문집, 대장경, 조선지도 등도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의보감, 의학입문, 의학정전, 의림촬요, 두진원론, 비급초본, 화제국방, 마의서언해 등 의서(醫書)를 많이 구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기 번조(燔造)에 필요한 각종 흙이나, 별당·정자각 등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전장, 유기장, 사기장, 안자장(鞍子匠), 주동장(鑄銅匠) 등 기술자나, 일본인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원, 화원까지도 요청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에 물품을 구청하였다. 대마도의 소(牛) 등 가축류와 칼(刀劍)·유황 등 무기나 화약 원료를 구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예조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한 『동문회고』(附編 권22) 「청구(請求) 1」에서는 ‘아국인(我國人)’, 「청구(請求) 2」에서는 ‘일본국인(日本國人)’이라 하여, 우리가 구청한 내용은 ‘아국인’ 항목을 설정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왜인구청등록』에 나오는 일본측의 첫 구청은 정축(인조 15, 1637) 3월 13일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입계(入啓)하기를, “이제 예조에 계하(啓下)한 이문(移文)을 보니 대마도의 특송선(特送船)과 세견선(歲遣船) 등의 선박에 대하여 도주(島主) 이하 각왜(各倭) 등의 구청 잡물 및 결과(結裹)에 들어갈 잡물이 매우 많습니다. 백저포(白苧布), 백면주(白綿紬), 흑마포(黑麻布), 황모필(黃毛筆), 인삼 등의 물건은 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내고, 호표피(虎豹皮), 백목(白木), 초주지(草注紙), 초석(草席), 유사(柳筍), 줄바[條所], 유둔(油菴), 유지(油紙), 협판(挾板), 백지 등의 물자는 본도(本道)에서 공물(貢物)의 남은 포목으로 값을 제하고 내어주거나, 혹은 금번의 은가(銀價)로 계감(計減)하여 공무역(公貿易)으로 지급하며, 홍주보(紅紬襖)는 본도에서 단목(丹木)을 사들여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백포보(白布襖)도 또한 갖추어 지급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화를 입은 일은 저쪽에서 반드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 같이 홍희남(洪喜男)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지급하게 함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입계(入啓)하나이다” 하였다. 전교(傳敎)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구청에 대한 조선의 처리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백저포·백면주·흑마포·황모필·인삼 등은 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 보냈다. 둘째, 호표피·백목·초주지·초석·유사·줄바·유둔·유지·협판·백지 등은 일본에 지급할 공목(公木) 값에서 제하고 주었다. 공목 값이란 대개 공무역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값이다. 또는 은 값에서 제하고 주기도 하였다. 은 값이란 일본에서 수입된 은에 대해서 조선측이 지급해야 하는 물품 값을 뜻한다. 셋째, 홍주보·백포보는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구청에 대한 처리 방식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요구를 허용하였다. 수량이 많은 물품은 수량을 줄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구청을 거절하거나, 왜관 개시일에 상인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개시무역(사무역)으로 교역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을 거쳐, 호조·동래부·경상감영 등 해당 관청을 통해 조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값을 별도로 상계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청을 허락한 전례가 없는 물품은 엄하게 배척하였다. 이미 허락한 전례가 있는 물

품에 대해서만 구청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구청에 대한 처리과정은 『왜인구청등록』을 이용하여 구청관행과 결제방식 등을 분석한 정경주(鄭景柱)의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청의 처리 유형을 ㉠ 해조비급(該曹備給; 호조나 예조 등 물품과 관련된 관청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부비급(本府備給; 동래부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도먹급(本道覓給;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 경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다른 도에서 구하여 지급), ㉣ 자상매매(自相賣買; 왜관에서 상인이 사무역으로 매매)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거래 결제의 유형은 ㉤ 공목계제(公木計除;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목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 ㉥ 물화피집(物貨被執; 왜관에 물품을 먼저 반입하고 대금을 뒤에 결제받는 방식)과 은화피집(銀貨被執; 피집물화의 대금을 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6.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Ⅰ)』은 1637년(丁丑, 인조 15) 3월 13일부터 1653년((癸巳, 효종 4) 2월 10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1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 一』의 1~34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Ⅰ)』의 연대별 기사항목 수

연 대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항목수	13	4	13	14	3	3	1	5	3
연 대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합계)
항목수	5	12	7	5	12	3	13	4	120

위의 표에 보면, 국역본(I)에 수록된 기사 건수는 모두 120건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는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이 시작되는 초기인 1637년에서 1640년까지는 항목 수가 많다가, 1641년에서 1646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도 1637년부터 시작되지만, 앞서 언급한 30여종의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 가운데 『각양차왜등록목록』, 『공작미등록』, 『논상사미등록』, 『별차왜등록』, 『서계위식등록』, 『세선응련등록』, 『세선정탈등록』, 『역관상언등록』, 『징채등록』, 『치하(차왜)등록』, 『표왜입송등록』, 『회사차왜등록』이 1637년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며, 등록류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등록의 수록 시기가 1637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문종이 주목한 바 있다. 한문종은 그 중요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묘·병자호란(1627·1636년) 등 전란으로 인한 공문서의 소실이다. 전란으로 등록 편찬에 필요한 공문서가 거의 소실되어, 현존하는 등록의 대부분이 병자호란 이후부터 수록하고 있다.

둘째, 병자호란 이후 대청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나가와(柳川)사건’으로 불리는 국서개작(國書改作)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德川)막부는 교토(京都) 오산(五山)의 승려를 대마도 이정암(以厶庵)에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637년부터는 도항하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형식과 교역방법을 간소화하는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통교체제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서도 대일외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국역본(I)의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청물품과 절차 및 교섭과정 등을 일반적으로 적은 기록과 함께, 목록과 같은 형식으로 구청의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 들어 있다. 내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이름 없이 후록의 형식으로 나열한 것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묘(1639) 8월 16일조 역관등수본등서(譯官等手本謄書), 차왜 등지승(藤智繩) 별구청 약재물록, 잡물구청병원매(并願買), 경진(1640) 5월 30일조 후록(後錄), 경진 9월 21일조 후록, 경진 10월 21일조 후록 용약(用藥), 신사(1641) 8월 13일조 후록,

임오(1642) 2월 21일조 왜소지(倭小紙), 후록, 임오 3월 6일조 후록 등지승(藤智繩) 구청약재, 임오 12월 4일조 후록, 갑신(1644) 3월 25일조 서적목록, 을유(1645) 3월 20일조 후록 구청약재류, 구청잡물, 을유 6월 9일조 후록, 정해(1647) 9월 16일조 후록, 정해 12월 3일조 왜인구무별단(別單), 기축(1649) 7월 20일조 후록 구청물목(物目), 기축 8월 14일조 구무물목, 경인(1650) 10월 21일조 구청물목, 임진(1652) 9월 26일조 구청물목, 임진 11월 19일조 구무물목, 임진 11월 23일조 차왜 굴성정(橘成正) 구청물목 감록(減錄), 계사(1653) 2월 8일조 구청물건 등이다.

이러한 별구청물목, 구청물목, 구청물건, 구무물목, 구무별단, 수본 등 후록 내용들은 기사의 말미에 구청의 물목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이다.

을유(1645) 6월 9일조 후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도주(島主)	말	본도에 명하여 인근 읍의 말이 있는 곳에 알려 무역을 허락
	피꼬리	본도에서 이미 분정하여 들여 줌.
	노루, 다람쥐, 토끼	본도에서 먹급(覓給)
정관(正官)	마서(1부), 문갑, 금은전(金銀箭)	방색(防塞)
	주역(周易) 1부, 화연(花硯), 호육(虎肉), 호안(虎眼), 호간(虎肝), 호담(虎膽), 마성(馬省), 준웅(俊鷹) 1연, 우황(牛黃), 웅담(熊膽),	본도에서 제급(題給)
부사(副使)	『황화집(皇華集)』 1부	방색(防塞)
	진묵(眞墨), 대화연(大花硯),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우황(牛黃), 택사(澤瀉)	본도에서 제급(題給)
	신발	지급
	상인삼(上人蔘)	가져온 예단 가운데서 털어내어 줌
	황모필(黃毛筆) 30자루	해사(該司)에서 내려 보냄
	숙지황(熟地黃) 2근, 석린(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등지승 (藤智繩)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해사에서 급가하여 의사(醫司)에서 사서 보냄
	호경골(虎脛骨), 호두골(虎頭骨), 호간(虎肝), 호육(虎肉), 황기(黃芪), 당귀(當歸), 대황(大黃), 천궁(川芎), 백출(白朮), 황금(黃芩), 방풍(防風)	본도에서 제급
	지모(知母) 2근, 백림(白薺) 2근, 대석린(大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매 1연	강원도에서 제급
	자석영(紫石榮)	방색
봉진압물 (封進押物)	황모필(黃毛筆) 2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진묵(眞墨), 백지(白紙), 마성(馬省), 백작약(白芍藥)	본도에서 제급
	숙지황(熟地黃) 2근	황해도에서 제급
	준옹(俊鷹)	방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물품을 도주(島主), 정관(正官), 부사(副使), 등지승(藤智繩), 봉진압물(封進押物) 등 구청자별로 나눈 후, 각 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물품 가운데는 서적류, 약재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경진(1640) 10월 18일조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날 대군이 도주에게 이르기를, 남만(南蠻)의 상선이 이미 끊어져 약재를 얻어 쓸 방도가 없으니 조선의 약재를 널리 무역하라 하거늘, 도주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더니, 대군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약사(藥肆)를 에도와 왜경(倭京), 오사카[大坂] 등지에 설치하고, 그 때 이름을 조선약사(朝鮮藥肆)라 하여 내걸었는데, 제가 관(館)에 와서 보니 약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도주가 대군에게 실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전일에 등차

(藤差)도 이 일을 말하였으므로, 동래부사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하여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아마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보고하였다 하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라건대 다시 보고하여 재촉해주시도록.

㉠ 경진(1640) 11월 20일조

약재는 대군(大君)이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여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으로, 26종 내에 10종은 각기 1,000근, 16종은 각기 500근을 해마다 팔도록 허락하여 계속 대군 앞으로 납입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산출되는 곳에서 와서 팔도록 해주면 매우 좋겠다. 전일에 약재를 잡종과 혼동하여 내려보냈기에 당연히 사들이지 않을 것이로되 단지 죽은 말의 뼈를 사듯이 당약(唐藥)으로 서로 교환하였으니 또한 양쪽이 편한 일이다.

1640년 당시 도쿠가와막부의 대군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다. 이 두 기사를 보면, 남만무역이 중단되어 약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무역에 주력하여, 대군이 에도(江戸), 교토(京都), 오사카(大坂)에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고 약재를 구청(구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세 곳에 '조선약사(朝鮮藥肆)'가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와 관련해서는 타시로 카즈이(田代和生)가 대마번(대마도)의 인삼좌(人蔘座)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인삼을 파는 인삼좌는 에도, 교토, 오사카 등지에 설치되었다. 에도 인삼좌는 1674년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이미 30여년 전에 이에미쓰에 의해 약재를 파는 조선약사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구청(구무)에 의해 수입된 조선약재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조선약사와 인삼좌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조선약사'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7.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Ⅱ)』는 1653년(癸巳, 효종 4) 3월 5일부터 1664년(甲辰, 현종 5) 12월 25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2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一』의 345~64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

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대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항목수	2	6	6	1	15	11	1
연대	1660	1661	1662	1663	1664		(합계)
항목수	18	7	7	15	30		11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는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56년과 1659년은 각각 1건, 1653년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1664년은 3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1664년은 건수뿐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첫 기록은 계사(癸巳, 효종 4, 1653) 3월 5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와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은 왜인이 구청한 등롱(燈籠)을 왜관에 납입하였더니, 왜인들이 극구 칭찬하였다는 내용, 왜인이 구청한 갑주(甲冑)는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왜인이 간청해 마지않으면 들어주자는 방안, 훈도 김근행(金謹行)은 중병이므로 차도가 있으면 올려 보내려고 하고, 역관 이형남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은 변방의 일은 방편에 따라 선처함이 마땅하므로 장계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각 날짜별 기사는 3월 5일조에서 본 것처럼, 동래부사의 장계, 또는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啓目)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朝廷)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에 기록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미(1655) 5월 18일조 소구물목(所求物目), 병신(1656) 8월 26일조 변마수소구유기주성물목(幡摩守所求鎡器鑄成物目), 정유(1657) 1월 26일조 구무별단(求貿別單), 5월 20일조 후록(後錄), 무술(1658) 1월 2일조 구청물목(求請物目),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騰書), 4월 13일조 구무물건별단(求貿物件別單), 9월 22일조 구무별지등서(求貿別紙騰書), 경자(1660) 4월 20일조 물목(物目), 5월 7일조 소구잡물건기(所求雜物件記), 10월 5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신축(1661) 5월 15일조 도주구무물목(島主求貿物目), 임인(1662) 2월 25일조 소구건기(所求件記), 2월 25일조 왜인구무물목별단(倭人求貿物目別單), 3월 13일조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貿見樣別單), 7월 19일조 도주구무물목등서단자(島主求貿物目騰書單子), 계묘(1663) 1월 20일조 후록(後錄: 도주구무물목중허무물종(島主求貿物目中許貿物種)), 5월 21일조 후록(後錄), 8월 20일조 도주구무잡물문서(島主求貿雜物文書), 11월 3일조 후록(後錄), 갑진(1664) 1월 5일조 구무잡물건기(求貿雜物件記), 윤6월 3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및 후록(後錄), 12월 21일조 잡물구무건기(雜物求貿件記), 12월 25일조 후록(後錄) 등이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騰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에 기록된 구무물건(求買物件)

구무물품	수량	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상상인삼(上上人蔘)	100근	해조(該曹)에서 참작, 찾아 줄 것	
상상황금(上上黃金)	5·60냥		
상상 각색 대단(大段)	30필		
상상 금선(錦線)	20필		
상상 선단(線段)	20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백릉기주(白綾其紬)	10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대화용촉(大畫龍燭)	2쌍	본부(本府) 기술자[匠人]들에게 주조하게 하여 지급	
유기 대접[鎡大貼]	3죽(竹)		
유기 보시기[鎡甫兒]	5죽		
백면주(白綿紬)	200필	장사꾼[商賈]들에게 전례대로 매매하게 할 것	
미선(尾扇)	300자루		
녹두가루[菘豆末]	100근	일공(日供)의 지급물자 중에서 끌어다 줄 것	
청밀(淸蜜)	30근		
화석(花席)	30장		
곡수화유지(曲水畫油紙)	30장	본부(本府)에서 편의대로 지급할 것	
후지(厚紙)	50권(卷)	별무(別買)할 필요가 없다는 뜻 전달	상수(喪需) 구청때 많이 지급했음
채전(彩氈)	5·6장	역관(譯官)이 이미 방색(防塞)	서울에서도 구하기 어려움
산호수(珊瑚樹)	1쌍		
옥패(玉佩)	4·50개		
안장(鞍裝)	2부(部)	역관들이 이미 방색	사사로이 무역을 요구할 일이 아님.
대화로(大火爐)	2쌍	역관들이 이미 방색	서울 기술자주조 가능. 육로운송 불가능
대초둔(大草蓆)	50번(番)	연례 지급물자로 끌어다 지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무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물품은 역관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함을 알렸다. 동래부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인들로 하여금 매매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룽(燈籠) 구청

등룽에 관한 기사는 1653, 1654, 1655년에 집중되어 있다. 1653년의 2건 중 1건은 등룽에 관한 내용이다. 등룽은 일본측에서 마련한 구리와 납으로 주조하였다. 기술자는 경상도에 분정하였다. 등룽은 큰 석탑(石塔) 형상으로 각 모서리마다 물상을 조각하였다. 왜관에 납입하자, 정밀하게 만들어져 왜관의 왜인들이 매우 만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654년의 6건 기사는 모두 등룽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등룽의 견본은 에도(江戸)에서 만든 것이었다. 일본측은 등룽을 통신사가 가지고 가서 일광산(日光山)에 두면 광채가 날 것이라고 하였다. 등룽을 주조할 때 일을 감독할 감동(監董) 역관 1인이 서울에서 차출되었다. 일의 중요성 때문에 부산참사가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이 되었다.

1653년에 주조한 등룽은 대마도주가 기술자를 빌어와서 주조한 것이어서 형체가 높고 크지 않았다. 1654년에는 높이 2자, 너비 3자를 더 요구하였다. 내년엔 갈 통신사행이 등룽을 가지고서 일광산(日光山)에 올려서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준 종·향로 등과 함께 두기를 바라며, 특히 등룽에다 명(銘)을 새겨 주기를 원하였다. 등룽명(燈籠銘)에 대해서도 대마도주는 명 가운데 ‘선귀대군(先貴大君)’ 네 글자를 ‘대유원전(大猷院殿)’으로 고치고, ‘동조(東照)’ 및 ‘대유원(大猷院)’의 두 줄을 한 자쯤 조금 높이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미(1655) 1월 6일 기록에는 일광산등룽명병서(日光山燈籠銘并序)가 기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에 일광산 산중에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을 위하여 도량을 넓게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법종(法鍾)을 주조하여 보내어 효성을 현창하였거니와, 이제 또 대유

원전진(大猷院殿眞)을 아울러 설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등룡을 주조하여 영산(靈山)에 보내어 숭봉(崇奉)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돕고, 인하여 영모(永慕)하는 뜻을 찬양하여 명을 짓노라. 공덕을 크게 세워 제천(諸天)에 아울러 참여하고, 도량을 이미 열어 지혜의 등불 바야흐로 걸었다네. 구리를 녹여 등룡을 만들어 신광(神光)을 호위하고, 이에 법연(法筵)에 두어서 휘황하게 불꽃을 토하네. 한없이 효성스런 생각으로 명복을 올리나니, 보방(寶坊)을 길이 밝히고, 금륜(金輪)을 영구히 굴리세. 을미년 월 일.”

이 등룡명(燈籠銘)은 행사직(行司直) 오준(吳竣)이 쓴 것이다(을미 9월 16일조). 1655년에 통신사가 파견될 것을 예견하고, 일본측에서는 1654년 일광산에 둘 등룡을 주조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등룡 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통신사를 비롯한 외교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둘째, 화원(畫員) 김명국(金明國)의 회화(繪畫) 구청

김명국의 그림을 요구하는 내용은 임인년(1662) 2월 25일, 3월 13일조에 보인다. 막부(幕府) 대군(大君)이 김명국의 그림을 원하므로, 그를 부산 왜관(倭館)에 직접 불러서 수십 폭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김명국은 전에 통신사를 따라 두 번 일본에 갔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송을 받아서, 그의 그림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명국이 그림 그리는데 쓸 화초(畫料) 2필의 구입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김명국이 연로하고 병들어서, 그림 그리기 위해 천리길을 왕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서울에서 그려 보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김명국이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왔을 때도 목전에서 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그리게 할 뿐 아니라, 간혹 술에 취해 붓 놀리는데 힘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으므로, 만약 서울에서 그리면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왜관에 와서 보는 데서 그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화초(畫料), 들어가는 채색 값, 그림 공가(工價), 오고가는 사이의 양식과 말의 비용 등 물자는 일본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특히 3월 13일조에는 그림의 견본 내용을 적은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買見樣別單)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초(白紵) 26폭 내 10폭은 길이 2자, 진채색(眞彩色)의 채녀(採女) 그림. 8폭은 길이 3자의 담채색(淡彩色)의 팔선인(八仙人) 그림. 이른바 팔선인은 곧 음중팔선(飲中八仙)을 말한다. 그린 뒤에 백색 단자(段子)를 잘라 소첩(小籤)을 만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 팔선(八仙)의 호칭을 쓰게 하여 각기 그 화폭 위에 붙이게 하고, 또 하나의 소첩을 만들어 모년 모월 모일 조선국인 김명국이 그렸다고 쓰고, 또 그 도장을 그린 사람 이름 아래에 찍어서 8폭 가운데 마지막 폭의 아래에 붙이며, 8폭은 길이 3자에 진채색으로 춘하추동 네 계절의 큰 산수 경치 및 인물화를 그리고, 모모 풍경이라 써서 각기 소첩을 붙여, 무역하기를 요구하며, 화초 2필이 만약 이 척수에 모자라면 혹 더 사들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등본을 보냈음.

이 별단 내용을 보면, 요구하는 그림은 채녀화(採女畫)와 팔선인화(八仙人畫), 산수화, 인물화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크기, 채색, 화기(畫記), 낙관 등 그림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양국의 회화사, 회화교류사에 대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화가 김명국 개인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회화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서적 구청

서적에 대한 구청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서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 대학, 맹자, 시경, 서경,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칠서직해(七書直解),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의례경전(儀禮經傳), 의례경전통해집전(儀禮經傳通解集傳),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사서집석장도(四書輯釋章圖), 사기평림(史記評林), 동의보감, 의림촬요(醫林撮要), 만병회춘(萬病回春), 마의방(馬醫方),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사촬요(故事撮要)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의 종류는 다양하며,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서적은 대마도주나 에도(江戶)의 집권층이 주로 요구하였다. 중국의 유교 경전류가 중심이었다.

그 외에 우리 나라의 의서, 역사, 지리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적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달랐다. 동래부나 경상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을 경우, 책판(冊版)이 지방이 있으면, 그 도에서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동래부로 보내고, 책판이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구하여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백급(白給, 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목(公貿木)으로 계제(計除)하는 경우에는 편의대로 무역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특히 구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책일 경우에는 방색(防塞), 즉 요청을 거절하였다.

예를 들어 계묘년(1663) 8월 20일조에 보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 각 1질을 구무(求貿)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1질은 경상감사, 전라감사에게 명하여 도내에 책판이 있는 곳에서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지급하고,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는 현재 간행하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방색하도록 하였다. 갑진년(1664) 윤6월 3일조에 보면, 이퇴계집(李退溪集) 2권, 고사촬요(攷事撮要) 3권의 구무에 대해, 판본이 산실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넷째, 호피(虎皮) 구청

호피에 대한 구청도 시기에 따라 달랐다. 특히 정유년(1657)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1657년의 기사 15건 중 8건이 호피와 관련된 내용이다.

1655년에는 통신사가 갈 때, 에도에 가서 여러 집정 등에게 보낼 예단에 쓸 명목으로 상호호피(上好虎皮)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을미 5월 18일, 23일). 1657년에는 체구가 크고 털이 좋은 호피 70장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정유 5월 3일). 에도에 화재가 났을 때 대군(大君)의 피물(皮物)로 된 여러 도구들이 모두 타 없어져서 이를 개조하는데 쓸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정유 6월 11일). 이에 대해 호피가 조선에서 나는 것이지만 해당 관청에 비축한 것이 없고, 나라에서도 쓸 곳이 있으면 각 지방에 분부하여 겨우 수합하여 쓰는 형편이므로, 70장 중 40장만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부족분의 일부는 상인들로 하여금 왜관에서 매매하도록 하였다(정유 6월 8일).

1664년에는 관백(關白)이 호피 60령(令)을 구하므로, 값의 고하는 따지지 말고 좋은 품질의 호피를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60령 중 30령만 무역을 허락하되, 나머지 부족분은 정유년(1657) 사례에 따라 호피 15령은 장사꾼의 사장(私藏) 호피를 내려보내 환무(換貿)하도록 하였다(갑진 2월 5일).

8.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은 1665년(乙巳, 현종 6) 1월 13일부터 1676년(丙辰, 숙종 2) 11월 8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3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膽錄 二』의 3~303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대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항목수	14	7	11	13	7	13	11
연대	1672	1673	1674	1675	1676	(합계)	
항목수	20	9	3	4	8	12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는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74년과 1675년은 각 3건, 4건으로 가장 적다. 1674년은 건수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다. 이에 비해 1672년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건수뿐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의원 파견 요청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첫 기록은 을사(乙巳, 현종 6, 1665) 1월 13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안진(安縝, 1664. 윤6~1666. 9)이 1월 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

M다. <동래부사 안진이 성첩한 장계 내용>은 대관왜(代官倭)가 전일 구무(求貿)한 물건을 내려보내 줄 것을 재촉하는 것에 대해서, ㉠ 이미 무역을 허락한 물건은 빨리 내려보내 주시고, ㉡ 유모옹피(有毛熊皮, 털이 있는 곰가죽)는 전량(全量)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선 확보한 5·6령(令)이라도 내려 보내 주시고, ㉢ 공문 전달을 잘못된 발장(撥將)을 엄하게 조사하여 중한 죄로 다스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유모옹피(有毛熊皮) 5·6령은 해조에 명하여 각종의 물종과 함께 일시에 내려보내되, 특별히 금군(禁軍)을 정하여 속히 출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하며, 공문 전달을 잘못된 해당 발장은 엄하게 조사하여 중한 죄로 다스린 뒤, 후일 이런 폐단이 없도록 3도 감사에게 알림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각 날짜별 기사는 1월 13일조에서 본 것처럼, 동래부사의 장계, 또는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啓目)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朝廷)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後'라고 하여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에 기록된 후록으로는 병오(1666) 5월 10일조 후록(後錄), 정미(1667) 2월 28일조 후록(後錄), 정미(1667) 5월 16일조 후록(後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병오(현종 7, 1666) 5월 10일조의 후록(後錄)으로 정리된 13종의 구무 내용과 조선측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병오(현종 7, 1666) 5월 10일조 후록(後錄)에 기록된 구무 물품			
구무 물품	구무 수량	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각색 극품(極品) 비단[大段]	100필(匹)	다시 타일러 방색(防塞)하고 절대 허락하지 않음	
영롱철안(玲瓏鐵鞍)	2부(部)		
극품 엽금(葉金)	100냥[兩]		
이퇴계집(李退溪集)		목판 산실(散失). 역관 등이 이미 방색	
상품 약삼(藥參)	100근(斤)	해조에서 마련하여 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것	30근 허락
백저포(白苧布)	70필(匹)		30필 허락
각종 쇠금진묵[洒金眞墨]	20동(同)		
녹말가루[菥末]	300근(斤)	본도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	100근 허락
울무[薏苡]	20말[斗]		10말 허락
대추[大棗]	5섬[石]		3섬 허락
황밀(黃蜜)	100근(斤)		30근 허락
호두[胡桃]	20섬[石]		7섬 허락
잣[栲子]	20섬[石]		7섬 허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무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물품은 역관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함을 알렸다. 각종 극상품 비단 등 3종은 다시 한번더 거절하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상도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에서 보면 허락하는 경우에도 원래 구무 수량의 1/3~1/2 정도선을 허락하고 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식 건물을 짓기 위해 목재, 목수, 화원, 단청 연료 등 구청

이 내용은 을사년(1665) 1월 16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가옥 제도를 구경하고 싶으나 볼 길이 없어서, 조선의 재목과 목수를 사들여서 왜관에다 기교를 부려 별당(別堂)을 짓고 단청을 화려하게 하였다가, 다시 철거하여 대마도로 운반

하여 제도대로 세워서 구경거리로 삼고 싶어 했다. 이에 별당 5칸에 들어가는 목재, 솜씨 좋은 목수 15명, 화원(畫員) 2인, 단청에 들어갈 주홍(朱紅), 황단(黃丹), 백분(白粉) 외에 기타 조선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색(彩色)을 모두 값을 주고 사들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동래부사에게 고해 달라고 하였다.

관수(館守) 및 대관왜가 이러한 대마도주의 뜻을 훈도 변승업(下承業)에게 전달하자, 변승업은 '이런 일은 비록 값을 주고 사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이 폐단을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결코 동래부사에게 입을 열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그러자 관수 등은 대마도주가 나이가 젊어 날마다 경치 구경을 일삼는데, 마음을 먹고 말한 것이어서 중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서 구청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래부사 안진(安鎭)이 이러한 내용을 장계하자, 예조에서 에도(江戸)막부에서 청하는 일도 아니며, 새로운 간청이 있을 때마다 청을 따라주면 후일 무궁한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장계에 진술한 것처럼 엄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뜻을 경상도 감사에게도 공문을 보내자는 계목(啓目)을 올려 왕의 허락을 받았다.

기사 내용이 1건에 불과하지만, 대마도주의 조선 건물에 대한 관심,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인원, 단청에 필요한 재료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건축관련 자료이다.

둘째, 나전장(螺鈿匠), 유기장(鋸器匠) 구청

나전장에 관한 내용은 을사년(1665) 4월 25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왜관의 대관왜(代官倭)가 '전에 나전(螺鈿)을 만들 적에 미진(未盡)한 일이 있으므로, 그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금번에 가지고 왔으니, 전에 작업을 했던 나전장(螺鈿匠)을 이전 인원 수대로 급히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는 '지난번 나전장을 요청하였을 때, 경상도에 보고한 후 경상도에서 통영(統營)으로 공문을 보내어 전례(前例)대로 불러주어 일을 마쳤는데, 이제 또 불러달라고 청하니 매번 불러주기가 지루하지만,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왔다 하니, 전에 불러주었던 장인(匠人)을 이제 와서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도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처럼, '다시 불러주기를 허락하는 것이 무방한 듯하므로, 동 나전장을 이전의 인원 수대로 정하여 보내는 뜻'으로 경상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자는 계목(啓目)을 올려 왕의 허락을 받았다.

기사 내용이 1건에 불과하여, 나전으로 만든 물건의 내용과 나전장의 인원수를 구체

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마도의 조선 나전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으며, 특히 통영(統營)의 나전장이 부산 왜관에 직접 와서 대마도측이 요구하는 나전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 다른 지역과 왜관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기장에 관한 내용은 경술년(1670) 윤2월 22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에서 사용할 종(鍾), 경(磬), 바라[鉢羅] 등의 물건을 주조하기 위해, 철물(鐵物)을 준비해 주고, 솜씨 좋은 장인 몇 명을 며칠 내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동래부에서는 이 요구에 따라 경내의 유기장(鑪器匠) 몇 명을 왜관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마도가 종 등 불교 관련 물건을 구청하고, 이를 위해 동래부의 유기장이 왜관에 직접 가서 이들 물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공업과 관련된 왜관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심의(深衣), 치포관(縹布冠) 등 구청

이 내용은 정미년(1667) 2월 28일, 4월 15일, 6월 19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에 문위역관(問慰譯官)으로 갔다온 김근행(金謹行), 최유립(崔裕立) 등의 수본(手本)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심의(深衣), 치포관(縹布冠), 대대(大帶), 복건(幅巾), 신발[履] 등의 구무(求買)를 요청하였다. 동래부사는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에서는 무역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왕에게 올려 윤허를 받았다. 심의(深衣) 등 물건은 4월 12일 역관(譯官)편으로 동래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6월 19일 기사에 보면, 왜관에 지급한 심의, 치포관, 대대, 복건, 신발, 혁대(革帶), 오색(五色) 소대(小帶) 등 물건이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그래서 왜관에서는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조에서는 이들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한 일본측의 요청이 간절하니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올려 왕의 윤허를 받았다.

심의는 고결한 선비들이 입던 소매가 넓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른 흰 베로 만든 옷이다. 치포관은 유자(儒者)들이 평상시 쓰던 검은 관이다. 조선의 유자들이 착용하던 옷, 관, 허리띠, 신발 등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 이정암(以厔菴) 암주(菴主)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관(醫官) 파견 구청

대마도 부중(府中, 嚴原 이즈하라)에 있는 이정암(以厔菴) 암주(菴主)가 병에 걸려 위독하므로, 의술에 정통한 의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이다. 의관 파견 구청 기사는 임자년(1672) 6월 29일, 7월 2일, 7월 5일, 7월 11일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임자년 20건 가운데 9건이 의관 구청 기사다.

이정암은 외교문서를 관장하기 위하여 에도(江戶)막부에서 대마도에 파견한 승려가 거처하는 암자이다. 1597년에 경철 현소(景輓玄蘇)가 대마도 이즈하라(嚴原)에 세운 암자다. 현소가 태어난 해가 정유(丁酉)년이라서 암자 이름을 이정암(以厔菴)이라 불렀다. 1635년에 국서개작 폭로사건이 일어난 후 교토(京都) 5산의 승려가 운번으로 파견되어 외교문서를 감찰하였다. 이를 이정암운번제라고 한다.

1672년 6월 29일자 내용을 보면, 이정암 암주가 병에 걸려 위급하지만 대마도 의원의 의술로는 살릴 수가 없으므로, 의술에 정통한 의관을 꼭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서계(書契)도 함께 보냈다.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명(署名). 아득히 생각하면 귀국의 돈독한 교화가 평소 그대로이듯, 본방(本邦)도 같습니다. 이제 이정암주(以厔菴主)가 병에 걸린 지 여러 날, 여러 가지 치료가 효험이 없는데, 귀국의 좋은 의원의 진찰을 받게 하면 신기한 효험을 얻겠다고 생각하니, 바라건대 한 사람의 좋은 의원을 가려 불일간에 바다 건너 오기를, 이렇게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는 소개(小价)가 구두로 진술하는데 부치고, 펴지 못합니다. 선문(宣文) 12년 임자 6월 일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계사년(1653)에 이시찬(李時燦)을 보낸 전례가 있고, 서계 내용이 간절하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염병(染病)에 걸려 중태이므로 의원이 대마도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 예조에서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시며, 서계에 대한 회답은 승문원(承文院)에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올려 왕의 윤허를 받았다. 비변사에서라도 의관을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의감(典醫監)에서는 전 전의감정(正) 정신민(鄭信敏)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7월 2일 기사에 보면 정신민을 파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조에서는 전의감과 혜민서(惠民署)에 분부하여 의관을 추천하고, 또 각각 장무관(掌務官)이 와서

대기하여 한 사람을 상세히 물어 가릴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전의감은 빨리 추천하였으나, 혜민서는 늦게 추천하였다. 그리고 장무관은 두 곳 모두 오지 않아 선발이 늦어졌다. 그래서 두 곳 장무관을 엄중하게 징계하라고 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그런데 비변사에서는 정신민의 의술이 저명하지 못하며, 또한 전 동래부사의 군관(軍官)으로 오랫동안 동래에 있다가 이제 갓 서울로 돌아왔기에, 일본인들이 그 얼굴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그의 파견은 부당하고, 혜민서 의관 정유각(鄭維覺)과 함득일(咸得一) 중에서 사고가 없는 자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두 사람 중 함득일이 사고가 없고 의술이 조금 낫다고 하므로 함득일을 추천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이리하여 정신민에서 함득일로 의관이 바뀌게 되었다.

7월 5일 기사를 보면 대마도에서는 비선(飛船)을 보내, 이정암주의 병세가 급하여 조정에서 보내는 의원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므로, 동래부사가 데려온 군관 중에 의술이 있는 자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는 군관 이상후(李尙厚)가 의술을 대략 알고 있지만, 대마도측이 서울 의관을 청하고 또 동래 군관을 청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외람된 일이며,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보낼 수 없으므로 조정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서울에서 파견한 의관이 곧 도착할 것이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그런데 7월 11일 기사를 보면, 대마도측에서는 이정암주가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대마도주가 이정암주의 병환 때문에 밤낮 분주하게 지내다가 병을 얻어 여러 날 앓아누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서울 의관이 부산에 당도하면 그대로 대마도에 들여보내 한편으로는 이정암주를 위해 들여보냈다는 뜻을 에도막부에 보여주시고, 한편으로는 도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다.

동래부사가 이 내용을 장계하자, 예조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병환이 있어서 의원을 청하는 것은 이정암주와 비교하면 더욱 간절하고 긴급하므로, 함득일(咸得一)을 그대로 파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래부에 하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계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이정암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선의 의관을 요청한 문제는 병세가 위독하여 조선에서 파견한 의관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요청에 따라 대마도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시 조선 의술의 수준에 대한 대마도의 인식과 의관 파견 구청 문제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차왜(差倭)가 거처할 공간 구청

이 내용은 임자년(1672) 7월 11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 제1봉행(奉行)인 삼촌채녀(杉村采女) 평성령(平成令)이 예도의 분부를 받고 곧 왜관에 올 것인데, 왜관에서 실화(失火)한 이후 차왜(差倭)가 들어가 거처할 곳이 없으므로, 부산객사(釜山客舍), 사정(射亭), 영가대(永嘉臺)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훈도(訓導) 김진하(金振夏)는 김근행(金謹行)과 의논한 후 '차왜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한 말을 발설하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며, 만약 거처할 곳이 없다고 염려되면 여러 차왜와 여러 송사(送使)들이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속히 돌아가고, 그 방을 비워서 대접함이 마땅하니 무리한 말을 다시 입에서 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절하였다.

동래부사가 이에 대한 장계를 올리자, 예조에서는 평성령(平成令)이 오는 것은 주간할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관사(館舍)를 미리 정돈하면 되고, 부산객사(釜山客舍) 등처를 빌려서 들어가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하므로,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하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왜관에 화재가 난 후이고, 차왜가 대마도 제1봉행이라는 예외적인 특수 상황이지만, 대마도에서 부산객사, 영가대, 사정 등지를 차왜가 머물 공간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자료이다.

여섯째, 서적 구청

서적에 대한 구청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청한 주요 서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의학정전(醫學正傳), 화제국방(和劑局方), 비급본초(備急本草), 의학입문(醫學入門), 두진원론(痘疹原論), 퇴계집(退溪集), 동도사략(東都史略), 문체명변(文體明辨), 사서장도(四書章圖), 문헌통고(文獻通考),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춘추대전(春秋大全), 춘추호전집해(春秋胡傳集解), 해우진철주(海虞陳哲註), 오경대전(五經大全), 오경찬소(五經纂疏), 십삼경주설(十三經註說),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계몽익전(啓蒙翼傳),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演義), 주자절요(朱子節要), 동국시격품(東國詩格品), 동래독서기(東萊讀書記), 사마온공전가집(司馬溫公傳家集), 진씨악서(陳氏樂書), 오경찬소(五經纂疏), 호운

봉역통해(胡雲峰易通解), 춘추찬서(春秋纂書), 호방정찬서(胡芳庭纂書)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은 의서, 사서, 경전, 문집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우리나라 서적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서적이었다. 서적은 에도의 집권층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적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랐다. 구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서적은 방색(防塞), 즉 요청을 거절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의학정전(醫學正傳), 의학입문(醫學入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演義) 등 비교적 구하기 쉬운 책은 일본측의 구청 요구를 수용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퇴계집(退溪集)은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였다.

일곱째, 고급 비단과 모피(毛皮) 구청

고급 비단과 모피의 구청은 매년 계속되었다. 구청한 고급 모피의 종류와 그 수량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털 있는 곰가죽[有毛熊皮], 웅피(熊皮) 10~20장[령], 꼬리 있는 담비 가죽[有尾貂皮] 50령, 초피(貂皮) 50~100장[령], 당초피(唐貂皮) 20장, 상초피(常貂皮) 100장, 황구피(黃狗皮) 60~150장[령], 적견피(赤犬皮) 50~300령, 황광피(黃獾皮) 150~500령, 서피(鼠皮) 500령, 청서피(靑鼠皮) 20~100령, 산서피(山鼠皮) 150~300령, 양피(羊皮) 50~200령, 아양피(兒羊皮) 200령, 중앙피(中羊皮) 100~500령, 표범가죽[豹皮] 20령, 호피(虎皮) 15장, 홍전(紅氈) 20~500닐(立), 대홍전(大紅氈) 50닐

초피나 양피처럼, 같은 종류 내에서도 다른 품질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털이 있는 곰가죽, 꼬리 있는 담비 가죽, 체구가 크고 꼬리가 두터운 호피,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텁고 네 발이 흠이 없는 상초피(常貂皮) 등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초피(唐貂皮)는 대개 구청을 거절하였다.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텁고 네 발이 흠이 없는 상초피(常貂皮)의 구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널리 구하였지만, 발과 발톱이 모두 온전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초피는 발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구하기 어려우므로, 발톱은 없지만 좋은 품질의 초피

를 특별히 골라 구청에 응하였다. 이처럼 거절하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구하기 어려우면 비슷한 것을 지급하거나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각종 비단류의 종류와 그 수량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우사(走于紗) 1동(同), 경광초(輕光綃) 30필, 능지초(綾之綃) 100필, 화사주(花絲綃) 100필, 각색 소사(小紗) 20필, 능(綾) 2필, 초(綃) 19필, 주주(走紬) 100필, 각색 극품(極品) 대단(大緞) 100필, 50필, 백릉(白綾) 50필, 능지주(綾只紬) 50필, 잡색대단(雜色大緞) 10필, 대선단(大線緞) 10필, 소선단(小線緞) 27필, 소금선(小金線) 20필, 각색 능(綾) 100필, 각색 사(紗) 100필, 백방사주(白方絲綃) 100필, 백릉(白綾) 50필, 백화사주(白花絲綃) 100필, 각색 대사(大紗) 30필, 대금선(大金線) 20필, 선단(緞) 10필, 주사(注紗) 100필

고급 비단류는 대개 중국산이다. 따라서 일본의 구청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개 거절하였다. 모피나 고급 비단류는 대개 에도[江戶]에서 요구한 물품이었다. 에도의 장군을 비롯한 집권층의 중국산 모피나 고급 비단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인구청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구청[구무]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목계제(公木計除), 물화피집(物貨被執)·은화피집(銀貨被執)은 공무역의 대금 결제와 맞물려 있어, 공무역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청의 처리 유형의 하나인 자상매매(自相賣買; 私相賣買)는 개시무역[사무역]의 실태를 아는 데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변례집요』·『동문회고』·『춘관지』·『증정교린지』·『통문관지』 등 대일 외교관계의 기본 자료집, 『전객사별등록』·『논상사미등록』·『공작미등록』·『세선응련등록』·『세선정탈등록』·『각양차왜등록목록』 등 등록류, 그리고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의 관련 기록 등과 서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역사에 관한 연구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 밀무역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진상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

[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경주의 연구가 유일하다. 구청[구무]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증여와 유상으로 지급되는 무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물품 교류이다. 외교와 무역이 미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의 경제교류의 독특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국역본의 간행을 계기로 구청[구무]을 비롯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무역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여, 상당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金文濟, 『倭人求請謄錄』 해제, 『倭人求請謄錄 一』, 서울대 규장각, 1992.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I)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4.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II)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I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5.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제V집, 史部 2), 서울대도서관, 1982, 188쪽 「倭人求請謄錄」 항목.
- 梁興淑,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 鄭景柱,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朝鮮後期 對日貿易 事例 紹介-」 『貿易評論』 창간호,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4.
- 韓文鍾,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張舜順,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정성일 옮김, 『왜관』(田代和生 지음), 논형, 2005.
- 洪性德,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국역 춘관지』, 법제처, 1976.

-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邊例集要』(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1970.
- 『同文彙考』(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8.
- 하우봉, 「증정교린지 해제」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하우봉, 「변례집요 해제」 『국역 변례집요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국역 왜인구칭등록(Ⅲ)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을사(1665) 정월 13일

동래부사 안진(安縝)¹⁾이 정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12월 29일 예조(禮曹) 회계(回啓)²⁾ 내의 사연 및 이 달 초5일에 도부(到付)³⁾한 예조 회계 내의 사연을 즉시 역관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구무(求貿)⁴⁾ 물종(物種)을 해조(該曹)에서 또 양감(量減)⁵⁾한다는 뜻과 털이 있는 곰가죽(有毛熊皮) 전량을 다투어 줄이라는 뜻을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는데, 방금 훈도(訓導) 변승업(卞承業) 등이 직접 올린 수본(手本)⁶⁾ 내용에, 전령(傳令) 내의 사연에 근거하여 대관왜(代官倭)⁷⁾ 등에게 가서 타이르기를 ‘이번에 구무(求貿)한 잡물(雜物) 가운데 해조(該曹)⁸⁾에서 혹 얻기 쉬운 물건은 전량 무역을 허락하기도 하고, 혹 얻기 어려운 물건은 수량을 줄였으며, 그 중 털이 있는 곰가죽은 근래 품질되어 지방에서 찾아보아도 또한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량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거니와, 이는 해조에서 도주(島主)⁹⁾의 간절히 요구하는 뜻을 간곡히 따라주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공 등은 특별히 알아 달라’고 타일렀더니, 대관왜 등이 일제히 말하기를 ‘이번에 구무하는 물건은 도주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예도의 여러 곳에서 사용할 것이므로 별도로 비선(飛船)¹⁰⁾을 보내어 구무(求貿)하였고, 당초 저희들이 재량하여 줄인 것은 동래 영감께서 분부하신 뜻을 새겨듣고 부득이 임의로 재량하여 줄었는데, 또 해조에서 이렇게 수량을 감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곰가죽은 전량 줄인다는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지라, 이 뜻을 대마도로 통기하는 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소인 등이 반복하여 타이르기를 ‘이제 이번에 구무하는 물건은 전날에 비하여 더욱 많음에도 거의 다 무역을 허락한 것은 조정에서 도주를 우대하는 뜻이거늘, 공 등은 조정에서 보살펴주시는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 1) 안진(安縝): 현종 갑진(1664) 윤6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병오(1666) 9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 2) 회계(回啓): 지방 관원이 중앙정부에 올린 장계(狀啓)에 대하여, 관련 관청에서 국왕의 자문에 의하여 처리 방침을 논의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아 되돌려 보내는 문서.
- 3) 도부(到付): 해당 관아에 문서가 도착함.
- 4) 구무(求貿): 무역을 요구함.
- 5) 양감(量減): 수량을 재량하여 줄임.
- 6) 수본(手本): 공무와 관련하여 상관에게 자필로 보고하는 문서.
- 7) 대관왜(代官倭): 조선시대 대마도주가 부산 왜관에 파견하여 공사 무역을 관장하게 한 왜인.
- 8) 해조(該曹): 조선시대 육조(六曹) 중 해당하는 관청. 여기서는 왜관무역을 관장하는 예조(禮曹)를 가리킨다.
- 9) 도주(島主): 대마도(對馬島) 도주.
- 10) 비선(飛船):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수량을 줄인 것으로 의심하니 실로 편치 못하다. 곰가죽을 만약 구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무엇이 귀할 게 있다고 유독 이 물건만 허락하지 않겠는가? 이로써 추리한다면 곰가죽을 구하기 어려움을 대개 알 수 있을 것이다. 공 등이 이렇게 굳이 고집하는 것은 실로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온갖 말로 타일렀더니, 대관 등이 서로 논의하기를 '짐짓 판사(判事)¹¹⁾ 등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도중(島中)에 통기할 계획이거니와, 도주가 에도(江戶)에 들어갈 기일이 2월 상순으로 정해졌기에, 오가며 감량을 다투는 일은 미처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이미 허락한 물건과 전날에 무역을 허락한 털이 있는 곰가죽 10령(令)만이라도 이번 달 내로 속히 내려 보내주시어 도주가 출발하기 전에 미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일로 수본을 하였음. 이 수본 내의 사연을 살펴보고 또 역관 등이 하는 말을 들으니, 대관왜 등이 해조에서 수량을 줄인다는 이 말을 듣고 특별히 고집하거나 노하는 기색이 없사온데, 털이 있는 곰가죽을 전량 줄인다고 하는 데는 극히 절박하고 민망한 생각이 있어 도중(島中)으로 통기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 다시 험난할 폐단이 없을 것이로되, 만약 해조에서 과연 대여섯 벌을 구하여 기다리고 있다면, 당초에 비록 전량을 줄인다고 말하였더라도 구무물종을 내려보낼 때에 아울러 부쳐 보내어 지급한다면, 먼 곳의 사람이 낙망할 우려는 없을 듯하오며, 이미 무역을 허락한 물건 및 전날에 무역을 허락하였던 털이 있는 곰가죽 10령도 그들의 말에 의거하여 속히 수량에 맞추어 보내주셔서, 도주가 출발하기 전에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혹 마땅할 것이거니와, 이번 해조의 회관(回關)¹²⁾은 지난 12월 25일에 성첩하고 봉합하여 보낸다 하였는데 이제 정월 초5일야 비로소 도착하였는바, 발장(撥將)¹³⁾ 등의 소위가 더욱 극히 놀라우니,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신칙하여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의 에도 출발이 2월 초 열흘께에 있다 하여 전날에 구무한 물건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바, 해조 및 각 도에는 앞서 대로 분부하여 기일에 맞추어 보내라고 다시 더 신칙하시며, 털이 있는 곰가죽은 지난번에 무역을 허락한 10령은 이미 내려 보냈거니와, 이번에 또 무역을 요

11) 판사(判事): 조선시대 의금부, 중추부 등의 종1품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왜 역관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12) 회관(回關): 회계(回啓)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서인 관문(關文).

13) 발장(撥將): 역참(驛站)에서 파발을 띄워 문서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하급 관원.

구할 때 역관들이 여러 차례 막았더니, 저들이 전량을 줄인 것이 절박하다고 걱정한다 하여, 대여섯 령만이라도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전에 이미 복계(覆啓)¹⁴⁾하여 분부 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각종의 물종과 함께 일시에 내려보내되, 특별히 금군(禁軍)을 정하여 속히 발송하라는 뜻으로 다시금 분부하시며, 본조의 회관(回關)이 지난 12월 25일에 성첩되었음에도 이 달 초5일야야 비로소 도착하였을 뿐 아니라, 도장을 찍은 피봉을 사사로이 뜯어보았다고 하는바, 막중한 변방의 시급한 문서를 이렇게 늦게 전하였을 뿐 아니라, 뜯어보고 고쳐 싸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극히 놀라우니, 해당 발장 등을 엄하게 조사하여 중한 죄로 다스린 뒤, 특별히 신칙하여 후일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3도의 감사에게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정월 16일

동래부사 안진(安鎭)이 정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10척이 나왔기에 즉시 혼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에 이르기를 관수(館守)¹⁵⁾ 및 대관왜 등의 말이, ‘인삼 30근, 모시베 50필, 표범가죽[豹皮] 20령, 월린향(越隣香) 6,000개, 부용향(芙蓉香)¹⁶⁾ 1,000자루를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급급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타일러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 요구한 물건도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데, 각종의 무역 요구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지루한지? 인삼과 모시베, 표범가죽 등의 물건은 왜관에서도 무역할 수 있으니, 결단코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고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여 막았더니, 관수 등이 답하기를, ‘일의 형편이 참으로 그렇지만, 인삼과 모시베는 말하는 그대로 따르겠으나, 그 중에 표범가죽과 월린향, 부용향 등의 물건만이라도 잘 아뢰어서 급급하게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해달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도주가 조선의 가옥 제도를 구경하고 싶으나 볼 길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재목과 목수를 사들여서 왜관에다 기교를 부려 별당(別堂)을 짓고 단청을 화려하게 하였다가, 다시 철거하여 섬 안으로 운반하여 제도대로 세워서 구경거리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각별히 아뢰어 거행하게 하되, 별당 5칸에 들어가는 목재 및 솜씨 좋은 목수 15명과

14) 복계(覆啓): 주무관청에서 하부 관청에서 올린 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달아 국왕에게 올리는 일.

15) 관수(館守): 부산의 왜관(倭館)을 관리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인. 관수왜(館守倭).

16) 부용향(芙蓉香): 혼인 예식 때 피우는 향의 한 가지로, 굄기는 손가락 만하고, 길이는 대 여섯 치 쯤이다.

화원(畫員) 2인, 단청에 들어갈 주홍(朱紅)¹⁷⁾, 황단(黃丹)¹⁸⁾, 백분(白粉) 외에 기타 조선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채색은 모두 값을 주고 사들여 사용하겠다고 상세히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듣고서는 극히 놀랍고 해괴하여 타이르기를, '이런 일은 비록 값을 주고 사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이 폐단을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결코 동래 영감 앞에 입을 열 수 없다'고 충분히 막았는데, 관수 등이 말하기를 '도주가 나이가 젊어 날마다 경치 구경을 일삼고 있는데, 마음을 쏟아 발설하여 여간 거둬 당부한 게 아니라서 중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하거늘, 일이 극히 어렵다는 뜻으로 힘을 다해 막았는데, 끝내 들어주지 않으니 극히 염려된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안진이 치계한 내용을 살펴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한다고 인삼 30근, 모시베 50필, 표범가죽 20령, 월린향 6,000개, 부용향 1,000자루를 또 무역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하였는바, 비록 값을 지급하고 바꾸어 무역한다 하지만 자주 허락하여 주는 것도 또한 지루하고, 인삼 등 5종 가운데 인삼과 모시베는 역관 등이 이미 말을 하여 타일러 막아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거니와, 그 중 표범가죽 20령은 다시 타일렀으나 끝내 모조리 막기가 어렵거든 왜관에서 편한 대로 그 벌 수를 정하여 무역하여 주며, 부용향 1,000자루는 장만하기 어렵거나 굳이 막을 물건이 아닌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외의사(外醫司)에 값을 주어 재료를 모아서 짐짓 300자루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며, 월린향 6,000개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나, 일찍이 다소간 무역해 주었기에 이제 막기가 어려우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2,000개를 구해서 속히 내려보냄이 합당할 듯하며, 별당 5칸을 짓고 단청을 하였다가 철거하여 대마도로 옮겨가는 일은, 이미 예도에서 청하는 일이 아닌데다 또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하는 데 견줄 것이 아니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들이 역지를 낼까 염려하여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굽혀 따라주었으나, 매양 새로운 간청이 있을 때마다 그 청을 반드시 따라줌으로써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장계에 진술한 바와 같으니, 이는 엄중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쳐서 기어코 막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17) 주홍(朱紅): 붉은 빛을 내는 데 사용되는 황화수은(黃化水銀)을 성분으로 하는 안료(顔料).

18) 황단(黃丹): 주황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안료.

을사 3월 16일

동래부사가 3월 13일 성첩한 장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훈도 변승업 등에게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갑진조(甲辰條) 일특송사(一特送使)¹⁹⁾ 1호선과 2호선이 공작미(公作米)²⁰⁾를 실어가려고 노인(路引)²¹⁾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관수(館守)에게 말하기를, ‘이미 돌아들어갔는데 이제 또 돌아온 것은 규정 밖의 일이니 속히 들여보내라’고 하며 책망하였고, 인하여 사정을 물었더니 대마도에는 특별히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이 달 15일 사이에 배를 타고 에도로 간다고 하며, 홍전(紅氈)²²⁾ 20넛과 좋은 품질의 녹두가루 300근, 잣 8섬, 호두 8섬, 수만호(水滿瑚)²³⁾ 가장 큰 것으로 5덩이, 살아있는 피꼬리 7마리, 적죽(笛竹)²⁴⁾ 길이 2자 남짓으로 큰 것 3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려고 하니 급급하게 무역을 허락해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각종의 무역 요구가 이렇게 빈번하니 보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홍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근래에는 서울에도 전혀 없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으로는 에도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렇게 더 무역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홍전이 만약 전혀 없다면 그 밖의 잡물이라도 속히 무역을 허락해주되, 살아 있는 피꼬리는 에도의 집정(執政) 등이 구하는 것이니 예사로 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일로 회언(回言)한다고 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 가운데 녹두가루와 호두, 잣 등 3종은 저번에 겨우 무역을 요구하여 이미 수량대로 지급하였거늘 또 이렇게 간청하였는 바 극히 지루하기로, 역관에게 말하여 엄한 말로 막을 계획이며, 적죽(笛竹) 건도 지난 가을에 무역을 요구할 때 순영(巡營)에서 분정(分定)하여 수송하여 관왜(館倭)에게 들여주었더니, 대마디가 매우 짧고 형체와 품질이 도중(島中)의 척도나 모양과 같지 않다고 하여 물리치고 받지 않았기로, 또한 이런 뜻으로 타이르게 하였으니, 역관 등이 틀어막은 수본이 오기를 기다려 추가로 장계할 계획이며, 홍전은 우리나라 산물이 아니라고 훈도

19) 특송사(特送使): 조선정부에서 왜관무역(倭館貿易)을 위하여 공식으로 인정해 준 무역선 선단의 하나인 특송선의 책임자. 해마다 세견선(歲遣船) 17척과 특송선(特送船) 3척 등 20척의 입항을 허락하였다.

20) 공작미(公作米): 일본과의 공무역을 위해 마련한 쌀.

21) 노인(路引): 관청에서 병졸이나 장사꾼에게 내어준 여행권.

22) 홍전(紅氈): 짐승의 털로 짜서 붉게 물을 들인 모직물.

23) 수만호(水滿瑚): 흰 빛의 광택이 있는 마노석(瑪瑙石).

24) 적죽(笛竹): 피리를 만들기에 적당한 대나무.

등이 이미 막았는데, 수만호와 살아있는 피꼬리 등의 물건은 실로 막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먼 곳의 사람이 구하는 것을 모조리 틀어막기가 어려운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갑진조 특송 1호와 2호 두 선박이 지난해 9월이 이미 들어갔는데 이제 또 나왔으니, 실로 이는 규정 밖의 일인지라 장계 대로 역관에게 명하여 다시 엄한 말로 책망하고 타일러 즉시 들여보내게 하며,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흥전은 이미 막았고, 녹두가루 등 3종도 방금 이미 준급(准給)하였는데 또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막았다고 하며, 적죽은 형체와 품질이 도중의 견양과 같지 않다고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런 뜻으로 타이른다 하였거니와, 수만호와 살아 있는 피꼬리에 대하여는 먼곳 사람이 구하는 것을 모조리 막기는 참으로 장계의 사연과 같이 어려운 듯하니 수만호는 도내에 생산되는 고을이 없지 않고, 살아 있는 피꼬리도 아울러 본도로 하여금 편한대로 찾아주게 하되, 일자가 이미 급박하여 수량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서, 수만호 5마리와 살아 있는 피꼬리 7마리 중 각기 그 들씩 감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3월 24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3월 18일 성첩한 장계. 이 달 18일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작은 배 한 척에 두왜(頭倭) 2인 등이 나왔기에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주가 이 달 보름께에 에도로 가는 배를 탈 예정이었는데, 에도의 집정 등이 요청하기를 흰말꼬리 파리채(蠅鞭) 150자루를 조선에 무역 요구하여 도주가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오라 하였기로 도주가 행차를 정지하고 저희들에게 시켜 관수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을 내어보냈다'고 하였으며, 관수는 말하기를 '집정 등이 요구하는 바가 이렇게 긴급하게 대마도에 이르렀기에 도주가 행차를 정지하였으니, 동 파리채의 무역을 요청하여 들여보내는 일이 십분 급박하니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대마도에서 간청하는 바가 비록 이러하나, 파리채 150자루를 일시에 만들기는 극히 어려운 형편이니 결코 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허다한

파리채를 일시에 만들기는 그 형편이 과연 어려우나, 그 중 50자루는 모조록 엮어 만들어서 무역을 허락하고, 100자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말꼬리만 찾아 주면 저희들이 견양대로 만들어 들여보내겠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흰말꼬리를 다수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힘을 다해 타일렀는데, 에도에서의 무역 요구는 수량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끝내 듣지 않겠다고 하며, 전날에 무역 요청한 호두와 잣 각 8섬과 녹두가루 300근은, 전날에 무역을 요구할 때 해조에서 수량을 줄였기로 부족하다 하였으니 끝내 허락하지 않고 줄였다고 하는바, 비록 수량대로 찾아줄 수 없더라도 또한 전연 막기는 어려우며, 적죽도 우리나라 대나무의 품질이 비록 대마도의 견양과 같지 않으나 또한 가려서 지급하여 취사하도록 하며, 또 에도의 소용이라고 칭하며 무역을 요청하는 파리채는 구하는 바 수량이 150자루에 이를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도주의 행차가 이 때문에 정지하였다고 하는바, 설혹 그 말대로 50자루를 묶어 만들어 무역을 허락하고 100자루에 들어갈 말꼬리만 찾아준다 하더라도, 들어갈 흰 말꼬리는 그 수량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형세가 급박한데 어떻게 기일에 맞추어 찾아줄 수 있을지, 역관 등이 힘써 수량을 줄이도록 청하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전후로 무역을 요청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지루하여 매양 굽혀서 부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나, 이제 무역을 요청한 흰 말꼬리 파리채는 집정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물건이라 하고 도주가 에도로 가려다가 이 때문에 행차를 정지하였다고 하는 바, 끝까지 막아서 먼 곳 사람이 낙망하는 한탄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될 듯하나, 허다한 파리채를 일시에 만들어 주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50자루는 장계대로 묶어 만들어 무역을 허락하되, 100자루에 사용되는 흰말꼬리는 쉽게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본도에 명하여 얻을 수 있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게 하며, 호두와 잣 각 8섬과 녹두가루 300근은 전날에 무역을 요청할 때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여 부족하다고 칭하면서 이제 또 더 무역할 것을 요청하니, 호두 등 3종은 비록 그 원래의 수량 대로 하기는 불가하나 또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함이 합당하다는 일로 본도의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4월 25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대관왜(代官倭)의 말이, '전에 나전(螺鈿)²⁵⁾을 만들 적에 미진한 일이 있으므로, 동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 전날에 부렸던 귀국의 나전장(螺鈿匠)을 이전의 인원 수 대로 급속히 불러달라 운운'하였는데, 전날에 와서 요청하였을 때 한편으로는 날날이 열거하여 장계로 알리고, 한편으로는 본도에 첩보를 보내어 본도에서 통영(統營)²⁶⁾으로 이문(移文)하여 전례 대로 불러 주었다가 겨우 일을 마치고 들여보냈음에도, 이제 또 불러달라고 청하는 바, 매양 불러주기가 실로 지루한 일이지만,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이제 이미 가져왔다고 하니, 전에 불러주었던 장인을 이제 와서 막기는 그 형편이 어려운 듯하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나전장을 이미 불러다가 만든 뒤에 미진한 일이 있다고 하여 또 불러주기를 청하는 바, 과연 지루하기는 하되 만든 물건을 이미 가지고 왔으니 다시 불러주기를 허락하는 것도 무방한 듯하니, 동 장인을 이전의 인원 수 대로 정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험함.

을사 5월 17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5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8일의 비선(飛船)에 두 왜(頭倭)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관수(館守) 및 차왜(差倭)²⁷⁾ 굴성진(橘成陳)에게로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두 왜인에게 사정을 탐문하니, 관수가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4월 초3일에 무사히 오미자(五味子)에 도달하여 예도의 집정 등이 보낸 서찰을 받아보았는데, 대군(大君)이 조선의 위라²⁸⁾ 새끼말[月羅兒馬]로 두세 살[禾]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니, 급급히 조선에 통기를 날려 즉시 무역하여 보내라고 하였고, 도중(島中)의

25) 나전(螺鈿): 굴조개 껍질을 썰어낸 자개를 세공하여 옷칠로 붙여 만드는 가구장식.

26) 통영(統營): 한산도에 있었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

27) 차왜(差倭): 특별한 일로 차출된 왜인.

28) 위라[月羅]: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 화마(花馬).

봉행(奉行)²⁹⁾ 등이 보낸 사신에도 이렇게 하여 나왔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 보낼 필요는 없고, 한편으로 조정에 장계로 알리고 한편으로는 도내 각 관아에 알려져 있는 곳에서 속히 보내어 팔게 하면 값대로 무역하겠다 운운'하였음.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다 주기도 전에 워라 새끼말을 또 이렇게 무역을 요청하는 바, 일이 극히 통절하여 마땅히 역관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막아야 할 것이로되, 일찍이 준마(駿馬)의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기로, 연유를 아울러 장계로 알리오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의 행차가 오사카 성에 이르러 에도에서 집정 등이 보낸 서찰로 인하여 워라 두세 살 된 새끼말의 무역을 청한다고 하여 두왜가 이 일로 나왔다고 하는바, 비록 잡물의 무역 요구와는 다름이 있지만, 전에 말의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이 대군이 특별히 요구하는 말을 시종 막아서 그들을 낙망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5월 20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5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변승업(卜承業)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 굴성진(橘成陳)이 그가 나온 지 장차 다섯 달이 되는데, 주간한 여러 일이 모두 결말이 나지 않았으나, 속히 들어오라는 도주의 처치가 있기에,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잡물의 발기〔件記〕를 전에 이미 판사(判事) 등에게 주었으니, 아마도 이미 조처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나 전례대로 속히 들여 주시라고 하여, 그 요구한 물목의 발기를 아울러 동래부에 올리오니, 이전의 등록을 상고하여 처치하여 달라고 수본한다” 하였음. 신이 각년(各年) 등록(騰錄)³⁰⁾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경진년(1640) 12월분 양국 차지왜(次知倭)³¹⁾ 등지승(藤智繩)에게 상화지(霜華紙)³²⁾ 2권, 장지(壯

29) 봉행(奉行): 대마도의 도주를 보좌하는 관직 명칭.

30) 각년(各年) 등록(騰錄): 관청에서 해마다 처리한 문건의 사본을 정리해 좋은 책자.

31) 차지왜(次知倭): 특정 일을 담당하는 왜인.

32) 상화지(霜華紙): 윤이 나면서 질긴 종이의 일종.

紙)³³⁾ 4권을 입급(入給)하였으며, 임오년(1642) 5월분으로 호간(虎肝)³⁴⁾ 1부(部)와 호육(虎肉)³⁵⁾ 10첩[貼]과 사장부유둔(四張付油菴)³⁶⁾ 3부(部)와 우산지(雨傘紙) 1권과 녹두가루 1말과 법유(法油)³⁷⁾ 1말을 등지승에게 또 입급하였으며, 임인(1662) 3월분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 1질, 『의림촬요(醫林撮要)』 1질, 우황(牛黃)³⁸⁾ 2부를 굴성반(橋成般)에게 들여 주었거니와, 이제 굴성진이 이른바 별구청(別求請)³⁹⁾의 발기는 요구하는 바 각종 물건이 28종이나 되니, 결코 그 수량대로 부응해서는 안되겠기로 다시금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막으라 하였는데, 훈도 변승업 등의 수본 내용에 “분부한 대로 차왜(差倭) 등에게 타일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별구청은 본디 때에 따라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며, 심지어는 서울에서 또 가감하기도 하였거니와, 이제 이번 구청 발기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응자(鷹子)⁴⁰⁾ 3연(連), 극상품의 참묵[眞墨]⁴¹⁾ 10자루, 극상품의 황모필(黃毛筆)⁴²⁾ 20자루, 인삼 1근, 우산지(雨傘紙) 2권, 호담 3부, 호육 30근이고, 기타 각종 물건도 역시 바라는 바인데, 오직 해조 및 동래 영감께서 가감하여 처치하시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차왜 굴성진이 돌아갈 기한이 분명히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이른바 별구청의 물종이 타일러 수량을 줄인 뒤에도 아직 7종이나 되는 바, 비록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나 또한 수량대로 부응하여 후일의 폐단을 열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바도 또한 서울에서 가감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되, 그 중 응자 3연은 이미 등지승과 굴성반 등이 구청한 물건이 아닐 뿐 아니라, 각관에 분정한 연례(年例)⁴³⁾ 응련(鷹連)만 하더라도 왜관에 들어가 죽는 것이 전후로 계속되어, 각년도의 미수가 200여 연이나 되어 그 폐단이 증가하고 있기로, 일변으로 역관에게 전령하여 타일러 막을 계획이오며, 연유를 치계하오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회이하여 역관에게 분부하여 시종 방색하게 하도록 할 일.

33) 장지(壯紙): 두껍고 단단하면서 질긴 상품 종이의 일종.

34) 호간(虎肝): 범의 간.

35) 호육(虎肉): 범의 고기.

36) 사장부유둔(四張付油菴): 두꺼운 기름종이 너장을 잇대어 붙여 만든 장막용 유지(油紙).

37) 법유(法油): 들깨를 짜서 만든 들기름.

38) 우황(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덩어리. 강장제(強壯劑)로 사용된다.

39) 별구청(別求請): 정식으로 지급되는 여비 외의 특별 여비.

40) 응자(鷹子): 사냥용으로 길들여 사용하는 매.

41) 참묵[眞墨]: 품질이 좋은 상품의 먹. 진현(眞玄). 참묵.

42) 황모필(黃毛筆): 족제비 털로 만든 붓.

43) 연례(年例): 해마다 회수와 수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둔 것.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곽왜(橘倭)가 담당하던 여러 일을 모두 결말짓지 못하고 장차 속히 들어가려고, 등록에 의거하여 잡물을 별구청(別求請)한다 하면서 그가 써 준 받기에는 각종 물건이 28종이나 되기로, 이미 역관에게 타일러 수량을 줄이게 하였더니,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도 7종이나 되는바, 그 중에 호육(虎肉)은 많이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30근 중에 15근을 줄이고, 호담(虎膽)⁴⁴⁾ 3부(部)와 우산지(雨傘紙) 2권, 참먹[眞墨] 10자루 등 4종을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찾아 지급하게 하며, 극상품 황모필 20자루와 인삼 1근은 해조에서 마련하고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속히 내려보내어 그가 돌아가기 전에 미칠 수 있도록 하되, 응자(鷹子)는 각관의 연례 미수(未收)가 200여 연이나 되니, 이제 다시 허락하여 그 폐단을 더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장계 내의 사연과 같으니, 구하는 바 3연은 장계대로 역관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게 하며, 7종 이외에 기타 각종 물품은 비록 다시 구하는 물건이 있더라도 또한 역관에게 명하여 시종 막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희함.

을사 8월 초4일

동래부사 안진이 7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왜(倭)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두왜 1인 등이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관수 및 대관왜 등에게 봉행(奉行) 등이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그 사연을 물었더니 관수 등이 말하기를, ‘흰모시베[白苧布]⁴⁵⁾ 20필, 생모시베[生苧布]⁴⁶⁾ 5필, 극품의 큰 참먹 30자루, 큰 하수오(何首烏)⁴⁷⁾ 2근, 백렴(白蘘)⁴⁸⁾ 1근, 아교(阿膠) 1근, 홍모전(紅毛氈) 200냥, 주우사(走于紗) 1동(同), 경광초(輕光綃) 30필, 옥대전(玉帶錢) 50개 등의 물건을 예도의 집정 등이 무역한다고 봉행 등이 어쩔수 없어 사신을

44) 호담(虎膽): 범의 쓸개.

45) 흰모시베[白苧布]: 빛깔이 흰 모시베. 눈모시.

46) 생모시베[生苧布]: 잿물에 담가 찌서 표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모시베. 생모시.

47) 하수오(何首烏):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만초 새박덩굴의 뿌리. 강정(強精), 강장(強壯), 완화(緩和)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48) 백렴(白蘘): 낙엽 덩굴 나무 가위톱의 뿌리. 학질(瘡疾)이나 창독(瘡毒)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보냈으니 급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저희들이 말하기를 '각종의 무역 요구가 이렇게 빈번한데, 홍모전(紅毛氈)과 주우사(走于紗)와 경광초(輕光綃)와 옥대전(玉帶錢) 등의 물건은 본디 우리나라 생산물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타일러 겨우 막았거니와, 그 밖의 6종의 물건은 예사로 여기지 말고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간절하게 말하느니,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계속하여 들여 주었음에도 이제 또 비선을 내어보내어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라 칭하는데, 그 중에 옥대전 등 4종은 역관 등이 이미 막았고, 흰모시베 등 6종은 끝내 막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무역하는 바 물건은 모두 공무목(公貿木)⁴⁹⁾으로 값을 계산하여 줄이는 것이고 원래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래에 와서 무역 요청이 전후로 이와 같이 빈번하여 극도로 지루하여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그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품의 종류를 보니 그 중 옥대전 등 4종은 우리나라 생산물이 아니라고 역관 등이 이미 말을 하여 막았거니와, 그 나머지 흰모시베 등 6종은 또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기에 이제 막기가 어렵고, 극품의 큰 참떡 30동 내에 20동, 큰 하수오 2근 중 1근, 아교 1근을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마련하여 주라 하되, 백렴(白藓)은 곧 해서(海西)⁵⁰⁾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백렴 1근은 전례대로 황해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본조로 올려 보내라고 한 뒤에 동래부로 내려보내며, 흰모시베 20필과 생모시베 5필도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또한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램을 잃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각도 및 해조에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8월 초10일

경상감사 김휘(金徽)가 8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전에 도부한 예조 계하(啓下)의 관문 내용에, "당해 도주가 오사카[大坂]성에 도착하여 에도의 집정 등이 보낸 서찰로

49) 공무목(公貿木): 조선후기 왜관의 공무역(公貿易)에서 조선측의 결제 대금으로 획득해 놓은 포목(布木). 일년에 대개 400동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50) 해서(海西): 황해도(黃海道).

말미암아 무역을 요청한 위라[月羅] 두세 살 되는 새끼말을 본도에서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일로 관문을 보냈기로, 동 두세 살 되는 새끼말을 각기 그 경내 및 관아에서 기르는 말 중에서 속히 동래로 보내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각관에 분부하였는데, 방방곡곡에 찾아보아도 무역을 요구하는 말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다는 각 고을의 첩보로 인하여, 본도에서는 찾아 무역을 허락할 길이 만무하니 서울에서 여러 가지로 수소문하여 찾아 내려 보내어 즉시 무역을 허락할 일로 전 감사 신 임의백(任義伯)이 날날이 열거하여 예조로 이문(移文)하였는데, 회답 내용에 도내의 허다한 각 고을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서울 도성 안에서 어떻게 구하겠으며, 하물며 대군이 특별히 구하는 물건인데 진작 무역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이문하여 서울에서 무역하여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유를 모르겠으니, 한결같이 당초 계하한 사연대로 상고하여 급속히 거행하라는 일"로 이문(移文)하였기로, 신이 부임한 지 10일이 되지 않아 도내의 물정을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하거니와, 전 감사 신 임의백이 한편으로 각 고을에 독촉하고 한편으로 동래의 왜역(倭譯) 등에게 분부하여 찾아보았으되 저들이 구하는 말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그 나이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위라 모양만 취한다면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여기서는 반드시 두세 살 된 위라 새끼말을 구한다고 하기로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리 한지라, 신이 바야흐로 각 읍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기한을 정해 놓고 독촉하였으나, 또한 반드시 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극히 염려되니, 다른 도에도 똑 같이 널리 구하여 기필코 구하기를 기약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복계하여 처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지난번에 전 감사 임의백이 대군이 별도로 요청하는 위라 두세 살 된 새끼 말을 본도의 각 고을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서울에서 사서 보내라는 뜻으로 본조에 이문하였는데, 본도에서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계하하여 알린지 이미 여러 달이 된 뒤에 비로소 서울에서 사서 보내라고 한 것은 일의 사체가 부당하기로, 사유를 갖추어 회이하여 당초의 계하한 사연대로 급속히 거행하라고 분부하였더니, 이제 김휘가 또 위라 새끼말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을 장계로까지 알려 사유를 갖추어 진술하였으니, 저쪽 사람이 특별히 구하는 말을 이미 무역을 허락한 뒤에 이제 중지할 수는 없는데 본도의 형편 또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계 대로 충청도와 전라도 두 도에서 편리한 대로 의논하여 똑 같이 널리 구하여 기어코 반드시 구하여 속히 동래부로 내려 보내라고 두 도의 감사와 본도 감사, 동래부로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9월 초4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8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4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을사조(乙巳條) 세건(歲遣) 제9선 제10선, 제11선, 제12선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각기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의 말이 ‘능지초(綾只綃) 100필, 화사주(花絲紬) 100필, 홍전(紅氈) 100냥을 무역 요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전과 같이 탈을 잡지 말고 이번에는 일일이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거늘, 저희들이 답하기를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이런 물건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역을 허락할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탈을 잡는다고 말을 하는가? 이제 비록 간절히 구하여도 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이는 곧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므로 도주가 채삼 말을 하여 보냈는데도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지 못했다고 책망이 여간 엄중한 게 아니어서 극히 염려되니, 이번에는 널리 구하여 무역을 허락해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전날에 들여보내준 파리채(蠅鞭) 30자루는 처지는 말갈기가 길지 않아 보기에다 매물참음에도 공 등이 간청하는 바람에 들여보냈는데, 봉행 등의 사신(私信)에 이르기를 동 파리채를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무역 요구하여 친히 가지고 가서 집정 등에게 직접 들였는데, 진작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보낸 물건이 이렇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주가 요구하는 수량에도 맞지 않으니 결코 에도로 들여보내기가 어렵다고 책망하며 돌려보냈으니, 이제 가지고 온 파리채 30자루를 고쳐서 50자루를 맞추어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라’ 하거늘, 저희들이 타이르기를 ‘파리채를 묶어 만드는 일은 극히 어려워서, 비록 30자루라도 간신히 무역을 허락한 데는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제 또 고쳐주고 또 20자루의 무역을 더 허락하라 하는 것은 실로 극히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러 막았더니, 관수 등이 말하기를 ‘일의 형편이 비록 그렇지만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비록 당초대로 100자루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50자루는 들여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모쪼록 무역을 허락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견책을 모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함.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모두 우리나라 생산물이 아닌데, 역관 등이 엄한 말로 막지 못한 것은 극히

부당하거니와, 신이 각년등록(各年騰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지나간 신묘년(1651) 분의 각색 소사(小紗) 21필, 능(綾) 2필, 초(綃) 19필 등은 해조에서 무역을 허락하였으며, 신축년(1661) 분 홍전(紅氈) 15립은 본부에서 장사꾼 등에게 거두어 합하여 입급하였으며, 그 뒤로는 매양 홍전을 요구하였으나 일일이 막았거니와, 이번에 구하는 3종은 그 수가 극히 많아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는 어렵기로, 역관 등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일러 혹은 막고 혹은 수량을 감할 계획이며, 파리채에 있어서는 올해 초여름에 해조에서 50자루의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동 파리채는 온 도내에서 오직 경주부 한 곳에서만 만들고,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일이 쉽지 않기로, 경주부에서 감영으로 첩보하여 겨우 30자루만 만들어 저번에 입급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 30자루를 고쳐 만들려 하고, 반드시 50자루의 수량을 채워달라고 하는 바, 이전의 무역 요구를 마치고도 전에 또 이렇게 와서 청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까지 이렇게 다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극히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로되, 종전에 혹 이미 허락할 때가 있었기에 본부에서는 이제 모조리 막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할 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의 전후 무역 요구가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는데 일일이 굽혀서 부응하기에는 형편이 실로 감당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번의 능지초(綾只綃), 화사주(花絲紬), 홍전(紅氈) 등의 물건은 수가 백에 이르도록 많은데다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즉 마땅히 막아야 할 것이로되, 이런 물건은 장사꾼들이 예사로 가지고 가서 왜인들과 사사로이 매매할 뿐 아니라, 또한 일찍이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일체 막아서 먼 곳 사람이 낙망하여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운 듯하니, 상항의 초(綃)와 주(紬) 각 100필 중 각 30필과 홍전(紅氈) 100립 중 30립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대로 사들여 보내게 하되, 서울에서 일시에 사들이기는 어려우니 초와 주 각 10필과 홍전 10립은 동래부에 명하여 장사꾼들에게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마땅하며, 파리채 50자루는 묶어서 만들기가 비록 쉽지 않다고는 하나, 이미 본도에서 생산하는 물건이고 저들이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을 하여 시종 거절하기에는 더욱이 막막한 일이니, 그들이 구하는 수량대로 또한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주되, 전날에 지급한 30자루도 늘여지는 갈기가 길지 않고 보기에다 매몰차다 하는 바, 이미 먼 곳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물건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가 퇴송(退送)을 당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각별이 정밀하게 만들어 주라는 뜻으로 아울러 회이함이 어
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9월 초7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8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이 “왜인
들이 무역을 요구한 능지초(綾只綃), 화사주(花絲紬), 홍전(紅氈) 등의 물건이 본디 우리
나라 소산이 아니고, 근년 이래로 더욱 매우 희귀하기로 저번에 여러 번 간절히 요청할
때 끝내 부응하지 않았으니 이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십분 타일러 막았더니, 관
수 등이 말하기를 ‘이 세 가지 물건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끝내
막기 때문에 비록 무역 허락을 얻지는 못하지만, 파리체에 있어서는 전날에 들여보낸
30자루가 늘어지는 갈기가 길지 않고 보기에다 매물차다고 도중에서 퇴송한 물건이니
결코 들여보낼 수가 없으며, 저희들이 이미 잡은 물건을 또 점퇴(點退)하여 고쳐 마련
하는 것도 불가하겠기로, 이것은 이제 짐짓 그대로 왜관에다가 놓아두고 사서 사용할
계획이거니와, 당초 무역을 요구한 100자루 가운데 비록 무역 허락을 수량대로 받지는
못했으나, 이 30자루 외에 이제 50자루는 지극히 정밀하게 골라 만들어서 급급히 무역
을 허락하라’고 여러 가지로 간청하는바, 당물(唐物)⁵¹⁾ 3종은 이미 틀어막은 뒤에 파리
체를 일시에 막기에는 저들이 반드시 낙망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수본(手本)한다”
하였음. 이 수본을 보니 당물 3종을 전량 막아놓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그 중
파리체는 30자루를 이미 만들어 지급하였는데,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결코 대마도로 돌
려보낼 수 없으니 왜관에서 짐짓 사들여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 외에 50자루를 또
정밀하게 만들어 무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바, 이른바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한 파리체
30자루도, 품질과 체제가 극히 바른데도 그 수총⁵²⁾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꼬리
를 잡는바, 이것이 비록 한 두 달 안에 다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물 3종을 전
량 막아놓은 뒤에, 파리체 50자루의 무역을 또 허락하지 않는다면 왜인들이 낙망할 염
려가 없지 아니하며, 먼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무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51) 당물(唐物):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52) 수총(垂總): 파리를 쫓는 파리체에 사용하는 말총의 길게 늘어지는 부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 동래부사 안진의 장계 내용에 능지초 화사주 각 100필, 홍전 100냥 등의 무역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하였으며, 파리채는 전 날에 만들어 준 30자루가 수충이 길지 않다고 퇴송(退送)하고, 20자루를 더하여 50자루를 맞추어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끝내 막지 못한다고 치계(馳啓)하였거늘, 도주(島主)가 집행(執政) 등에게 사용하려고 구하는 것이라는 전후의 간절한 요청을, 일체 방색하는 것은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긋남이 있고, 능지초와 화사주 각 100필 내에 각 30필과 홍전 100냥 내에 30냥을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한다는 일로 복계하여 윤택을 받아 분부하였는데, 이제 이 안진의 장계를 보면 능지초와 화사주와 홍전 등의 물건은 이미 주선하여 막았고, 파리채도 전날에 만들어 준 30자루는 비록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점퇴하지 않고 왜관에 놓아두고 사용하고, 이 외에 50자루를 정밀하게 만들어 무역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위 항목의 3종 당물을 이미 막아놓은 뒤에 50자루 파리채는 다시 수량을 줄여 먼 곳 사람이 낙망하게 하는 우려에 이르도록 하기는 어려우니, 장계대로 본도에 명하여 파리채 50자루를 전과 같이 하지 말고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을사 9월 16일

경상감사 김휘(金徽)⁵³가 9월 17일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동래부사 안진(安縝)의 서첩(書牒) 내용에, “도주가 무역 요구한 워라 새끼말을 청도 등 7개 읍에서 찾아 보냈거늘, 즉시 왜관에 들여 무역을 허락하였더니, 그 중 함안 말이 조금 좋다고 하여 이미 피집(被執)⁵⁴되었으니, 이 뒤로는 동 새끼말을 찾아보내지 말라는 일로 첩정(牒呈)한다” 하였음. 동 워라 새끼말은 신이 도입한 초기에 기한을 정하여 찾아내라는 일로 엄하게 각 고을에 신칙하였으나, 또한 반드시 구할른지 알 수 없어서 다른 도에도 똑 같이 널리 구하라는 뜻으로 치계(馳啓)하였으나, 이제 함안 말을 이미 피집하였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각도에 분부하여 찾아보내지 말도록 함이 합당하겠기에 감

53) 김휘(金徽, 1607-1677): 자는 돈미(敦美), 호는 사휴정(四休亭).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 대사헌을 거쳐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54) 피집(被執): 물건을 사기로 작정하고 대금 결제를 미룬 채 미리 잡아 둔.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해당 물건의 고객에 의하여 이미 선점되었으므로, 판매 약정이 된 물건을 잡혔다[被執]고 한다.

히 이렇게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충청도·전라도 등에 도에 이문(移文)함.

을사 10월 초9일

동래부사가 10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시열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을사조(乙巳條) 세견(歲遣) 제16선과 제17선, 동년조 이특송(二特送) 1호선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나왔는데,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관수 등의 말이 ‘화룡필(畫龍筆) 작은 것으로 100자루를 예도의 집행(執政) 등이 구청(求請)하니 속히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일로 봉행(奉行) 등의 사신 및 동 붓의 견양을 내어보냈으니, 예사로 보지 말고 한결같이 견양대로 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 하거늘, 저희들이 답하기를 ‘이 물건이 비록 긴요한 물건은 아니나, 전날에 각종 무역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닌데, 매양 예도에서 무역을 요구한다고 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공 등이 어찌하여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막는가? 마음대로 중지할 수는 없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소망에 부응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 하면서 끝내 듣지 않고 동 견양을 내어주기에, 그 견양 및 노인(路引)을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왜인 등이 전후로 구청하는 것이 극히 지루한데, 붓과 먹의 무역을 허락하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기에 동 견양을 올려 보내오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되, 이번 이 왜필(倭筆)은 그 모양을 본 뒤에 도로 내려보내어 왜관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화룡필 작은 것으로 100자루를 집행 등이 구청한다고 또 무역을 요청하였는데, 전후로 무역의 요청에 곧장 집행의 요구라고 칭하였는바 각종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극히 지루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물건을 끝내 방색하는 것은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가 아니니, 작은 화룡필 100자루를 장계대로 해조에 명하여 그 견양에 따라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이문(移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택함.

을사 10월 17일

동래부사가 10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9일에 비선(飛船) 한 척에 두왜(頭倭)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두왜가 말하기를, ‘대마도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잣과 호두 각 10섬을 대마도에서 긴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들여보냈다’고 간절하게 말을 하였다고 함. 이전부터 왜인 등이 왜관에 통보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무역 요구의 빈번함이 요즈음처럼 심한 적이 없으니, 마땅히 타일러 막아야 하겠으나, 이제 이번의 호두와 잣은 곧 매년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인지라, 이제 와서 굳이 막기는 어려운 듯한데 어떻게 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이 매[鷹子]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잣 10섬, 호두 10섬을 대마도에서 긴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바, 무릇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비록 공무목(公貿木)을 계산하여 줄이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무역 요구가 요즈음처럼 잣은 적이 없기에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제 이번 두 가지는 매년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이라 끝내 막기는 어려우니, 잣과 호두 각 10섬 중 본도에서 절반의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병오(1666) 정월 초5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왜인 무역 요구에 대하여 운운한 일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근래 왜선이 잇달아 나와서 전후로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여 실로 견디기가 어려운데, 규정 외에 나온 선박은 엄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쳐서 속히 들여보내게 하며, 새로 무역을 요구하는 가운데 능지초(綾只綯), 화사주(花絲紬), 주주(走紬), 홍전(紅氈), 영롱안(玲瓏鞍) 등의 물건은 이미 막았거니와, 시종 견고하게 방색하게 하여 일체 허락하지 말도록 하며, 인삼은 일찍이 전날의 무역 요구로 말미암아 해조에 명하여 30근을 무역하도록 허락하였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며, 대구어(大口魚)와 잣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1,000마리 가운데 500마리와 20섬 가운데 10섬을 본도에 명하여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하게 하며, 살아있는 노루 5마리는 전에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니 또한 부응하도록 허락하며, 살아 있는 찌꼬리는 산출 될 때를 기다려 구하여 주도록 하며, 미선(尾扇)⁵⁵⁾ 50자루는 수량이 많지 않으니 전라도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동래 부로 곧장 보내라는 일로 양 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하며, 이전에 무역을 요구한 파리채는 이미 허락한 뒤로 아직까지 만들어 보내지 아니하여 누차 재촉하는 폐단이 있게 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니, 경상감사 김휘(金徽) 및 당해 분정된 고을 수령을 유사(有司)에 명하여 아울러 추고(推考)하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병오 3월 18일

동래부사가 3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4척이 나왔기에 즉시 역관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병오조(丙午條) 세견(歲遣) 제1선과 동 선박의 수목선(水木船)⁵⁶⁾ 제2선, 제3선 등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으며, 관수(館守) 및 대관(代官) 등의 말이, ‘도주가 분부하기를,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각색의 미선(尾扇) 200자루, 각색의 승두선(僧頭扇)⁵⁷⁾ 100자루, 각색의 당선(唐扇) 100자루, 별선(別扇) 50자루를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전에 무역을 요청한 바, 살아 있는 찌꼬리 새끼는 산출되는 곳에 기일에 앞서 알려 두었다가 산출될만하면 즉시 구해달라’고 하였으며, ‘도주의 큰 배에 사용할 범죽(帆竹)⁵⁸⁾ 2개를 연례(年例)로 지급하는 범죽 가운데서 길이가 15발 남짓하고 형체가 큰 것을 또한 속히 사들이도록 허락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15발의 범죽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였더니 듣지 아니한다”고 회연하였음. 전후로 나온 왜인 등이 이제 바야흐로 왜관에 가득하여, 그 사이 접대하는 병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다가, 각종의 무역을 요구하는 물품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으니 극히 통탄스러운데, 각색의 부채는 원래 중요하거나 어려운 물건이 아니기로 역관 등이 막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 바라며,

55) 미선(尾扇): 대오리를 잘라 엮고 종이를 붙여 만든 둥근 부채의 일종.

56) 수목선(水木船): 연례 송사선이 올 때 물, 나무, 식량 등을 공급하기 위해 따라오던 선박.

57) 승두선(僧頭扇): 꼭지를 둥글게 만든 부채.

58) 범죽(帆竹): 돛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

살아 있는 피꼬리는 산출 즉시 구해 달라는 뜻으로 일찍이 본부에 장계로 말미암아 이미 계하하였기로 다시 순영에 첩보하였으며, 범죽은 역관 등이 타일러 막았지마는 왜인이 듣지 않는다고 하거니와, 이는 부산진에서 담당하여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라서 본디 그 수량이 있으니 번거롭게 장계할 것은 아닌 듯하여, 별도로 분부하기로 비록 15말이 안되더라도 그 중에 제법 긴 것을 골라 들여줌이 마땅하겠기로 이런 뜻으로 부산에 이문하였으며, 세 선박 등의 서계를 받아 올리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의 부채를 대관 등에게 명하여 간절히 구한다고 하였는 바, 각종의 물건을 요구하는 대로 곧장 허락하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이제 이번에 구하는 것은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고 그냥 주는 것에 견줄 것이 아니니, 각색의 미선 200자루를 전라도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동래부로 곧장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고, 기타 각색 당선 100자루, 별선 50자루 역시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일시에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살아 있는 피꼬리 새끼도 전에 계하한 대로 속히 찾아 주되, 범죽은 또한 장계에 의거하여 편리한 대로 구해 주라는 뜻으로 양 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병오 3월 25일

동래부사가 3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6일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혼도한시열(韓時說)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飛船)에는 두왜(頭倭) 1인과 응사왜(鷹師倭)⁵⁹⁾ 1인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연유를 탐문하니, 두왜가 말하기를 ‘별로 다른 사정은 없고, 전날에 요구한 바 노랑피꼬리(黃鶯) 및 구청한 매(鷹子)를 재촉하여 들여주고, 유지(油紙) 300장과 대추 3섬, 황율(黃粟) 5섬, 큰 꽃감(乾柿) 50점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일로 예도의 도주가 분부하여 왔는데, 극상품으로 골라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한다”고 회언하였음. 구청한 매는 아직 수납하지 못한 각관(各官)에 다시 재촉하는 뜻으로 순영에 첩보하였으며, 노랑피

59) 응사왜(鷹師倭): 꿩을 잡는 매를 길들이는 일을 맡은 왜인.

꼬리는 산출될 때를 기다려 찾아줄 계획이거니와, 유지와 대추, 황율, 큰 꽃감 등의 물건은, 무역 요구가 계속될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제 철이 아닌 물건이 있어서 이치에 근거하여 굳이 막아야 마땅할 것이로되, 모두 중대한 물건이 아니기로 역관 등이 타일러 막지 못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번에 나온 두왜 등이 무역 요구한 유지 300장, 대추 3섬, 황율 5섬, 큰 꽃감 50접 등의 물건은 도주가 구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바, 그 중에 비록 제 철이 아닌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본도에서 분정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은 없을 듯하거니와, 대추와 밤의 수량 및 꽃감의 접 수는 적당한 대로 줄여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니, 본도에 명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병오 5월 초7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5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전날에 무역을 요구하였던 흰모시 베(白苧布)와 녹두가루(菘豆末) 등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분부에 의거하여 관수와 대관왜 등에게 늘 십분 타일러 말하기를 '무릇 무역 요구는 비록 값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근년 이래로 빈번한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로 다투어 따졌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침지(僉知) 등은 매양 수량이 많다고 이렇게 굳게 고집하여 실로 민망하니, 녹두가루를 반으로 꺾어 무역을 허락하면 기일에 맞추어 들여보낼 계획이다'라고 하였다는 일로 훈도 등이 수본하였음. 이제 비록 조정에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였으나, 역관 등이 이미 타일러 수량을 줄여 수량대로 줄 필요가 없기로 한편으로 순영(巡營)에 첩보하는 일.

병오 5월 초10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의 장계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도주가 이미 대마도로 돌아왔으니 문위역관(問慰譯官)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본디 전례가 있다 하며, 그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각색 대단(大緞)⁶⁰, 철안장(鐵鞍裝), 엽금(葉金)⁶¹, 『퇴계집(退溪集)』, 상삼(上蔘), 녹두가루, 울무(薏苡). 대추, 흰모시베[白苧布], 황률(黃栗)⁶², 호두, 잣, 쇠금진묵(洒金眞墨) 등 13종인데, 이러한 물건이 그 수량이 극히 많고, 각색의 대단(大緞)과 영롱철안(玲瓏鐵鞍), 엽금(葉金) 등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이전부터 틀어막았던 물건이니 기어코 막으라 하였으며, 그 중에 『퇴계집』은 새긴 판목(板木)이 산실되었다고 말하니, 특별히 꼭 사들이겠다는 뜻은 없었으며,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도 계속하여 와서 사들이겠다고 하여 매양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전량을 모조리 막기도 어려워 혹은 줄이고 혹은 방색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이전부터 공목(公木)으로 교환 무역하는 물건인지라 시종 거절하여 막는 것은 과연 장계 내에 진술한 바와 같은데, 그 중에서 마련하기 쉬운 물건은 그 다소에 따라 참작하여, 따라 줄 것과 따라주지 않을 것을 계목(啓目) 후록(後錄)으로 마련하였으니, 해조와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며, 문위역관을 내려보내는 일은 다시 치계를 기다린 뒤에, 묘당(廟堂)에서 품신하여 지휘하도록 명함이 어떠할지.

후 록

각색 극품(極品) 대단(大緞) 100필, 영롱철안 2부, 극품 엽금(葉金) 100냥(兩), 이상은 다시 타일러 막고 기어코 허락하지 않음. 『이퇴계집』은 역관 등이 이미 막았음. 상품의 약용 인삼 100근 중 30근, 흰모시베[白苧布] 70필 중 30필, 각양의 쇠금진묵(洒金眞墨) 20동(同)은 해조에서 마련하여 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것, 녹두가루 300근, 울무 20말 중 10말, 대추 5섬 중 3섬, 황밀(黃蜜) 100근 중 30근, 호두 20섬 내 7섬, 잣 20섬 중 7섬,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할 일. 입계한 대로 윤택함.

60) 대단(大緞): 중국에서 직조된 비단의 일종. 한단(漢緞)이라고도 하였다.

61) 엽금(葉金): 잎 모양으로 얇게 불러 만든 최상품의 금. 엽자금(葉子金). 십품금(十品金).

62) 황률(黃栗): 말려서 껍질과 보늬를 벗긴 밤.

병오 6월 초10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이 운운한 일로 수본한 내용에, “각색 대단(大緞), 영롱철안(玲瓏鐵鞍), 엽금(葉金) 등 3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이미 막았으며, 우리나라 생산물 가운데 약삼(藥蔘), 흰모시베, 황밀(黃蜜), 호두, 잣, 대추 등의 물건은 모두 반으로 줄였거니와, 녹두가루, 울무씨[薏苡仁], 쇠금진묵 등 3종은 끝내 수량을 줄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바, 극히 통탄스럽지마는 이제 다시 줄이기가 어렵기로 감히 치계하오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겨우 동래부사 안진의 장계로 말미암아 도주가 무역 요구한 물건을 삼분의 일로 꺾어 정하여 무역을 허락하였고, 그 중에 황밀(黃蜜)은 상감의 교명(敎命)에 의거하여 절반으로 고쳐서 표를 붙여 계하(啓下)하였는데, 방금 안진의 치계(馳啓)를 보니, 역관 등이 누차 타일러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 물건은 이미 막았고 그 나머지 우리나라 소산 가운데서도 약삼, 흰모시베, 황밀, 호두, 잣, 대추 등의 물건도 모두 반으로 줄이고, 녹두가루, 울무씨, 쇠금대진묵 3종은 끝내 수량을 줄이지 못하여 이제 다시 줄이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바, 피차간에 환무(換貿)하는 물건이니, 삼분의 일이나 절반의 수량은 따라주기에 대단히 어렵게 되지는 않겠거니와, 참먹[眞墨]은 이번에 온 장계에는 비록 대(大)자를 써 보내었더라도 전에 계하한 데 준하여 허락하고, 녹두가루와 울무씨는 원 수량 내에서 또한 다른 물건과 같이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니, 해조와 본도 및 동래부사에게 이 뜻으로 다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에서 동래부사가 도주의 무역 요구 물건에 대한 장계에 계목을 첨부하여 올렸더니, 전교하시기를 ‘황밀(黃蜜)과 참먹[眞墨]은 다름이 없는데, 황밀의 수량이 왜 그리 적은가? 해조에 물어보라’ 하신 일로 전교가 계셨는데, 이전부터 왜인에게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은 혹은 절반으로 혹은 삼분의 일로 정하여 수량의 다소 규정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근년에는 이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일일이 허락해 주기가 어려워, 참먹은 원래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절반으로 정하기가 어렵고, 황밀에 있

어서는 원래 수량이 100근인데 삼분의 일로 무역을 허락하는 데는 또한 근년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렇게 참작 마련하여 입계하였으나, 상감의 전교가 이러하시니 50근 절반으로 계목 가운데 표를 붙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하였음. 전교에 윤희한다 하였음.

정미(1667) 2월 28일

경상감사의 장계 및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2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3일 부산첨사(釜山僉使)가 치계한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과 별차(別差) 정문수(鄭文秀)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한 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 김근행(金謹行)과 최유립(崔裕立) 등이 타고 온 배로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왜선 3척 중 제1척은 양국 차지차왜(次知差倭) 굴성진(橘成陳)이 나왔으며, 제2척은 대관왜(代官倭) 3인이 타고 나온 배인데, 규정 외로 나온지라 노인(路引)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제3척은 비선(飛船)인데 두왜 1인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도주가 3월 내로 에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용할 각색 대단(大緞) 50필, 백릉(白綾) 50필, 능지주(綾只紬) 50필, 마른 대구 1,000마리, 녹두가루 700근, 큰 꽃감(乾柿) 30접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려고 나왔는데, 동 무역 요구를 속히 허락해 달라 운운’하거늘, 저희들이 타이르기를 ‘대단과 백릉, 능지주는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기로 전부터 무역을 요구할 때에도 무역을 허락하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결코 아뢰기가 어려우며, 녹두가루와 꽃감만 하더라도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또한 아뢰기가 어렵다’고 타일렀더니, 두왜 및 관수 등이 말하기를 ‘대단 등의 물건은 매양 귀국 소산이 아니라고 칭하면서 하나도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 연유를 모르겠거니와, 그 나머지 마른대구와 녹두가루, 꽃감 등만이라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수량대로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주되, 전날에 무역을 요구하여 수납하지 못한 물건도 또한 재촉하여 들여달라’고 간절히 말하였는 바, 대단과 백릉, 능지주는 재삼 타일러 막았으나 마른대구, 녹두가루, 큰 꽃감은 끝내 들으려 아니한다 운운”하였음. 각색의 무역 요구가 그 수가 매우 빈번한 데다가, 대단과 백릉, 능지주 등의 물건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무역 요구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로되 이번에도 본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역관이 이

미 막았거니와, 마른 대구와 녹두가루, 꽃감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적지 아니한데 매 양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겠으나, 이전부터 저 사람들이 낙망할까 염려하여 굳게 막지는 않았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 바란다고 운운 하였음. 이 김근행(金謹行)의 수본을 보니 ‘현당(現堂)과 본디 같은 일’이라 운운하여 앞으로 서로 다룰 일이 참으로 염려될 뿐 아니라, 도주가 사사로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심의(深衣)⁶³, 대대(大帶)⁶⁴, 치포관(緇布冠)⁶⁵, 복건(幅巾)⁶⁶, 신발[履] 및 『십삼경주설(十三經註說)』⁶⁷, 『동도사략(東都史略)』⁶⁸, 『문체명변(文體明辨)』⁶⁹, 『사서장도(四書章圖)』⁷⁰,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⁷¹,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⁷², 『문헌통고(文獻通考)』⁷³,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⁷⁴, 『춘추호전집해(春秋胡傳集解)』⁷⁵, 『해우진철주(海虞陳哲註)』⁷⁶, 『오경찬소(五經纂疏)』⁷⁷ 등의 책자라고 운운하였으며,

- 63) 심의(深衣): 고대 사람들이 평상시에 걸쳐 입었다고 하는 옷. 천자 및 제후와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일상의 예복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제도에 대하여는 학자마다 이설이 분분하다.
- 64) 대대(大帶): 예복의 허리에 두르는 좁은 폭의 옷감으로 만든 띠. 띠의 장식은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 65) 치포관(緇布冠): 겹겹 물들인 베를 사용하여 머리에 쓸 수 있게 만든 관의 일종.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관례를 올릴 때 사용하였고, 후 평상시에도 착용한 이도 있었다.
- 66) 복건(幅巾): 한 폭의 검은 베를 접어 머리에 덮어 쓸 수 있게 만든 두건의 일종.
- 67) 『십삼경주설(十三經註說)』: 미상. 십삼경(十三經)이란 말은 남송(南宋) 때 나타났는데, 『주역정의(周易正義)』, 『상서정의(尙書正義)』, 『모시정의(毛詩正義)』, 『주례주소(周禮注疏)』, 『의례주소(儀禮注疏)』, 『예기정의(禮記正義)』, 『춘추좌전정의(春秋左傳正義)』, 『춘추공양전주소(春秋公羊傳注疏)』, 『춘추공량전주소(春秋穀梁傳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이아주소(爾雅注疏)』, 『맹자주소(孟子注疏)』 등 13종의 경서주석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를 교감한 책들을 대개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라고 하였는데, 후 이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 68) 동도사략(東都史略): 송나라 때 왕칭(王稱)이 편찬한 역사서. 모두 130권이다.
- 69) 『문체명변(文體明辨)』: 명나라 때 서사증(徐師曾)이 저술한 문장의 형식 분류에 관한 책. 정편 101목, 부록을 26목으로 편성하였다.
- 70) 『사서장도(四書章圖)』: 미상
- 71)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의례(儀禮)를 중심으로 예학에 관련된 경전을 분류 주석하다 마치지 못한 것을 그 문도인 황간(黃榦)이 다듬어 정리한 책. 정편 37권, 속편 29권 모두 66권이다.
- 72)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조선 중기의 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집.
- 73) 『문헌통고(文獻通考)』: 역대 의 전장제도에 대한 문헌을 고거(考據)에 편하도록 24류 348권으로 분류하여 집성한 서적. 원(元)나라 때 칙명에 의하여 마단립(馬端臨)이 편찬하였다.
- 74)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문헌통고』의 속집으로 송원명칭의 역대문헌을 수합하여 청나라 건륭 12년에 칙명으로 편찬한 책. 모두 28부 350권이다.
- 75) 『춘추호전집해(春秋胡傳集解)』: 미상. 송나라 때 호안국이 『춘추전(春秋傳)』을 저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석서인듯 하나 분명하지 않다.
- 76) 『해우진철주(海虞陳哲註)』: 미상.
- 77) 『오경찬소(五經纂疏)』: 미상. 송(宋)나라 조순손(趙順孫)이 편찬한 사서찬소(四書纂疏)가 있으나, 오경(五經)에 대한 찬소(纂疏)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역관 등이 왜어(倭語)에 익숙하지 못하니 수역(首譯) 김근행을 짐짓 그대로 머물러 둬 이 어떠하올지,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호위하는 차왜가 나올 때는 전례에 접대하는 규정이 있으니 각기 연례단자(宴禮單子)를 이전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돌아온 대관왜(代官倭) 3인이 타고온 선박은 그것이 이미 규정 외의 선박이니 속히 돌려 들여보내라는 일로 다시 더 신칙하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가운데 대단(大緞) 등 3종은 역관 등이 이미 막았고, 그 나머지 마른 대구, 녹두 가루 등의 물건은 이전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그 중 수량이 많은 것은 절반으로 하며, 심의(深衣) 등의 여러 도구들은 또한 무역을 허락하되, 각양의 서책은 『의례경전통해』 이외에는 거개가 얻기 어려워서 이전부터 막았으니 이제 가벼이 허락하기는 어렵고, 『십삼경주설』 등의 책자는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기어코 틀어막으며,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은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본도 및 해조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이문하며, 수역(首譯) 김근행은 장계대로 짐짓 본부에 머무르게 하고. 전날에 무역을 요구하여 수납하지 못한 물건 역시 본도에 명하여 속히 들여주도록 하되, 맨 끝에 이른바 잠상(潛商)인 왜격(倭格) 병위(兵衛) 아란타(阿蘭陀)의 일은 일이 중대하니,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함이 어떠할지.

후 록

마른 대구 1,000마리, 녹두 가루 700근 중 300근, 큰 꽃감 30접 이상은 본도에서 무역을 허락할 것. 심의(深衣), 대대(大帶), 치포관(縑布冠), 복건, 신발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해서 무역을 허락할 것. 『의례경전통해』 1건은 본도 및 전라도에 무역을 허락할 것. 강희(康熙) 6년(1667) 2월 29일 동부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미 4월 초1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3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참사가 치계한 첩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하는 말이, ‘관수 및 차왜 등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사신 내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관수 및 차왜 등이 말하기를 ‘대마도에서 봉행 등이 저희들에게 서찰을 보낸다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대로 내어보여주거늘, 저희들이 그 서찰을 열어보니, 대화룡촉(大畫龍燭) 15자루를 다음 달 초7, 8일 사이에 도중(島中)으로 들여보내어, 현당(現堂)의 기일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음. 등(藤), 굴(橘) 두 차왜 등이 말하기를 ‘이에야스(家康)가 죽은 날이 마침 에도의 횡목(橫目) 등이 나올 때와 상치되어, 횡목(橫目) 등이 내도하면 전례에 의거하여 현당(現堂)에 분향(焚香)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번 대화룡촉(大畫龍燭)은 필시 그 때 사용할 것이니, 급급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갖가지로 말하였다”고 운운하였음. 대화룡촉을 구하러 온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므로, 훈도 등에게 명하여 한편으로 막았거니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이제 이번 두왜가 나온 것은 도주가 화룡촉 15자루의 무역을 요구하여 이에야스의 현당에 분향할 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바, 동 초의 자루 수량이 15자루나 되어 일시에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니, 15자루 중 10자루를 해조에서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전례대로 공무목(公貿木)에서 계산하여 감하되, 그 나머지 5자루는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기어코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康熙) 6년(1667) 4월 초2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一. 경상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비국(備局)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화룡촉(畫龍燭) 15자루를 이에야스의 현당에 분향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하거늘, 원래 수량 중에서 5자루를 해조에서 막는다고 입계하였는데, 사소한 무역 요구 물건을 이렇게 방색하는 것은 매몰찬 일이기에, 수량대로 만들어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운허함.

정미 4월 15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4월 초10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馳報)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에도(江戶)에서 횡목(橫目) 등이 이 달 보름 전에 정녕 부중(府中)에 내도할 것이기에, 전날에 무역요구한 화룡촉을 반드시 이 달 12, 13일 사이에 도중으로 들여보내어야만 기일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니, 동 화룡촉을 속히 들여보내며, 도주는 에도에 들어가려고 지난달 28일에 이미 배를 탔다고 한다’ 하였다”고 회언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 비선은 오로지 화룡촉을 재촉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거니와, 신이 예조(禮曹)와 비국(備局)에서 계하(啓下)한 관문(關文)을 잇달아 접한즉, 화룡촉 15자루를 이미 무역 허락하였으나, 저들은 이 달 12, 13일 사이를 기한으로 하니, 동 화룡촉이 이 기일에 맞추어 내려오면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만드는 사이에 반드시 여러 날이 허비되어 기일에 맞추어 와서 닿기가 어려울 형편인지라, 짐짓 조금 머물러 기다리라고 역관 등에게 전령하여 타일렀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내려 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전날에 무역을 요청한 화룡촉을 급속히 내려 보내라고 하였거니와, 화룡촉 및 차왜 등성(藤成)에게 주는 회례(回禮) 예단(禮單)과 심의(深衣) 등의 물건을 이 달 12일 역관에게 맞춰 주어 이미 내려 보냈으니, 날 수를 계산하면 금명간에 그곳에 당도할 것이라고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6년(1667) 4월 16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미 윤4월 17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이 달 13일 성첩한 장계. 이 달 12일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금도왜(禁徒倭)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주가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대절한림풍월(大折翰林風月) 쇄금묵(洒金墨) 150자루 및 중절(中折) 각양 참먹(眞墨) 150자루 등의 무역 요구를 위해 저희들을 차출하여 보내었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 운운’ 하였다”고 회언하였음. 크고 작은 참먹의 무역 요구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오직 해조에서 다소를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에 달린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지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한림풍월 쇄금목 150자루와 중절 각양 참떡 150자루의 무역을 요구하기 위하여 비선을 보냈다고 하는바, 이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혹 서울에서 사들이거나 혹 생산되는 각처에 분정하여 수량대로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강희 6년 윤4월 18일 우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미 5월 초9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이 달 초4일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전날에 돌아들어갔던 예전 대관왜(代官倭)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예도로 들어가서 각처에 사용할 물건이 매우 많은데 각색의 미선(尾扇) 30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오죽필(烏竹筆), 용편필(龍鞭筆) 각 50자루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예도로 들여 보내라고 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거늘, 저희 등이 말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종종 아뢰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이전의 무역 요구는 모두 대단한 물건이 아니며 도주가 사용하는 데 부족하기로 부득이 무역을 요구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방색하는지, 중간에서 막지 말고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말하면서 끝내 듣지 아니한다’고 회언한다 하였음. 왜인의 무역 요구가 근래에 매우 빈번하여 계속 요구하는 대로 부응하는 것이 어렵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하였는데 다시 그들이 들을지를 살펴보고 추가로 장계할 계획이라 운운 한 일.

정미 5월 16일

동래부사 및 경상감사의 장계. 이 달 초10일 부산첨사의 치보에 운운한 일로 즉시 훈도 한시열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 두왜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관수 및 대관왜 등

에게 도주가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사신(私信)의 내용을 탐문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도주가 중로(中路)에 저희들에게 서찰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에도에 가서 특별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잡색대단(雜色大緞) 10필, 대선단(大線緞) 10필, 소선단(小線緞) 27필, 소금선(小金線) 20필, 각색 능(綾)⁷⁸⁾ 100필, 각색 사(紗)⁷⁹⁾ 100필, 홍전(紅氈) 100냥,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문포(文布)⁸⁰⁾ 20필, 옥대구(玉帶鉤)⁸¹⁾ 200개, 살아있는 피꼬리 10마리, 흰모시베[白苧布] 50필, 마성(馬省)⁸²⁾ 100개 등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되, 흰모시베는 견양(見樣) 1필을 가지고 나왔으니, 각항의 물건은 받기[件記]에 의거하여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저희 등이 말하기를 '근래의 무역 요구가 너무 빈번한 것은 극히 부당하며, 대소의 금선(金線)과 대단(大緞), 사(紗)와 룡(綾) 및 문포(文布), 대구(帶鉤) 등의 물건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고 재삼 막았더니, 동왜인 등이 말하기를 '상항의 물건은 굳이 귀국 소산이 아닌 줄 알지마는 도주가 이미 무역을 요구하였기에 저희들이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첨지(僉知) 등이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대소금선과 대단(大緞), 사(紗), 룡(綾), 방사주(方絲紬), 문포(文布), 대구(帶鉤) 등의 물건을 비록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흰모시베[白苧布]와 마성(馬省), 홍전(紅氈), 살아 있는 피꼬리 등의 물건만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흰모시베는 새[升]⁸³⁾ 수가 조금 견양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길이와 너비는 이대로 잘 짜서 들여 주고, 마성(馬省)도 그 마미의(馬尾衣)⁸⁴⁾의 본색을 제거하고 잘 만드느라 속히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馳通)하였음. 근일에 왕래하는 왜선이 전에 비해 빈번하여, 오면 곧장 요구하는 것이 있기에 그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번의 무역 요구에는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역관들이 이미 막았지만, 요구하는 흰모시베[白苧布]는 폭이 평상시의 새[升] 수와 달리 극히 가늘고, 필(匹) 수 또한 많으며, 홍전(紅氈)도 그 수가 적지 않고, 살아 있는 피꼬리 역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전량을 막기에는 그들의 바램을 실망시킬까 염려되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78) 능(綾): 두껍게 짠 비단의 총칭.

79) 사(紗): 발이 성기와 얇고 가볍게 짠 옷감.

80) 이들 여러 가지 옷감의 직조방법과 품질 및 종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81) 옥대구(玉帶鉤): 옥으로 만든 띠 장식.

82) 마성(馬省): 말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솔. 마쇄(馬刷).

83) 새[升]: 베를 짤 때 베의 곱고 치밀한 정도를 따지는 단위. 80울을 한 새[升]라 하는데, 가령 15새면 세로로 1,200울을 베틀에 걸고 짜낸 것이다.

84) 마미의(馬尾衣): 솔의 한 부분인 듯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동 노인(路引) 하나와 건양의 모시베를 감봉(監封)⁸⁵⁾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이제 예도로 가면서 특별히 사용할 곳이 있다고, 잡색 대단(大緞) 및 홍전(紅氈), 옥대구(玉帶鉤), 모시베, 살아 있는 피꼬리, 마성(馬省) 등 13종의 무역 허가를 위해 비선이 나왔는데, 대단 등 9종은 역관들이 이미 막았다고 하거니와, 살아 있는 피꼬리와 마성 등은 원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그 중 모시베는 승수가 극히 가늘고, 홍전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허락하기는 어려운 듯하니, 참작하여 수량을 줄여 계목에 후록으로 마련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감사에게 이문(移文)함이 어떠할지.

후록. 흰모시베 50필 중 20필, 홍전 100냥 가운데 30냥, 이상은 해사(該司)에서 마련하여 내려 보낼 것. 살아있는 피꼬리 10마리, 마성 100개,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할 것. 강희 6년 5월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미 5월 29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⁸⁶⁾ 등의 장계. 이 달 21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하였기에, 즉시 훈도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관수(館守)에게 봉행(奉行) 등이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탐문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예전의 대언왜(代言倭) 등을 재촉하여 들여보내는 일 및 예도의 상사(上使) 횡목(橫目) 등이 오늘 내일 사이에 부중(府仲)에 당도하겠기로, 모양(某樣)의 찬물(饌物)을 사서 보내라고 사신이 왔다’고 운운하였음. 얼마 전에 관수왜(館守倭) 다이라노 나리유키[平成之]가 신에게 말을 보내오기를, ‘생 붕어와 생 잉어, 순채(蓴菜)⁸⁷⁾ 등의 물건을 구하고자 한다’ 하거늘, 신이 ‘본부에는 원래 그런 고기를 잡을 강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미세한 청이라도 평소의 사례가 아니면 구

85) 감봉(監封): 내용을 살펴서 봉인(封印)함.

86) 이지익(李之翼, 1625-1694): 효종 임진(壬辰, 1652)에 문과에 급제하고, 무신(戊申, 1668)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87) 순채(蓴菜): 수련과의 다년생 수초로서 못이나 늪에서 나는 채소.

해주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답을 보냈는데, 이튿날 별차 정문수(鄭文秀)가 다시 다이라노 나리유끼〔平成之〕의 말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예도의 상사(上使) 등이 불일간에 도중에 당도하는데, 무슨 일로 나오는지는 모르나, 접대할 즈음에 음식을 마련하기 어렵고, 도중(島中)에는 전혀 생산되는 것이 없어 민망스럽고 염려되니, 어제 간청한 생선을 모쪼록 구하여 달라'고 하거늘, 신이 순찰사에게 그 당부를 품의하였더니, 감영(監營)에서 양산과 김해 등지의 부근 각관에 분정하여, 두 지방에서 차례로 보내온 것이 모두 잉어 25마리, 붕어 38마리 등 그 수가 자못 많거늘, 동래부 경내에서 순채를 채취하여 생어(生魚)와 함께 아울러 방금 들여주었으니, 이번에 비선이 나왔으면 필시 즉시 실어갈 것임. 먼저 바친 노인(路引) 1건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

정미 6월 19일

경상감사 및 동래부사의 장계에 운운한 일. 어제 별차 정문수(鄭文秀)가 대관왜(代官倭)의 말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전에 예조에서 내려 보낸 심의(深衣)와 대대(大帶), 치포관(縹布冠), 복건(幅巾), 신발(履), 혁대(革帶), 오색 소대(小帶) 등의 물건이 불 속 들어갔는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물건 중 이 물건이 가장 긴요함에도 이미 구하였다가 곧장 잃었으니 저희들이 무슨 말로 도중에 통보하겠는가? 이 뜻을 다시 동래에 아뢰어 해조로 전보(轉報)하여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내주시라'고 간절히 말하기에, 소인 등이 막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와서 고한다"고 하였음. 동 심의(深衣) 등의 물건을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낼지의 여부를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회답할 수 있도록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대관왜가 지난 번에 내려 보낸 심의(深衣) 등의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이 뜻을 해조로 전보하여 다시 만들어 내려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였다고 하거니와, 심의 등의 물건을 다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저들의 간청이 이러하니 그들의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다시 만들어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강희 6년(1667) 20일 우승지 신 민(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정미 10월 24일

동래부사의 장계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島主)가 긴요하게 약용으로 쓸 곳이 있어서 숙지황(熟地黃)⁸⁸⁾ 3근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여 간청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숙지황의 무역 요구는 이전부터 간혹 있었으니, 이제 또한 해서(海西)지방에 분정하여 그 소원에 부응하는 일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미 11월 초5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하였기에, 즉시 훈도 이신남(李信男)과 별차 황덕겸(黃德謙)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정미조(丁未條) 세견(歲遣) 제15선 등 및 비선이 나왔는데, 대관들이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대추 8섬, 꽃감 100점, 황밀(黃蜜) 20근, 황국지(黃菊紙), 청화지(靑花紙), 도화지(桃花紙), 유지(油紙) 각 50장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사신이 나왔는데, 위의 물건 등을 급속히 무역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간청하여 말하거늘, 소인 등이 재삼 타일러 말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이렇게 빈번하니 결코 부응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막았는데, 끝내 듣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근래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자못 빈번하고, 이제 이 7종은 수량이 과다한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대추 8섬, 꽃감 100점, 황밀 20근, 황국지, 청화지, 도화지, 유지 각 50장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겠다고 간절히 말하였다고 하는 바, 구하는 바 7종 가운데 황밀, 황국지, 청화지, 도화지, 유지 등의 물건은 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대추 8섬, 꽃감 100점은 그 수량이 과다하여 그대로 부응하기 어려움이 있고 후일의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원 수량 가운데 절반으로 하여 대추 4섬, 꽃감 50점을 본도에서 마련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찰사에게 아울러 회이

88) 숙지황(熟地黃): 생지황(生地黃)을 솥에 넣고 여러 번 찌서 만든 약재. 허손(虛損)을 보하고 통경(通經), 강장제(強壯劑)로 사용한다.

함이 어떠할지. 강희 6년(1667) 11월 초5일 좌부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1668) 정월 초3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훈도 변승업(卞承業)과 별차 황덕겸(黃德謙) 등이 사정을 묻고 회연한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급히 관수(館守)에게 통기할 일이 있어서 봉행(奉行) 등의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즉시 관수에게 가서 사신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사신 내용에는 에도에서 사용할 상상품의 모시베 50필, 녹두가루 500근, 마성(馬省) 200개, 상품의 황모필(黃毛筆) 300자루, 상품의 참먹[眞墨] 30동, 잣 20섬, 황대구 200마리, 말린대구 500마리, 큰 꽃감(乾大柿) 100집, 좋은 품질의 대추 5섬 등의 물건을 급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정월 안으로 들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전후로 무역 요구가 너무 빈번하여 알리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도주 또한 그것이 지루한 줄 아는데 이것은 곧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이렇게 무역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기한 내로 무역을 허락하여 광채를 내어 달라 한다 하였다’고 회연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각종 물건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처치하시는 데 달려 있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봉행의 사신 내용에는 에도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상상품의 모시베 50필과 녹두가루 500근, 마성 200개,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상품의 참먹 30동, 잣 20섬, 황대구 200마리, 말린대구 500마리, 큰 꽃감 100집, 좋은 품질의 대추 5섬 등의 물건을 급속하게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니, 예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요구한 잡물 10종 가운데 흰모시베 50필, 마성 200개, 황대구 200마리, 말린대구 500마리, 대추 5섬은 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녹두가루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과다하니 녹두가루 500근 중에 300근,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가운데 200자루, 상품의 참먹 30동 가운데 20동, 잣 20섬 가운데 10섬, 큰꽃감 100집 가운데 50집을 구하여 주어서

그들의 소원에 부응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정월 초3일 동부승지 신 오두인(吳斗寅)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정월 23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내용에 이르기를, “비선에는 두왜 1인 등이, 에도에서 사용할 숙지황(熟地黃) 8근의 무역 요구를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숙지황은 저번에 겨우 3근의 무역을 허락하였음에도 이제 또 8근의 무역을 요구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이르기를 에도에서 사용할 숙지황은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것이 비록 빈번하기는 하지만, 이는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서 요청하는 대로 8근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정월 23일 우승지 신 윤비경(尹飛卿)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해서(海西)로 이문(移文)함.

무신 2월 초9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내용에 운운하기를,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이 사정을 묻고 회언하기를, “비선에는 두왜 1인 등이 에도의 여러 곳에서 사용할 인삼 30근의 무역을 요청하려고 나왔다”고 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나, 이제 이번 인삼은 근간에 하지 않던 청이고 그 수량도 너무 많은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해서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에도에서 사용할 상품의 인삼 30근의 무역을 요청하려고 비선이 나왔다고 하는바, 근수가 너무 많아서 비록 그대로 부응하기는 어려우나, 전에도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전연 막아서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은 불가할 듯하여, 짐짓 15근으로 해조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2월 초9일 우승지신 오두인(吳斗寅)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2월 25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馳通) 내용에 비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 등이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와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전날에 무역 요청한 물건을 재촉하는 일과, 예도의 여러 집정 등이 구하는 유둔(油菴)⁸⁹⁾ 40장[番]의 무역을 요청하려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관수 및 대관왜도 말하기를 ‘이제 이번 예도에서 구청하는 유둔은 매우 긴급하니, 이 뜻을 동래부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왜인의 각종 무역 요청이 잇달아 끊이지 아니하여 부응하기에도 피곤하기에 신이 매양 막지 못한다고 역관을 책망하지만, 이전부터 이들은 급히 따를 줄만 알았지 준절하게 물리칠 줄은 모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이제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는 데 달려 있는 일임.

이게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유둔의 무역을 요청하기 위해 비선 한 척이 나왔다고 하는데 유둔 40장의 무역 요청은 따라주기 어려운 청이 아니고 그냥 지급하는 물건도 아니니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2월 25일 동부승지신 홍만용(洪萬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89) 유둔(油菴): 비가 올 때 장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종이를 이어 붙여 기름을 먹인 종이.

무신 삼월 초5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비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와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 요구한 녹두가루는 예도에서 사용할 것인데 그 수량이 태반이 부족하니, 녹두가루 500근 및 자필(咨筆) 40자루의 무역 요구차 나왔다’고 하는 일”이라 하였음. 녹두가루 300근을 겨우 무역 허가하여 이제 바야흐로 계속하여 들여 줄 것인데, 500근의 수량을 더하여 청하는 것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준절 한 말로 방색하는 일을 역관에게 분부하였으며, 자필은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녹두가루 및 자필의 무역을 요구하기 위하여 비선 한 척이 나왔다고 한다 하였는데, 자필 40자루는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에 무역을 허락하되, 녹두가루 300근은 겨우 무역을 허락하여 이제 바야흐로 들여 주고 있다 하였거니와, 이제 500근을 또 수량을 더하여 무역을 청하니,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 수량이 너무 많아 결코 그대로 허락할 수 없으나, 전연 막기에는 또한 매물찬 일이므로, 원 수량 중 200근을 본도에서 무역하게 함으로써 당초 500근의 수량을 채워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3월 초6일 좌부승지 신 정륜(鄭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받음.

무신 3월 15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내용. 이번에 무역 요청한 녹두가루 500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역관에게 명하여 막았더니,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다가 끝내는 말하기를 ‘예도에서 긴요하게 쓸 곳이 있으니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고, 비록 감히 바라지는 못하나 500근 중에서 300근은 속히 들여 달라’ 한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무역을 요청한 녹두가루는 전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본조에서 200근의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회이(回移)하였거니와, 전에 일찍이 무역을 요구할 때 이미 300근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꼭 300근으로 말을 하는 것은, 200근의 무역을 비록 이미 허락하였기에 반드시 300근의 수량에 맞추려고 함이니, 이러한 미세한 물건으로 다투는 것 또한 자잘구레한 일인 지라, 이미 허락한 200근 이외에 100근의 수량을 더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 하니, 이렇게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3월 16일 우승지 신 정륜(鄭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3월 16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내용.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만쇼오잉 송사선(萬松院送使船)⁹⁰이고, 제2척은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선(平義眞送使船)이며, 제3척의 비선(飛船)에는 두왜가 나왔는데, 그 나온 연유와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올 기일이 멀지 않았는데, 에도의 여러 집정(執政) 등에게 사용할 상품의 인삼 50근, 녹두가루 500근, 소유지(小油紙) 20근, 대구어 1500마리, 한림풍월쇄금묵(翰林風月洒金墨) 10동, 황필(黃筆)⁹¹ 500자루, 잣 20섬, 울무쌀 60근, 새(升)가 가는 흰모시베(白苧布) 40필 등의 물자를 급급히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에도에서 비선으로 도중에 통기를 날려 왔으므로 나왔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타이르기를 ‘전날에 무역을 요청한 물건의 종류도 그 수량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또 중첩하여 너무 많으니 결코 동래 영감 앞에 고할 수가 없다’고 타일러 막았더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을 요청한 물건은 거의 반씩이나 수량을 줄여 에도에서의 용도에 부족하였기로 도주가 부득이하여 다시 이렇게 알려왔으니, 판사 등은 비록 이렇게 다투지만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위의 각종 물건을 그 수량대로 속히 들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는다. 운운” 하였음. 이제 이번의 무역 요구는 모두 저번에 무역을

90) 만쇼오잉송사선[萬松院送使船]: 조선 후기에 대마도 도주인 소오 요시토모[宗義智]의 외교 공적을 인정하여 그의 원찰(願刺)인 만쇼오잉의 이름으로 해마다 무역선 한 척의 내도를 허락하였는데, 그 무역선을 가리킨다.

91) 황필(黃筆): 황모필(黃毛筆)을 가리키는 듯하다.

허락한 물건인데, 계속하여 마지않으니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역관이 다투는 것 만으로는 그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금하기 어려워 참으로 지극히 우려되오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가 잇달아 비선을 보내어 무역을 요청하는 물종(物種)을 계속하여 부응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간청하고 또한 무역하는 물건인지라 반드시 일체 막을 것은 아니니, 유지 20권, 한림풍월쇄금목 10동, 황필 50자루, 잣 20섬, 울무쌀 60근, 흰모시베 40필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인삼, 녹두, 대구는 그 수량이 과다하니 인삼 50근 중 30근, 녹두가루 500근 가운데 300근, 대구 1,500마리 가운데 1,000마리를 또한 무역 허락함이 마땅하고, 인삼, 모시베, 필목은 해조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그 나머지 대구 등 5종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주도록 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3월 16일 동부승지 신 홍만용(洪萬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3월 24일

이 달 3월 23일 대신과 비국(備局)⁹²⁾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할 때 **호조판서 김좌명(金佐命)이 입계(入啓)한 바,** “대마도 도주가 요청하는 상품 인삼은 혹은 호조(戶曹)에 있는 세삼(稅蔘)⁹³⁾으로 충당하여 주거나, 세삼이 없으면 시장 사람에게 값을 주어 사들여 내려 보냈는데, 근래에는 별구청(別求請)의 일이 없는 해가 없는 데다 간혹 중첩하여 도래하는 때도 있어서, 지금에는 인삼 상품이 북쪽의 연경(燕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남쪽의 동래로 나가 서울에는 품절될 때가 많으니 매우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후로는 도주가 무역을 요청하는 인삼은 부산의 훈도에게 명하여 각 상인에게서 수합하여 들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값을 맞추어 받도록 함이 매우 합당하며, 만약 상인의 인삼이 없을 때면 훈도가 또한 특별히 제 처지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막아서, 서울의 관청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하옵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음.

92) 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를 달리 일컫는 말.

93) 세삼(稅蔘): 인삼을 채집하는 채삼꾼으로부터 세금조로 거두는 인삼. 조선 정부에서는 매년 가을 인삼이 채집되는 강계 등지로 세삼영래계사(稅蔘領來計士) 1인을 내려보냈다.

무신 4월 23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는데, 회언 내용에, “도주에게 문안하기 위해 들어갔던 금도왜(禁徒倭)의 배 한 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인하여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금도왜가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전날에 무역 요구한 가운데 상품의 인삼을 예도로 보내야 하는 일이 대단히 긴급하여, 도주가 이제 바야흐로 고대하고 있다’고 하며, 노인 하나를 가져다 바치는 일로 회언한다” 하였음.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잡물은 관에서 바야흐로 상인 등에게서 수합하고 있는데, 인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전날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인삼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기로, 미리 역관 등을 엄하게 신칙하여 들여 줄 즈음에 품질되어 품질이 열악한 사유를 갖추어 말하고, 인하여 일후에 다시 요구하는 폐단을 막게 하였다는 일임.

무신 7월 24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7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하였음. 훈도 등이 사정을 묻고 회언한 내용에, “무신조(戊申條) 세건(歲遣) 제5선, 제6선, 제7선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인하여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이 없다고 하며, 관수 및 대관 등이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서 나올 적에 예도의 집정 등이 대구 1,000마리, 좋은 품질의 황구피(黃狗皮) 60장을 간절히 구한다고 도주가 서찰을 저희 등에게 보내었는데, 위의 두 물건을 속히 무역 허락하여 달라’고 누누히 말하였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관수왜 등이 도주가 무역을 요청한 대구 1,000마리, 좋은 품질의 황구피 60장을 속히 무역하도록 허락해 달라 했다고 하는바, 대구와 황구피는 원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대구 1,000마리 가운데 500마리, 황구피는 청하는 바대로 60장을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7월 24일 동부승지 신 강(姜)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무신 10월 23일

동래부사가 10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6일 부산첨사가 치보한 내용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과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전날에 들어가 있었던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나왔으며,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귀국에서 생산되는 꼬리 있는 담비 가죽[有尾貂皮] 50령, 황광피(黃獮皮)⁹⁴⁾, 서피(鼠皮) 각 500령, 상품의 인삼 100근, 녹두가루 200근, 거마미마성(去馬尾馬省) 100개, 청서피(靑黍皮) 20령, 황대구(黃大口)⁹⁵⁾ 1,000마리, 백릉(白綾) 5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흰모시베 10필, 홍전(紅氈) 50립, 화룡필(畫龍筆) 100자루, 숙지황(熟地黃) 10근, 잣 20섬, 사향이 있는 산 채로 잡은 노루 암수 4마리 등의 물건을 예도에서 무역 요구하기로, 이 때문에 나왔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으며, 관수 및 일대관(一代官) 등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회언하였음. 이제 이번 왜인의 무역 요청은 너무 빈잡하여 부응하기 어려운 듯하기로, 역관 등을 엄하게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방색하게 하였으나, 역관의 말로는 저들이 이전부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극히 통탄스러우나, 오직 해조에서 다소와 어렵고 쉬운 것을 참작하여 품의 조처함에 달려 있을 따름임. 인삼은 전에 호조의 계하 관문에 의거하여 상인 등에게 이미 분부하여 두었거니와, 지금은 철이 일러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며, 백릉(白綾)과 화사주(花絲紬) 등에 있어서는 사사로이 상인 등이 지금 바야흐로 팔러 오는데도 이렇게 무역을 요청하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고, 대구만 하더라도 전날에 무역을 허락한 것을 이제 바야흐로 계속하여 들여 주고 있는데도, 다시 천 마리나 요구하니 실로 싫증이 없는지라 그 폐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차왜가 무역을 요청한 꼬리가 있는 담비가죽 50령, 녹두가루 200근, 마성 100개, 청서피 20령, 백릉 50필, 백화사주 100피르 흰 모시베 10필, 화룡필 100자루, 사향이 있는 살아 있는 노루 암수 4마리, 숙지황 10근 등의 물건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그 중 황광피, 서피 각 500령 중에서 각기

94) 황광피(黃獮皮): 족제비 가죽.

95) 황대구(黃大口): 배를 갈라 소금을 치지 않고 말린 대구.

200령을 줄이고, 인삼 100근 중에서 30근을 줄이고, 황대구 1,000마리 가운데 300마리를 줄이고, 홍전 50냥 가운데 20냥을 줄이고, 잣 20섬 가운데 10섬을 줄여, 모두 해조 및 각 도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10월 26일 우부승지 신 강(姜)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11월 14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11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하였음. 이전에 도부(到付)한 호조의 계하 관문에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인삼을 사상(私商) 등에게 시켜 거두어 모아서 들여 주라고 하였기로, 이번에 무역을 허락한 인삼 70근 중 20여근을 우선 들여 주었더니, 인삼의 품질이 전날에 지급한 것에 반도 못 미친다고 퇴각하여 받지 아니하거늘, 신이 역관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여러 가지로 타일렀는데 끝내 듣지 아니하여 일이 매우 우려되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다시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인삼을 사상(私商) 등에게 시켜 거두어 모아서 20근을 우선 들여 주었더니 인삼의 품질이 전날에 지급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물리쳐서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전에 계하한 대로 호조에 명하여 급속히 사서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11월 16일 동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신 11월 28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11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비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관수 및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한림풍월(翰林風月), 수양현정(首陽玄精) 참떡 각 120자루, 황모필 400자루, 큰 곱감 250접, 황밀 60근 등의 물건을 예도에서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도주가 부득이 하여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는 일을 동래부에 고하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일로 회연하였음. 왜인이 누

차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지금 바야흐로 계속하여 들여 주고 있으며, 저번에 무역을 허락한 것도 그 수량이 또 많거늘, 이제 또 와서 각종의 물건을 청하는바 매우 지루하니,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하여 조치하시기에 달려 있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계속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일이 지루하지만, 필묵 등은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또한 막을 필요도 없으니, 한림풍월과 수양현정 참떡 각 20개와 황모필 40자루, 큰 꽃감 150집 중 100집, 황밀 60근을 해조 및 해당 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7년(1668) 11월 29일 우승지 신 이정(李程)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1669) 정월 21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 이 달 14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하기를,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하기를 “무신조(戊申條) 만쇼오잉 송사선 및 동 선박의 수목선(水木船) 등이 나왔거늘, 인하여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정관(正官)이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으며, 관수왜가 말하기를 ‘에도에서 구청하는 호설(虎舌) 10개와 호경골(虎脛骨) 5개, 황대구 1,500마리, 취운진묵(翠雲眞墨) 50홀(笏), 호두 40섬, 잣 40섬, 대추 5섬, 홍전(紅氈) 20넝 등의 물건을,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기 전에 속히 무역하여 보내라고 사신(私信)이 내도 하였으며, 전날에 무역을 허락한 잡물도 십분 재촉하여 아울러 되도록 속히 보내달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아뢰어 달라’고 여러 가지로 간청하였다는 일로 회언한다” 하였음. 근래에 도중(島中)에서의 무역 요청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는데, 황대구와 참떡, 잣, 홍전 등의 물건은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음에도 이제 또 와서 요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하여 조치하기에 달려 있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호설 10개와 호경골 5개, 황대구 1,500마리, 취운진묵 50홀, 호두 40섬, 잣 40섬, 대추 5섬, 홍전 20넝 등을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기 전에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바, 전후의 구청이 과연 지루한데 그 중 호설 10개, 호경골 5개, 취운진묵 50홀, 대추 5섬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황대구 1,500마리 중 □백마리, 호두 40섬 중 15섬, 잣 40섬 중 15섬, 홍전 20냥 가운데 10냥은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8년(1669) 정월 22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호설(虎舌) 5개는 원양도(原襄道)⁹⁶에 분정함.

기유 3월 27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비선이 나왔는데 새로 오는 일대관왜(一代官倭)의 말에, ‘도주가 이 달 20일 사이에 에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화룡필(畫龍筆) 100자루를 전보다 조금 그 자루를 가늘게 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화룡필은 이미 겨우 무역을 허락하였으니 매양 그대로 부응하는 것은 불가하나, 원래 그다지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장계대로 100자루의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1668) 8년 3월 27일 동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 6월 초8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1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이르기를,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하기를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도주가 지난 4월 25일에 이미 에도에 도착하였거니와 여러 집정 등이 요구하는 체구가 크고 꼬리가 두터운 호피(虎皮) 15장, 표범가죽 20장, 상품의 울이 가는 생모시베(生苧布) 30필, 및 흰모시베(白苧布) 30필을 속히 무역 요청하여 보내라고 하였기로, 저희들은 오로지 이것 때문에 나왔으며, 전에 구한 모시베는 에도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이렇게 다시 요청하니, 이번에는 울이 가는 극상품을 골라 내려 보내라

96) 원양도(原襄道): 강원도의 별칭. 원주(原州)와 양양(襄陽)을 축약한 말이다.

는 뜻으로 동래부에 고해 달라'하면서 관수왜가 누누이 간청하는 것이 전달보다 배로 더하다" 고회언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각종의 물품은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는데 달려 있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근년 이래로 도주 요시마사(義眞)가 에도에 뇌물을 주어 지위를 굳히는 밀천을 오로지 무역 요청에 의지하고 있어 거의 빈 달이 없는데, 이제부터 수응하기에도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마는,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면 꼭 억제하여 먼 곳 사람이 낙망하는 한탄을 하게 할 것은 없으니, 호피 15장, 표피 20장 중에 각기 5장을 줄이고, 두 종류의 모시베 모두 60필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가려서 사들여 내려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8년(1669) 6월 초9일 우부승지 신 오시수(吳始壽)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 6월 초10일

동래부사 이지익(李之翼)이 6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하기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하기를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특별히 다른 일은 없으나, 도주가 에도로 들어간 뒤에 여러 집정 등의 무역 요구가 매우 많으므로, 저희들이 오로지 이 일로 나왔는데, 살아 있는 잉어 100마리, 상품의 쇠금한림풍월(洒金翰林風月) 떡 200홀(笏), 오죽(烏竹) 황모필(黃毛筆) 100자루, 홍당죽(紅唐竹) 황모필 100자루, 반죽(斑竹) 황모필 100자루, 황대구(黃大口) 1,000마리, 호두 100섬, 잣 100섬, 유지(油紙) 15권 등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하며, 관수왜가 말하기를, '에도에서 여러 집정 등이 요구하는 바가 이러하여 부득이 연속하여 배를 보내었는데, 전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과 함께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갈망에 부응해 달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아뢰어 달라'고 간절히 말하였다고 회언 운운"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잡물이 빈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이 너무 많고, 호두와 잣과 대구 등의 물건에 있어서는 정녕 제철이 아니어서 구해줄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엄하게 역관을 책망하여 말을 만들어 막아서 기어코 듣게 하였거니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근래에 매우 중첩하여 부응하기에 어렵다는 뜻으로 방금 이미 복계(覆啓)하였는데, 이제 이 장계를 보니 요구하는 각종 물건이 이미 많은데다가 그 수량이 또한 천 백으로 헤아리는 것이 있으니, 모조리 허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황대구와 잣, 호두는 동래부사 이지익이 이미 엄한 말로 방색한다 하였거니와, 이미 요구한 뒤에 필시 끝까지 그칠 리는 없으니, 대구 1,000마리 중 300마리, 잣과 호두 각 100섬 중에서 각 20섬을 본도에 명하여 구해주라 하며, 한림풍월 200홀과 각색 자루의 황모필 300자루를 이전과 같이 호조와 공조에 명하여 혹 생산되는 각처에 분정하여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되, 살아 있는 잉어 100마리와 유지 15권도 역시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찾아주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8년(1669) 6월 12일 우승지 신 김만기(金萬基)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 8월 20일

동래부사 정석(鄭楨)의 장계. 훈도 등의 수본 내용에 “왜인 등의 말에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상품의 자필(咨筆) 100자루, 쇠금한림풍월(洒金翰林風月) 100자루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낼 것을 간청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수본을 내었다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나온 왜선(倭船)에서 사정을 묻고 회언(回言)한 내용에,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상품의 자필 100자루, 쇠금한림풍월 100자루의 무역을 요구한다고 간절히 이야기하였는바, 겨우 지난 6월에 그들의 구청으로 인하여 한림풍월 200홀과 각색 자루의 황모필 300자루 등의 무역을 이미 허락하게 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청이 있으니, 물건이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나 계속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은 매우 타당하지 않으니, 엄하게 역관을 책망하여 말을 만들어 막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8년(1669) 8월 26일 우승지 신 강호(姜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97) 김만기(金萬基, 1633-1687):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사계(沙溪) 장생(長生)의 증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국구(國舅)로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기유 10월 16일

동래부사 정석(鄭晫)⁹⁸의 장계. 훈도 등이 사정을 묻고 회언한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저번에 무역을 허락한 살아있는 잉어는 예도에서 사용하는데 부족하므로, 살아있는 잉어 300마리를 또 무역하기를 요청한다’고 하였으며, 여러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이번에 무역을 요청하는 살아있는 잉어를 들여보내는 것은 매우 긴급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을 동래부에 고하라’고 하거늘,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동 살아있는 잉어는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수많은 산 잉어를 이제 또 요청하여 오니 결코 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더니, 두왜 및 여러 대관이 큰 소리로 노하여 말하기를, ‘이는 도주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예도의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무역을 요청하는 것인데, 판사 등은 무릇 무역을 요청하는 물건이면 매양 이렇게 막았더니, 두 나라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일이 극히 매몰차다’고 하며 끝내 듣지 아니하고,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이야기 한다” 하였음. 산 잉어의 무역 요청은 과연 빈번하기는 하나, 예도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칭하며 누누이 말할 뿐 아니라, 이는 곧 토산으로 시종 굳게 거절하기는 어렵겠기로, 이전대로 인근의 각관에 분정하여 구하여 주라는 뜻으로 순찰사에 첩보하였다는 일임.

기유 12월 11일

동래부사 정석(鄭晫)이 12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4일에 부산첨사가 치보한 내용에 운운하기에, 즉시 훈도 박원랑(朴元郎)과 별차 이준한(李俊漢)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도중(島中)에 특별히 다른 일은 없고, 굴성진(橘成陳) 등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그대로 굴성진에게 갔더니, 여러 대관 등이 일시에 모여 앉아서 말하기를, ‘예도에서 사용할 우황(牛黃) 6냥, 호안(虎眼) 3개, 호설(虎舌) 5부, 웅담(熊膽) 20부, 산 잉어 200마리, 큰 곱감 100점, 마른 대구 3,000마리, 육종용(肉蓯)

98) 정석(鄭晫, 1619-1677): 인조 무자(戊子, 1648)에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기유(己酉, 1669)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벼슬이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菴)⁹⁹⁾ 1근, 상품의 자필(咨筆) 100자루, 사향이 있는 산 노루 암수 각 1마리, 살아있는 피꼬리 15마리 등의 물건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도주가 사신에 각별히 신칙하였는데, 동 무역 요청한 물종을 수량대로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원이 빈번한 일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피꼬리에 있어서는 지금이 제 철이 아니어서 결코 잡을 수가 없으며, 허다하게 많은 무역 요구 물건을 일일이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소리를 합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이는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도주가 부득이 하여 무역을 요구한 것인데, 관사 등이 중간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방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다투어 따질 필요 없이 속히 본부에 고하되, 살아 있는 피꼬리는 실로 제 철이 아니니 이런 뜻으로 에도에 회보하겠다 운운'하였고, 그 나머지 각종 물건은 끝내 듣지 아니한다"고 회언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극히 빈번할 뿐 아니라, 물종이 너무 많고 수량 또한 지나쳐서 모조리 부응하기는 불가하거니와, 그 중에 산 잉어는 전후로 두 번이나 겨우 구해주었는데, 이제 이런 엄동설한에 산 물고기를 잡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역관 등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막을 계획이오며, 대구 3,000마리는 수량이 더욱 심히 과다하여 적당하게 수량을 줄이고, 나머지 물종도 참작하여 구해주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도록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에 나온 왜인이 구하는 에도에서 사용할 14종 가운데 산 잉어 200마리, 살아있는 피꼬리 15마리는 역관 등이 이미 막았다고 하였거니와, 목방기(木防己)¹⁰⁰⁾ 10근, 호담(虎膽) 10부, 호골(虎骨) 4개, 호안(虎眼) 3개, 호설(虎舌) 5부, 사향이 있는 산 노루 암수 각 1마리, 웅담(熊膽) 20부는 전례대로 본도 및 원양도(原襄道)에 명하여 그 생산되는 곳에 절반으로 분정하며, 큰 곳감 100점 중 50점, 마른대구 3,000마리 중 1,000마리는 본도에서 마련하여 보내며, 육종용 1근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고, 우황(牛黃) 6냥과 상품의 자필 100자루는 가장 과다하여, 짐작하여 반으로 꺾어서 모두 해조에 명하여 갖추어 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8년(1669) 12월 12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99) 육종용(肉菴蓉): 열당과의 다년초 육종용의 육질 줄기. 보신(補腎) 익정(益精)의 약재로 사용한다.

100) 목방기(木防己): 새모래덩굴과의 낙엽 활엽 만초인 덩덩이덩굴의 뿌리. 거풍지통(祛風止痛), 이뇨소종(利尿消腫)의 약재로 사용된다.

경술(1670) 정월 26일

동래부사 정석(鄭楛)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원량(朴元郎)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와 말하기를, ‘에도에서 무역을 요청하는 담비가죽[貂皮] 100장, 산 잉어 500마리를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도주가 에도에서 비선을 보내었기로, 이번 무역 요청은 매우 긴급하니 즉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며, 여러 대관들도 또한 한결같이 말하였는데, 전후로 무역을 요청한 잡물을 속히 재촉하여 들여달라고 운운하였다”고 회언하였음. 지난 겨울에 산 잉어의 무역을 요청할 적에 얼어붙는 추위 때문에 이제부터 방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점차 해동이 되어 가기에 매양 막기에는 어려우니, 또한 토산을 적절하게 헤아려 구해 주며, 담비가죽만 하더라도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또한 줄임이 마땅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실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안에 운운. 이제 이번에 나온 왜인이 무역 요청한 담비가죽 100장, 산 잉어 500마리는 그 수가 과다할 뿐 아니라, 산 잉어는 지난 번에 무역을 요청할 때 추운 겨울이라고 막았는데, 이제 봄 기운이 아직도 따뜻해지지 않았으니 그대로 허락하기는 어려운 형편인지라, 짐짓 300마리로 수량을 정하여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찾아 주라 하며, 담비가죽 또한 원래 수량 가운데 절반을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마련하여 내려 보냄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정월 28일 좌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경술 윤2월 22일

동래부사 정석(鄭楛)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 여러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봉행(奉行) 등의 사신이 에도에서 쓸 대구 2,000마리 및 솥 매 1연은 길이 잘 든 것으로 무역을 요청하여 들여보내며, 도중(島中)에서 사용할 곳이 있기로 종(鍾)·경쇠(磬), 바라(鉢羅) 등의 물건을 주조하여 만들어 들여 보내려고 하는데, 동 무역 요청한 대구와 매는 본부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며, 종과 경 등의 물건은 들어갈

철물(鐵物)을 준비해 주고, 주조할 수 있도록 솜씨 좋은 장인 수삼 명을 며칠 이내로 보내 달라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대구 1,000마리는 이미 들여 주었는데, 왜관에서는 아직 도중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매(鷹)는 연례로 지급하는 마리 수 대로 들여 주었는데, 길들인 숫매(雄鷹) 1연을 또 무역 요구하였는바, 사옹(私鷹)¹⁰¹이나 상옹(商鷹)¹⁰² 가운데 길들인 것을 얻기는 쉽지 않기로,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여 찾아달라고 하려 하며, 종과 경쇠와 바라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장인으로는 경내의 유기장(鑄器匠) 몇 명을 왜관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일.

경술 3월 초7일

동래부사 정석(鄭皙)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운운. 훈도 박원량 등의 수본 내용에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도중(島中)에서 봉행 등이 보내온 사신에,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살아있는 피꼬리 10마리, 살아있는 원앙 3마리, 살아있는 노루 4마리, 살아 있는 사향노루 암수 각 2마리, 살아 있는 고슴도치 10마리, 호육(虎肉) 10근 등을, 도주가 출발하여 돌아오기 전에 속히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심분 재촉하였는데, 예사 일로 여기지 말고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중에서 다시 재촉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 하거늘, 전후로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 두번이 아니라서 종종 부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타일러 막았으되, 끝내 듣지 아니한다”고 회언(回言)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연속하여 마지않으니 실로 종종 부응하기가 어렵거니와, 그 가운데 두 가지 노루는 그 수량이 과다하여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실로 각관의 큰 폐단이 될 것이니, 사향노루는 제외하고 보통 노루 2마리만 구해 주며, 살아 있는 피꼬리와 살아 있는 고슴도치 등의 물건도 반으로 줄여 구해 주며, 살아 있는 까치와 살아있는 원앙이, 호육 등은 얻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수량 또한 많지 않아 수량대로 구해줄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도록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운운 무역 요구가 연속하여 종종 부응하기가 어려우니, 두 가지 노루 가운데 보통 노루 2마리 및 살아 있는 고슴도치 등의

101) 사옹(私鷹): 사가에서 사육하는 매.

102) 상옹(商鷹): 상인들이 팔기 위해 기르는 매.

물건은 반감하고, 살아있는 까치 등은 수량대로 구해 주는 일은 장계에 진술한 대로 함이 과연 합당한데, 아울러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는 일로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3월 초9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술 4월 초2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운운. 즉시 훈도 박원량(朴元郞)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예도에서 집정 등이 구하는 잣 20섬, 마른 대구 1,000마리를 속히 무역 요구하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부에 아뢰어 때 맞춰 무역을 허락하여 지연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 운운’하였다”고 회연하였음. 전후로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연속되어 마지않을 뿐 아니라, 잣 20섬, 대구 1,000마리는 그 수가 매우 많아서 그 소망에 모두 부응하기가 어려우니, 적당하게 헤아려 무역해 주라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두왜의 말이 도주가 예도 집정 등이 구하는 잣 20섬, 마른 대구 1,000마리를 속히 무역 요구한다 하였는 바, 근래에 전후로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 연속하여 그치지 않아서 그대로 그 청을 허락할 수는 없으니, 잣 20섬 내에 10섬, 대구 1,000마리 내에 500마리를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한데, 이 뜻을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4월 초4일 우부승지 신 맹(孟)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술 4월 16일

경상감사 민시중(閔蓍重)103의 장계. 예조 관문 내용에 운운한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기에, 대구어(大口魚)는 정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생산되는 각관에 분

103) 민시중(閔蓍重, 1625-1677): 자는 공서(公瑞), 호는 인재(認齋),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광훈(光勳)의 아들이다.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과 교리(校理)를 거쳐 벼슬이 호조참판, 대제학에 이르렀다.

정하여 수송하게 하였거니와, 잣은 생산되는 곳이 단지 대 여섯 고을뿐으로 지난해 결실이 손상되고 떨어져서 비록 약간 남은 것이 있지만, 거개가 열매가 없어 이전에 정한 것도 그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수납 못한 것이 아직도 많은데, 왜인들이 매우 긴급하게 독촉하기로 누차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각 고을에서는 한 되 한 말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분분하게 첩보하여 바야흐로 걱정하고 있으며, 하물며 제 철도 아닌 이런 때에 10섬의 잣을 또 무역 요구하니 결코 마련할 형편이 없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또 이미 허락하였으니 때맞추어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동 잣의 반이나마 생산되는 원양도(原襄道)로 옮겨 정하여 먼 곳 사람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게 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시행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전에 동래부사 정석(鄭楫)의 장계로 인하여, 예조의 집정 등이 구하는 잣 20섬 중 10섬을 본도에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¹⁰⁴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이렇게 제 철이 아닌 시절에는 결코 마련할 형편이 아니니 반이나마 원양도에 옮겨 정하여 먼 곳 사람의 구하는 바에 부응한다 하였는바, 본도의 형편에 비록 혹 이리하더라도, 원양도의 한 두 고을에서 생산되는 양이 매우 드문데, 이로 인하여 옮겨 정하는 것 또한 뒤의 폐단에 관계되니, 본도에 명하여 이전대로 사들여서 미루어 수송하라고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4월 17일 동부승지 신 남(南)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경술 6월 초1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운운. 비선이 나왔는데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피꼬리 6마리, 살아 있는 까치 10마리를 도중에서 무역 요구하여 들여 보내라고 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운운하였음. 요구하는 살아 있는 피꼬리와 살아 있는 까치는 모두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로되, 겨우 이미 구해주었는데 또 이렇게 구청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막을 계획이라 운운한 일.

104) 행회(行會): 상부의 지시 명령을 소속 관원에게 알리고 시행 방침을 시달하는 일.

경술 6월 29일

동래부사의 장계 및 좌수사(左水使)의 장계. 내용에 운운.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운운. 즉시 훈도 박원랑(朴元郎)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전 날에 돌아 들어갔던 대관왜 1인이 나왔으며, 관수 및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이제 도주가 서찰로 보낸 받기〔件記〕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계몽익전(啓蒙翼傳)』¹⁰⁵⁾,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¹⁰⁶⁾, 『중용구경언의(中庸九經衍義)』¹⁰⁷⁾, 『주자절요(朱子節要)』¹⁰⁸⁾ 및 『비급본초(備急本草)』¹⁰⁹⁾ 32권, 『의학입문(醫學入門)』¹¹⁰⁾ 7권 등을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 긴급하니 속히 무역을 요청하여 들여보내라 하였다’고 받기를 내어보여주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전에도 각종의 무역 요구가 극도로 번다하였는데, 이제 이번의 허다한 책자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반복하여 타일렀더니, ‘이제 이번 책자는 모두가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이라 구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동래부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였으며, 홍전(紅氈) 및 당안(唐鞍)¹¹¹⁾ 역시 무역을 요구한다고 하거늘, 이는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타일러 막은 일로 회언한다” 하였음. 전후로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여 극도로 지루한데, 이제 이번의 허다한 책자의 무역 요구는 더욱이 뜻밖이나,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칭하며 누누이 간청하는 바 막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 중 권질이 많지 않은 책자나마 재량하여 구해 줌이 어떠하며, 각색의 사기(砂器)에 사용되는 흙은 모두 토산이고, 또한 일체 막기도 어려우니,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도중(島中)에서의 무역 요청이 빈번한데 근래에는 더욱 심하고, 이제 이번에 구하는 바는 또 이렇게 많으니 참으로 통탄스럽거니

105) 『계몽익전(啓蒙翼傳)』: 원나라 학자 호일계(胡一桂)의 저술인 『주역계몽익전(周易啓蒙翼傳)』을 가리키는 듯.

106)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조선 중기의 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저술.

107) 『중용구경언의(中庸九經衍義)』: 조선 중기의 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저술.

108) 『주자절요(朱子節要)』: 조선 중기의 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편찬한 저술.

109) 『비급본초(備急本草)』: 미상.

110) 『의학입문(醫學入門)』: 명나라 이정(李挺)이 편찬한 의학입문서. 19권 19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중간되었다.

111) 당안(唐鞍): 중국에서 제조된 말 안장.

와, 허다한 서책을 모조리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서도 권질이 많지 않은 『대학장구보유』, 『중용구경연의』, 『의학입문』 등의 서책은 각 1권씩 양남(兩南)¹¹²⁾ 감사에게 명하여 인출하여 보내게 하며, 그 나머지 책자는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하고, 각색 사기에 들어가는 흙은 장계에 진술한 내용대로 매양 부응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이미 토산이라 방색하는 것은 부당할 듯하니, 이는 본도에 명하여 재량하여 구해주게 하며, 규정 외로 나온 선박은 차비역관(差備譯官)¹¹³⁾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돌려보내라는 뜻을 특별히 신칙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하고, 요구하는 물건은 양남의 감사에게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9년(1670) 7월 초2일 우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술 7월 16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는데 즉시 훈도 박원랑(朴元郎)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도주에게 병환이 있어 사용할 약재 가운데 창출(蒼朮)¹¹⁴⁾, 백출(白朮)¹¹⁵⁾, 숙지황, 생지황(生地黃)¹¹⁶⁾, 시호(柴胡)¹¹⁷⁾ 각 3근, 승마(升麻)¹¹⁸⁾, 방풍(防風)¹¹⁹⁾, 산약(山藥)¹²⁰⁾, 우슬(牛膝)¹²¹⁾, 오미자(五味子)¹²²⁾, 맥문동(麥門冬)¹²³⁾ 각 2근, 아교(阿膠), 활석(滑石)¹²⁴⁾ 각 1근, 우담(牛膽), 천남성(天南星)¹²⁵⁾ 반근, 및 말린 자하

112) 양남(兩南): 영남과 호남.

113) 차비역관(差備譯官): 특별함 임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차출된 역관.

114) 창출(蒼朮): 국화과의 다년초 삼주의 결구되지 아니한 뿌리줄기. 백출보다 발한(發汗) 작용이 강하여 약재로 사용한다.

115) 백출(白朮): 국화과의 다년초 삼주의 덩이뿌리. 비위(脾胃)를 돕는 약재로 사용한다.

116) 생지황(生地黃):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초 지황의 뿌리. 날 것은 생지황, 말린 것은 건지황. 찢은 것을 숙지황이라고 한다.

117) 시호(柴胡): 미나리과의 다년초 뿔미나리의 뿌리를 말린 약재. 학질 등에 발한. 해열제로 사용한다.

118) 승마(升麻):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초 승마의 뿌리. 열독과 두통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한다.

119) 방풍(防風):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방풍나물의 목은 뿌리. 거풍(祛風) 제습(除濕) 지통(止痛)의 약재로 사용한다.

120) 산약(山藥): 마과의 다년 덩굴풀 마의 덩이뿌리.

121) 우슬(牛膝): 비름과의 다년초 쇠무릎지기의 뿌리. 이노제나 무릎 통증에 약재로 사용한다.

122) 오미자(五味子): 오미자 나무의 열매. 폐(肺)를 도우므로 기침과 갈증을 멈추는데 사용한다.

123) 맥문동(麥門冬): 백합과의 다년초 맥문동의 덩이뿌리. 보음(補陰), 청폐(淸肺), 거담(祛痰), 자양(滋養)의 약재로 사용한다.

124) 활석(滑石): 재질이 무르면서 광택이 있고 초와 같이 매끄러운 함유규산염(含水硅酸鹽) 광물. 갈증.

거(紫河車)¹²⁶, 남포(男胞), 여포(女胞) 각 1부를 무역하려고 오로지 이를 위해 나왔는데, 도중(島中)에서의 약용이 매우 긴급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여러 가지로 간청하였다"고 회언하였음. 앞뒤로 무역 요구의 청이 극히 번다한데, 이제 이번의 각종 약재만 하더라도 도주의 병환에 사용한다고 간절히 구하는 바, 적당히 재량하여 구해 줌이 마땅하지만,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에게 병환이 있어서 사용할 약재 가운데 창출, 백출, 숙지황, 생지황, 시호 각 3근, 승마, 방풍, 산약, 우슬, 오미자, 맥문동 각 2근, 아교, 활석 각 1근, 우담, 천남성 반근, 말린 자하거, 남포, 여포 각 1부씩을 무역 요구하려고 비선이 나왔다고 하는바, 전후로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비록 매우 번거롭지만, 이미 병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간청하는데 부응하기를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구하는 약재를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그 중에 숙지황과 생지황은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황해도에 분부하여 구해 주게 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7월 16일 동부승지 신 안(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술 8월 15일

경상감사 민시중(閔耆重)의 장계. 방금 도부(到付)한 예조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도(道)의 관문 내용. 당해 도주(島主)가 무역 요청한 약재 가운데, 다른 나머지 약재는 본도 소산이기로 생산되는 각관에서 수송하게 하여 무역을 허락할 계획이거니와, 그 중 우담(牛膽), 천남성(天南星)은 일찍이 제조해 두지 않아 실로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고, 활석(滑石)만 하더라도 충청도에서 산출되는 것인지라, 의사(醫司)¹²⁷ 및 충청도에 분부하여 시일에 맞추어 마련하여 동래로 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라

입질 등의 외과 약으로 사용한다.

125) 천남성(天南星): 천남성과의 다년초 천남성의 덩이뿌리. 독성이 있으나 거풍(祛風) 거담(祛痰)의 약재로 사용한다.

126) 자하거(紫河車): 태(胎)를 가리킨다. 허손증(虛損症)에 정혈(精血)을 위한 약재로 사용한다.

127) 의사(醫司): 의료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 조선시대에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를 삼의사(三醫司)라 하였다.

고 관문을 보내달라 하였기에, 우담과 천남성은 양 의사(醫司)에 분부하였으며, 활석은 충청도에 이문(移文)하여 산출되는 관아에서 직접 수송하게 하여, 이제 이번 차왜가 구하는 물건은 본도에서 구해주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였으나, 우담과 천남성과 활석이 비록 본도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청(啓請)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막중한 계하(啓下) 공사(公事)¹²⁸를 범연히 본조(本曹)로 이문(移文)하는 일은 매우 타당하지 않으나, 날자가 급박하기로 해당 도와 해당 의사(醫司)에 이미 분부하였거니와, 본도에서는 이런 뜻을 다시 장계로 알림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라는 관문이었음. 동 우담과 천남성과 활석 등은 해조에서 이미 양 의사와 산출되는 충청도에 분부하였다고 하거니와, 다시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우담, 천남성, 활석 등을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데, 우담과 천남성은 양 의사에 명하여 이미 내려 보냈거니와, 활석은 이미 산출되는 관아에 명하여 직접 수송하라는 일로 충청감사에게 이문하였으니, 장계대로 급속히 구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8월 15일 우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경술 9월 초7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원량(朴元郎)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이 있어서 관수 및 대관 등에게로 보내는 도주의 사신을 가지고 나왔으며, 도중(島中)에서 사용할 공목(公木)¹²⁹ 50동을 속히 들여보내라고 재촉한다’ 하였으며, 관수 및 대관 등이 말하기를 ‘에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중국담비가죽(唐貂皮) 20장, 보통 담비가죽(常貂皮)는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툽고 네 발이 흠이 없는 것으로 100장, 당철안(唐鐵鞍) 1부를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중국담비가죽과 당철안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는 어려우

128) 공사(公事): 공적으로 결정된 일을 적은 문서 또는 그것을 시행하는 일.

129) 공목(公木): 공무역(公貿易)에서 조선측의 결제 대금으로 확정해 놓은 포목(布木).

며, 보통담비가죽만 하더라도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빈번하여 마지않기에 또한 종종 부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비록 빈번하지마는 이는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까지 방색하느냐? 당물(唐物)은 비록 무역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보통담비가죽은 방색해서는 안되니, 에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품질이 좋고 흠이 없는 것으로 100장을 속히 무역 허락하라는 뜻으로 먼저 본부에 고해 달라' 하였다"는 일로 회언하였음. 무역 요구가 빈번함이 근래보다 심한 적은 없었기로 전날에 노랑피꼬리, 살아있는 노루의 무역을 요청할 때 막아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담비가죽은 에도에서 구청하는 것이라 칭하면서 여러 가지로 간청한다 하는바, 무역을 요청하는 물건을 매양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요구하는 담비가죽이 그 수량이 많은 듯하니, 적당하게 재량하여 구해 주라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가 에도에서 구청하는 것이라 칭하면서 중국담비가죽 20장, 보통담비가죽은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텁고 네 발이 흠이 없는 것으로 100장, 당철안 1부 등의 무역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바,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빈번하기가 막심할 뿐 아니라, 중국담비가죽과 당철안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무역을 허락함이 불가하고, 보통담비가죽에 있어서는 저들이 이미 간청하니 또한 전연 막기는 어려운지라, 해조에 명하여 그 원래 수량 가운데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한데, 이런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초9일 동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술 10월 초5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인이 구청한 향초피(鄉貂皮) 발과 발톱이 있는 것으로 50령을 해조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방금 접한 호조의 이문에는 담비가죽을 시장에서 널리 구하였으나 발과 발톱이 모두 온전한 것은 전혀 없고, 시장 백성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구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다고 함. 우리나라에서 평시에 사용하는 담비가죽은 발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구하기 어려움은 그 형편이 본디 그러한지라, 비록 발톱이 없더라도 좋은 품질의 담비

가죽을 특별히 골라 내려 보내어, 역관에게 명하여 발톱을 갖춘 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실상을 말을 만들어 왜인에게 언급하게 한 뒤에 들여 줌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동래 부사에게 알림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희한다 하였음.

경술 11월 12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운운 하였음. 호설(虎舌) 5부를 도주가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간절히 구하거늘, 해조에 명하여 분부하여 구해 주어 부응하게 함이 마땅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호설 5부의 무역을 허락하였다고 하는바, 호설 5부는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장계 대로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11월 13일 우승지 신 민(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경술 12월 초4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가 치보한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에도에서 구하는 청서피(靑黍皮) 30령, 홍전(紅氈) 100립(立), 잣 30섬의 무역을 요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며, 대관왜 등의 말에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은 에도로 들여 보내는 데 매우 긴급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램에 부응해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홍전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막았더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비록 귀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일찍이 무역하여 사용할 때도 있었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동래부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는다”고 회언하였음. 무역 요구 중 청서피는 그 수가 많지 않으니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홍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량 또한

매우 지나치게 많은데, 전에 일찍이 흑 무역을 허락할 때가 있었으니 간략하게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하며, 잣만 하더라도 그 수량이 너무 많아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분부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대마도에서 비선이 나왔는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청서피 30령, 홍전 100립, 잣 30섬을 속히 무역 허락하여달라고 하였는바, 그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이 많지 않으니 그대로 허락함이 마땅할 듯한데, 홍전은 종전에도 무역을 허락할 때가 있었으나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100냥 가운데 40냥, 잣은 30섬 가운데 20섬, 청서피 30령은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을 허락하며, 문위역관(問慰譯官)을 청해 가는 일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9년(1670) 12월 초2일 동부승지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해(1671) 정월 15일

동래부사 정석(鄭皙)이 정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이 달 초6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왜선 9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최유립(崔裕立)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10명 및 도주의 봉행(奉行) 굴진중(橘眞重)이라 칭하는 왜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며,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병을 치료하러 나온 왜인은 곧 도주의 친근한 사람인데, 서울에 사는 의관(醫官) 박상문(朴尙文)이 전에 일찍이 부산 군관(軍官)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질병을 능히 치료하였으니, 이런 뜻을 본부에 아뢰어 동 박상문을 속히 청해오라’고 간절히 말하였으며, 관수 및 대관 등의 말에 ‘비선에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私信)에는 도주가 예도로 들어가 각처에 사용할 품질이 좋은 큰 월린향(越隣香) 2,000개, 황광피(黃獮皮) 50령, 녹두가루 200근, 마성(馬省) 200개, 마른 대구 1,000마리, 생모시베(生苧布) 20필, 잣 30섬, 대모화병필(玳瑁畫柄筆) 200자루, 상품의 황모필 400자루, 상품의 대절(大折) 및 중절 참묵(眞墨) 각 100홀, 대추 5섬, 장지(壯紙) 50권, 대백면지(大白綿紙) 10권, 산서피(山鼠皮) 50령, 울무 50근, 살아있는 수리(鷲) 꼬리깃이 14개인 것 3마리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이 달 내로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무역을 요구한 물종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극히 부당하여 일일이 부응해주기에 어려움이 있고, 월린항에 있어서는 본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또 말하기를 '물종이 비록 많으나 이는 모두 예도에서 사용할 물건이므로 결코 중간에서 수량을 줄여서는 불가하며, 그 중 월린항은 귀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 500자루를 줄이지만, 그 나머지 물건은 수량대로 즉시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는 일로 회언하였음. 봉행(奉行) 왜인 1인이 오로지 병 치료를 위해 나왔는데, 의관(醫官) 박군자(朴愼子) 상문(尙文)을 만나보기를 요구하는 바, 전에 일찍이 왜인이 병이 있었을 때 혹 의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번에 나온 봉행왜(奉行倭)는 도주와 친근한 사람이라 칭하며 병을 물으려고 간절하게 만나보기를 청하기에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해조에 명하여 보내도록 분부함이 어떠하며,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이 매우 많아서 실로 부응하기에는 어려운데, 도주가 예도에 들어갈 때 사용할 것이라고 누누이 간청하는바, 이는 평상시 무역 요구와 차이가 있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나, 그 중 잦은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여 바야흐로 들여주고 있으니, 이제 양을 더하여 구해 줄 필요는 없으며, 차왜(差倭) 등의 접대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사례대로 지급하는 예단(禮單)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에 비추어 내려 보내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번에 나온 특송선(特送船) 등의 배는 그 서계(書契)가 올라오기를 기다린 다음 회계(回啓)하고, 표풍인(漂風人)을 데려온 차왜(差倭) 및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호위한 차왜 등에 대한 예단 물건들은 등록(騰錄)에 의거하여 별단(別單)으로 마련하여 써 넣었고, 도주가 예도에 들어갈 때 사용할 무역 요구 물건은 종류가 매우 많고, 월린항은 별차(別差)가 문답할 즈음에 이미 구하기 어렵다는 형편을 말하였으며, 잦은 지난해에 겨우 20섬의 무역을 허락했기로 전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하되, 월린항 1,500개, 황광피 50령, 녹두가루 200근 중 100근, 마성 200개 중 100개, 마른 대구 1,000마리 중 500마리, 생모시베 20필, 잣 30섬 중 10섬, 대모화병필 200자루 중 100자루, 상품의 황모필 400자루 중 200자루, 상품의 대중절 참먹 각 100홀 중 각 50홀, 대추 5섬, 장지 50권, 대백면지 10권, 산서피 50령, 울무 50근, 살아있는 독수리 꼬리깃이 14개인 것 3마리 중 2마리를 마련하되, 해조(該

曹)와海道(該道)에 명하여 분부한 대로 마련하게 하며, 문위역관은 김근행(金謹行)과 변승업(卞承業)으로 이미 차출하였고, 의관(醫官) 박상문(朴尙文)은 저쪽에서 병환으로 간절히 보기를 청하고 전에도 이미 보내주기를 허락한 규례가 있어서 이제 막을 수 없으니, 아울러 재촉하여 내려 보낼 일로 당해 의원에 알려져서 신척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정월 18일 동부승지 신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해 2월 초10일

동래부사 정석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에 나왔거늘,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관수 및 차왜 굴성진 등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동 관수 등이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을 요구한 예도에서 사용할 잡물만이라도 문위(問慰)의 행차에 맞추어 남김없이 들여 보내달라는 일로 도중(島中)에서 십분 재촉하였다’고 하였으며, 대관 등이 말하기를 ‘도주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황률(黃栗) 10섬, 개암(榛子) 5섬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동 두 물건을 즉시 무역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부에 고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이전에 청구한 잡물 중 본도에 분정한 것은 행회(行會)한 지 이미 오래이니 이미 마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호조(戶曹)에서 무역해야 할 잡물은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해조(該曹)에 신척하고, 새로 구정한 황율 10섬, 개암 5섬은 본도에 분정하여야 마땅하나, 비록 토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철이 지난 물건이고 그 수량 또한 많아서 그들의 청을 그대로 맞춰주기는 불가하니, 황률 10섬 중 5섬, 개암 5섬 중 3섬을 본도에 명하여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여 동래부사에게 수송하라는 일로 해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2월 11일 우부승지 신 성(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해 4월 18일

동래부사 정석(鄭晳)의 장계. 이 달 초10일 부산첨사의 치보(馳報) 내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경술조(庚戌條) 세건(歲遣) 제14선이 물건을 실어가려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격왜(格倭) 등이 말하기를 별로 다른 사정은 없다고 하며,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 긴요하게 약으로 쓸 곳이 있어서 백출(白朮) 5근, 창출(蒼朮) 5근, 적작약(赤芍藥)¹³⁰과 백작약(白芍藥)¹³¹ 각 3근 및 『두진원론(痘疹原論)』 1부를 들여 보내달라 하였는데, 동 물건을 속히 무역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고 회언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약재 물종이 이미 적고 근수 또한 많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책자만은 인쇄하여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노인 1개를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방금 동래부사 정석(鄭晳)의 장계를 접하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서 긴요하게 약으로 쓸 곳이 있어서 백출 5근, 창출 5근, 적작약과 백작약 각 3근 및 『두진원론』 1부의 무역 요구를 원한다고 하는데, 구하는 약재의 물종과 수량이 많지 않으니 본도에 명하여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나, 이른바 『두진원론』은 의사(醫司)에서도 모를 뿐 아니라, 방외(方外)의 의방(醫方)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널리 물어보아도 또한 모두 방서(方書) 중에는 본디 이런 책이 없다고 하니, 본국에 있는 책이 아닌지라 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을 시켜 말을 만들어 언급하라는 일로 동래부사 및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였음.

신해 5월 18일

동래부사 정석(鄭晳)이 5월 1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선 2척이 나왔기에

130) 적작약(赤芍藥): 작약의 뿌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131) 백작약(白芍藥): 작약의 뿌리 겉껍질을 벗긴 것. 보혈(補血) 진정(鎮靜)의 약재로 사용된다.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제1척은 차왜 1인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제2척은 급수소선(汲水小船)이라 하며, 대관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차왜가 나와 도중(島中)에서 보내 온 사신을 보았더니, 에도에서 곰가죽(熊皮) 20장, 담비가죽(貂皮) 50령, 녹두가루 500근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회연하였음. 에도에서 사용한다고 또 곰가죽(熊皮)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는바, 그 중 담비가죽(貂皮) 50령, 녹두가루 100근은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저쪽에서 또 간절하게 무역을 요구하니, 이제 전연 막기는 어렵고, 곰가죽 20장, 담비가죽과 녹두가루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적당히 재량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마땅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운운하였음. 대관 등의 말에 도중의 사신을 얻어 보니 에도에서 곰가죽 20장과 담비가죽 50령, 녹두가루 500근을 구청하였다고 하는 바 운운 물종이 많지 않고 또 그냥 주는 물건도 아니니 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5월 20일 동부승지신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신해 7월 13일

동래부사 정석(鄭皙)의 장계. 이 달 초2일에 왜선 1척이 나왔는데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차왜 및 관수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사신의 내용을 탐문하였더니, 차왜 등이 말하기를 ‘이는 판사 등이 알 바 아니라’고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수왜가 말하기를 ‘방금 도중(島中)의 사신을 보니, 에도에서 구하는 『동국시격품(東國詩格品)』¹³²⁾, 『동래독서기(東萊讀書記)』¹³³⁾,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전가집(傳家集)』¹³⁴⁾, 진씨(陳氏)의 『악서(樂書)』¹³⁵⁾, 『오경찬소(五經纂疏)』¹³⁶⁾, 『호운봉역통해

132) 『동국시격품(東國詩格品)』: 미상.

133) 『동래독서기(東萊讀書記)』: 송(宋)나라의 학자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의 저술인 『여씨가숙독서기(呂氏家塾讀書記)』를 가리킨다.

134) 『전가집(傳家集)』: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의 저술로 모두 90권이다.

135) 『악서(樂書)』: 송나라 진양(陳暘)의 저술로 모두 200권이다.

(胡雲峰易通解』¹³⁷⁾, 『춘추찬서(春秋纂書)』¹³⁸⁾, 『호방정찬서(胡芳庭纂書)』¹³⁹⁾ 등의 책자를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발기를 내어보냈는데, 이 뜻을 본부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타이르기를 '위의 책자들은 명목을 이제 처음 보는 것이니, 필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여러 가지로 타일러 막았더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이는 곧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이니, 판사 등은 중간에서 막지 말고,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상세히 아뢰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회언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책자의 인판(印板)이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어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타이르게 할 계획이거니와, 여러 책자 중에 혹 한 책의 인본(印本)이라도 각 도에 있으면 인쇄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처하게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제목. 이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동국시화품격』, 『동래독서기』, 사마온공의 『전가집』, 진씨의 『악서』, 『오경찬소』, 『호운봉역통해』, 『춘추찬서』, 『호방정찬서』 등의 책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발기를 내어 보냈다고 하는바, 『오경찬소』는 종전에 구하던 것이거니와, 여러 책이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모두 막는 것이 심히 매물차지만 형편이 이러하니 무역을 허락할 길이 없다고 각별히 말을 만들어 타이르게 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7월 14일 우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36) 『오경찬소(五經纂疏)』: 미상.

137) 『역통해(易通解)』: 운봉호씨(雲峰胡氏)는 원나라의 학자 호병문(胡炳文)을 가리키나 그가 주역학에 조예가 있어 『주역본의통석(周易本義通釋)』을 저술하였지만, 『역통의』를 저술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명나라 학자 경재(敬齋) 호거인(胡居仁)의 저술인 역상초(易象鈔)를 『역통해(易通解)』라고도 하는데 혹 이를 가리킨 것인지도 모른다.

138) 『춘추찬서(春秋纂書)』: 미상. 원나라 왕극관(汪克寬)의 저술인 『춘추호전부록찬소(春秋胡傳附錄纂疏)』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139) 『호방정찬서(胡芳庭纂書)』: 미상. 방정(芳庭)은 원나라의 학자 호일계(胡一桂)의 자인 정방(庭芳)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호일계는 『역부록찬주(易附錄纂注)』, 『주역계몽익전(周易啓蒙翼傳)』, 『사찬통요(史纂通要)』 등의 저술을 남겼다.

신해 8월 초10일

동래부사 및 좌수사(左水使)의 장계. 지난 7월 28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관수에게로 도중에서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사신의 내용을 물었더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귀국 사람이 표류하여 대마도에 표착(漂着)하였다’고 하며, 대관왜가 말하기를 ‘도중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웅담(熊膽) 10부, 5승(升)의 생마포(生麻布) 40자 짜리 300필, 화룡(畫龍)과 홍당죽(紅唐竹)과 반죽(斑竹)으로 자루를 한 황모(黃毛), 청서모(靑鼠毛), 염소털(羔毛)로 만든 세 가지 붓 각 100자루, 대절(大折) 참먹(眞墨) 200홀, 살아있는 매[活鷓] 8마리 등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달라고 하는데, 동 무역 요구한 물건의 수량을 줄이지 말고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회언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니 실로 일일이 부응하기가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필묵은 무역을 허락하여 구해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위의 각종 물건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닌지라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에 운운. 도중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웅담 10부, 생마포 40자 짜리 300필, 화룡과 홍당죽과 반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황포, 청서모, 염소털로 만든 삼색 붓 각 100자루, 대절 참먹 200홀, 살아있는 매 8마리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낸다고 하였는바, 구청 가운데 생마포 300필은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하고, 웅담과 삼색 붓, 큰 참먹, 살아있는 매 등은 이 수량대로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마련해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8월 11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해 10월 초9일

동래부사 정석(鄭晫)의 장계. 이 달 초3일 부산첨사의 치보 내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별차 박동윤(朴東尹)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

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관수 및 차왜 평성태(平成太)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관수의 말이 ‘도중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중앙피(中羊皮) 100령, 잣 25섬, 호두 30섬 등을 즉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사신이 나왔는데, 동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급히 무역 허락하여 들여 달라는 뜻으로 본부에 고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다”는 일로 회언운운 하였음. 각종의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계속 그치지 않아, 실로 일일이 구해주기가 어렵지만 또한 전연 방색하는 것도 불가하니, 해조에 명하여 적당히 재량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마땅한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중에서 중앙피 100령, 잣 25섬, 호두 30섬의 무역을 요구하는 사신이 나왔다고 하는 바 각종의 구청이 비록 이렇게 빈번하나 또한 전연 막을 수는 없으니 양피 50령, 잣과 호두 각 10섬을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10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해 10월 20일

동래부사 정석(鄭晫)이 10월 12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참사가 치보한 내용에 운운 왜선 5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운운. 대관왜 등의 말이 ‘에도에서 구청하는 녹두가루 500근, 대추 3섬, 대구 2,000마리,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대질 참떡 500홀, 담비가죽[貂皮] 50령, 산서피(山鼠皮) 150령, 노랑족제비가죽[黃獾皮] 150령, 상상품의 흰모시베[白苧布] 30필, 생모시베(生苧布) 20필, 홍전(紅氈) 500립, 마성(馬省) 100개, 각색의 대사(大紗) 30필, 소유지(小油紙) 300장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구하는 것은 물종이 번다할 뿐 아니라, 대사와 홍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서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여러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이 두 가지 물건의 무역 요구는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규례가 있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모조리 무역해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 않는다”고 회언 운운 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극히 빈번할 뿐 아니라, 그 중에 녹두가루와

붓과 먹은 겨우 이미 구해주었으니 이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우며, 그 나머지 각종 물건은 전연 막을 수는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적당히 재량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차왜 평성지(平成之)가 왜관을 옮기는 일로 또 나왔다고 하며, 관수의 말에 예도에서 구하는 녹두가루 500근, 대추 3섬, 대구 2,000마리,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대절 참떡 500홀, 담비가죽 50령, 산서피 150령, 노랑죽제비가죽 150령, 상상품의 흰모시베 30필, 생모시베 20필, 홍전 500냥, 마성 100개, 각색의 대사 30필, 소유지 300장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누누이 이야기한다 하였는바, 전 차왜 평성태(平成太)가 미처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평성지가 계속하여 온 것은 실로 전에 없는 일이거니와, 경접위관(京接慰官)¹⁴⁰이 접대하는 것이 본디 전례인데, 이번에는 일이 평상시 규례와 다르니, 접위관(接慰官)을 차출하여 보내는 여부를 묘당(廟堂)에 명하여 확정하여 지휘하게 하며, 구청의 각종 물건도 무역 요구가 빈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이 많아 일일이 부응하기 어렵고, 대사(大紗)와 홍전(紅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우니, 다시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하고, 녹두가루와 담비가죽은 겨우 이미 구해주었으니 이렇게 타이르고, 그 중에서 대추 3섬, 대구 700마리, 황모필 150자루, 참떡 200홀, 산서피 80령, 노랑죽제비가죽 80령, 흰모시베 30필, 생모시베 20필, 마성 100개, 소유지 300장 등의 물건은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낼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10월 18일 좌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해 11월 초6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별차 박동윤(朴東尹)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차왜 등에게 도중에서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으며, 관수왜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서찰을 보니, 전날에 무역 요구한 잡물을 사용할 곳이

140) 경접위관(京接慰官): 서울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접위관.

긴급하니 속히 들여보내주며, 산 노루 2마리, 산 피꼬리 4마리를 예도에서 또 무역 요구하니, 즉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을 본부에 아뢰어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산 피꼬리는 지금이 제 철이 아니니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막았다는 일”로 회언 운운 하였음. 산 노루 역시 쉬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나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어서 이전에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기에 이제 막기 어려우므로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여 구해줄 계획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서찰을 보니 전날에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속히 들여 주고, 산 노루 2마리, 산 피꼬리 4마리를 또 무역 요구한다 하였는 바, 전날에 구한 잡물은 해조에서 이미 마련하여 이제 내려 보낼 것이라고 하며, 산 노루는 본도에서 구해준다 하였는데, 산 피꼬리는 제 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다시 타일러 막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0년(1671) 11월 초7일 우승지 신 안(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해 12월 12일

동래부사 정석(鄭皙)의 장계 내용에, 도주가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자석영(紫石英)¹⁴¹을 수량의 다소에 구매 말고 급속히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한다 운운하였는데, 자석영은 곧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기에 순찰사에게 첩보하여 다소간에 구해줄 계획이라는 일임.

임자(1672) 3월 20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 달 14일 아침에 분간할 수 없는 왜선 한 척이 몰마루로 나온다 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 1척에는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7명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

141) 자석영(紫石英): 자주빛이 나는 수정. 곧 자수정(紫水晶)임.

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가 하는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 및 대관왜 등에게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가져왔다’고 하거늘, 관수 및 대관왜 등에게 가서 사신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이 달 11일에 이미 부중(府中)에 내도하였다’고 하며, 대관 등이 또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녹두가루 500근, 마른 대구 1,000마리, 홍전(紅氈) 150냥, 황모필(黃毛筆)¹⁴²⁾ 300자루, 자필(咨筆) 50자루, 대절 참떡 300홀, 담비가죽[貂皮] 50령, 각색 대사(大紗) 30필, 곰가죽[熊皮] 10령, 중앙피(中羊皮) 100령, 산 피꼬리 4마리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아뢰어 이전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빈번할 뿐 아니라 그 중에 대사(大紗)와 홍전(紅氈), 양피(羊皮) 등의 물건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이야기하니, 대관왜 등이 ‘홍전과 대사, 양피는 일찍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역을 요청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방색하는지.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이 수량대로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는 뜻으로 동래에 아뢰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며 끝내 듣지 않았으며, 노인 한 개를 가져다 드린다’고 회언 운운 하였기로, 노인을 받아 보내드리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동 노인(路引) 하나는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무역을 요구한 잡물은 도주가 방금 예도에서 나오면서 인정(人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나, 수량과 종류가 과다하여 그 중에서 감할 만한 물건은 다시 역관을 시켜 여러 가지로 막을 작정이니, 그 수량은 추가로 치계할 계획임.

임자 3월 22일

동래부사 이(李)가 이 달 17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倭船) 3척이 어제 관소(館所)에 댔다고 부산첨사가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에게 명하여 다시 사정을 묻기 위해 왜관(倭館)으로 들여보냈는데, 방금 김진하가 사정을 물어본 회언 내에, “제1척은 경술조(庚戌條) 일특송사(一特送使) 2호선이고, 제2척은 신해조(辛亥條) 이폐이양송사선(以配養送使船)이고, 제3척은 표왜(漂

142) 황모필(黃毛筆): 노랑족제비의 털로 맨 붓.

倭) 3명의 회사(回謝) 차왜 등성륜(藤成倫) 등인데, 여러 대관왜 등의 말이 ‘방금 도중의 봉행(奉行) 등이 보내온 사신을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산 두루미[野鶴] 암수 각 1마리의 무역을 요청하여 달라 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아뢰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와서 고한다”고 회언운운 하였음. 동 서계(書契)는 받아서 올려 보내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산 두루미 암수는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청한 것으로, 이 배가 이제 비로소 나왔는데, 전에도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으나, 본도는 산출되는 곳이 아니므로 다른 도에 분정해야 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할 일.

이에 근거한 예조에서의 계목을 첨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산 두루미 암수 각 1마리는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어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고 하였는 바, 두루미는 본디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충청도에 분정하여 들여보내어 부응하도록 하였으니, 동 암수 산 두루미를 속히 사들여 들여보내라는 뜻을 충청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3월 25일 우승지 신 맹주서(孟胄瑞)¹⁴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임자 3월 25일

동래부사 이(李)가 3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이제 이번 비선(飛船)이 나와서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잡물의 무역을 요청하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수량과 종류가 과다하기로 역관을 시켜 여러 가지로 막고 그 수량을 줄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의 수본(手本)에, “어제 어제 전령(傳令)으로 말미암아 무역 요청한 잡물을 줄이는 일로 왜관에 가서 말을 만들어 타이르고 여러 가지로 다투며 따져서, 녹두가루 500근 가운데 200근을 줄이고, 홍전 150널 가운데 70널을 줄이고, 대구 1,000마리 가운데 400마리를 줄이고, 황모필 300자루 가운데 100자루를 줄이고, 대절 참떡 300홀 가운데 100자루를 줄이고, 중앙피 100령 가운데 50령을 줄여 근근히 조정하고, 그 중 담비가죽[貂皮] 50령과 곰가죽[熊皮] 10령, 산 피

143) 맹주서(孟胄瑞, 1622-?): 자는 휴징(休徵), 본관은 신창(新昌)으로 부사 세형(世衡)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正郎)과 지평(持平)을 거쳐 벼슬이 호조참의(戶曹參議), 우승지(右承旨)에 이르렀다.

꼬리 4마리는 줄이지 못하였으며, 그 나머지 각색 대사(大紗)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닐 뿐 아니라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때가 없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고집하였더니, 대관 등이 '전날에 무역을 허락한 여부는 짐짓 따지지 않더라도 이 물건은 에도에서의 소용이 매우 절박하니, 비록 30필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 중 15필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끝내 듣지 아니하기로, 연유를 수분을 하는 일"이라고 수분하였음. 위의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비록 줄였다고 하나 그 수량이 아직도 많으니 결코 모조리 부응하기는 어려우니, 그 중 홍전은 70냥을 줄인 이외에 80냥 또한 수합하기가 어려우니, 더욱 이 수량의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대관왜 등에게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들이 들을지는 기필할 수 없는데,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기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啓下)하여 본부에서 올린 장계 내용에, 대관왜 등이 도주가 구청하는 녹두가루, 마른 대구, 홍전, 황모필, 자필, 대절 참떡, 담비가죽, 각색 대사, 곰가죽, 중앙피, 산 피꼬리를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수량과 종류가 과다하여 그 중에서 줄일 물건은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막아서 추가로 치계한다 하였기로 짐짓 기다렸더니, 방금 추가로 치계한 내용을 접하니, 녹두 가루 500근 내에 200근을 줄이고, 홍전 150냥 가운데 70냥을 줄이고, 대구 1,000마리 가운데 400마리를 줄이고, 황필 300자루 가운데 100자루를 줄이고, 대절 참떡 300홀 가운데 100자루를 줄이고, 중앙피 100령 가운데 50령을 줄여 근근히 조정하였고, 담비가죽 50령, 곰가죽 10령, 산 피꼬리 4마리는 줄이지 못하였고, 각색의 대사는 비록 30필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15필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끝내 듣지 않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전의 장계에 기록한 자필(咨筆) 50자루를 이제 거론하지 않았거니와, 각종 물건이 비록 재량하여 줄였다고는 하나 그 수량이 아직도 많으나, 이는 곧 도주가 에도에서 나온 뒤에 인정으로 쓰는 사례라고 하여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녹두가루와 대구, 황모필, 대절 참떡, 중앙피 등의 물건은 줄인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그 중 담비가죽 50령, 곰가죽 10령, 산 피꼬리 4마리도 찾아서 부응해주되, 홍전(紅氈)은 줄인 뒤 80냥 또한 수량에 맞추어 수합하기 어려우니 50냥의 무역을 허락하며, 각색의 대사(大紗)는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때가 없어서 길을 열기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역관

에게 명하여 막으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3월 27일 우승지 신 맹(孟)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4월 20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 내용 요약. 내용은 본부의 장계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한 것임. “도주가 구청한 각종의 물건이 비록 줄었다고는 하나 그 수량이 아직도 많은데, 이는 도주가 예도에서 나온 뒤에 인정으로 사용하는 사례라고 하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녹두가루, 대구(大口), 황모필(黃毛筆), 큰 참먹(眞墨), 중앙피(中羊皮) 등의 물건은 줄인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그 중 담비가죽(貂皮) 50령, 산 꾀꼬리 4마리, 곰가죽(熊皮) 10령 역시 구하여 부응하되, 홍전(紅氈)은 줄인 뒤 80냥 역시 수량에 맞춰 수합하기가 어려우니 50냥의 무역을 허락하며, 각색 대사(大紗)는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시가가 없어서 길을 열기에는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막으라는 일로 해사(該司)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3월 27일 우승지 신 맹(孟)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한 일이기도,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고 관문을 보냈는데, 위의 무역 요구한 잡물은 비록 수량을 줄었다고는 하나, 그 수량이 아직도 많기로 신이 재차 치계할 때 참작하여 무역 허락을 어떻게 할지라고 말을 하였는 바, 그 청에 맞추어 허락하려고 한 뜻이 아님에도, 계하한 내용이 이러하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여러 가지로 타일러 대단(大緞)은 모조리 막았고, 홍전(紅氈)만 하더라도 50냥의 무역을 허락하는 것 또한 과다하기로 30냥으로 약속하였거니와, 자필(咨筆) 50자루는 원래 수량이 많지 않아 양감할 때 당초 서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추후의 장계 가운데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응하기에 어려운 물건이 아닌 듯 하니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대사는 여러 가지로 타일러 모조리 막았고, 홍전은 30냥으로 약속하였고, 자필 50자루는 원래 수량이 많지 않아 당초 서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추후의 장계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며, 홍전은 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자필 50자루 또한 마련하여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4월 21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6월 29일

동래부사 이하(李夏)¹⁴⁴가 이 달 23일에 성첩한 장계. 아침에 왜의 분간할 수 없는 배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부산첨사 백서한(白瑞翰)이 치보(馳報)하였기에,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7명이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거늘,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두왜 및 관수왜 굴성진(橘成陳) 등이 한 곳에 모여서 말하기를, ‘서계(書契) 중에 이른바 이폐이양주(以配菴主)라고 하는 것은 곧 에도에서 나온 문서를 담당하는 장로(長老) 승려인데, 동 장로는 예사 승려가 아니라, 에도의 고 고꾸지(國司) 긴지잉(今池院)의 수제자(首弟子)이고, 대군(大君)이 극히 친애하는 자인데, 갑자기 병에 걸려 병세가 점차 위급하나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여도 아직 효험을 보지 못하였으며, 도중(島中)의 용렬한 의원의 의술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서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도주(島主)가 무안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군의 실망이 어떠할지. 부득이 이폐이양(以配菴)의 차왜가 서찰을 가지고 왔으니, 이 사연을 급속히 서술에 전달하여 알려, 의술에 정통한 의관(醫官) 한 사람을 밤낮없이 내려 보내어, 곧장 바다를 건너 살려 주신다면, 은혜가 이보다 더 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군이 듣고서도 또한 반드시 감격하는 마음이 많을 것이니, 바라건대 범연하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다음달 4,5일에 이곳에 도착하게 하면, 문위관(問慰官)이 들어갈 때 함께 갈 수 있다’고 수없이 간청하였다”고 회연 운운 하였기로, 동 서계를 받아 올리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추후에 훈도 김진하(金振夏)가 와서 아뢰기를, “관수(館守) 및 굴성진(橘成陳) 등이 아침에 또 소인 등을 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 장로(長老)의 병이 극히 위중하여, 도주가 사람을 통해 서찰을 보내와서 간청하는 것이 실로 범연하지 아니하니, 조정에서 특별히 좋은 의원을 허락하여 가서 본다면, 비록 얼굴을 보고 곧장 죽더라도 도주에게 광채가 나는 것이 실로 예사롭지 아니하고, 대군이 조선에 칭찬하고 사례함도 필시 많을 것인데, 이제 비록 보내기를 허락하더라도 여러 날을 지체하여 죽기 전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요즈음 판사(判事)들이 하는 바를 보니, 매사

144) 이하(李夏, 1626-?): 효종 갑오(甲午, 1654)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진(丙辰, 1676)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고, 승지를 역임하였다.

를 반드시 중간에서 막아서 상세히 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니, 이번에는 바라건대 모름지기 즉시 동래부에 진달(進達)하고 급히 장계로 알려져서, 좋은 의원을 골라 밤낮 없이 내려 보내어 바다 건너 일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언부언하기로 연유를 와서 고한다"고 하였음.

동 서계(書契)는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진(壬辰, 1652) 연간에 조위역관(弔慰譯官)을 청하여 갈 때 왜승(倭僧) 서수좌(恕首座)의 병으로 인하여 의관(醫官)을 겸하여 청했는데, 그 때는 저쪽에서 별도로 서계(書契)가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들여보내기를 허락하였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서계로 청하여 왔는데, 이른바 이폐이양[以酩菴]은 곧 우리나라를 존봉하는 장로의 칭호인지라, 또한 서수좌에 견줄 것이 아니니, 그 청에 부응함이 마땅할 듯 하지마는, 만약 허락하려 한다면 밤낮없이 내려 보내어 바다를 건너는 일행에 미칠 수 있게 하여야 실로 편리하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하게 하여 분부하고, 회답 서계(書契) 역시 지어내어 내려 보낼 일 및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書契)임.

서명(署名).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귀국의 돈독한 교화가 평소 그대로이듯, 본방도 같습니다. 이제 이폐이양주가 병에 걸린 지 여러 날, 여러 가지 치료가 효험이 없는데, 귀국의 좋은 의원의 진찰을 받게 하면 신기한 효험을 얻겠다고 생각하니, 바라건대 한 사람의 좋은 의원을 가려 불일간에 바다 건너 오기를, 이렇게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는 소개(小价)가 구두로 진술하는데 부치고, 펴지 못합니다. 관문(寬文) 12년(1672) 임자 6월 일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다이라노 요시마사[平義眞].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 및 도주가 동래로 보낸 서계(書契)를 보니 이폐이양주가 병에 걸렸다고 우리나라의 좋은 의원을 얻기를 청하였는바, 계사년(癸巳年, 1653)에 그들이 의원을 구함으로 인하여 이시찬(李時燦)을 들여보냈으니, 이는 이미 근거할 만한 이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서계의 사연이 이렇게 간절하여 현저히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굳이 거절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애써 따라줌이 마땅할 듯 하되, 이른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도 염병(染病)인 듯한데, 의원을 맞이하여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사생이 이미 결판날 형편인지라, 이로써 말하자면

보내도 무익하고 한갓 번거롭게 갔다가 돌아오겠거니와, 비록 그게 그런 줄 알지마는 그래도 내려 보내어 급한 사정을 구원하는 뜻을 보여주어서 광채를 내어 달라는 소원을 이루게 하올지, 일이 평상시 사례와는 다른지라, 신의 예조(禮曹)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으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며, 서계의 회답 초고를 급속히 지어내라는 일로 승문원(承文院)에도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7월 초1일에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비변사(備邊司)의 계목.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하(李夏)의 치계(馳啓) 및 예조의 복계(覆啓)를 보니, 대마도주가 이페이양 장로의 병으로 비선예다 서계(書契)를 다듬어 보내어 좋은 의원을 구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바, 이 일은 이미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고, 급한 사정을 구원하여 광채를 내는 일이니, 그 청하는 바 대로 시행하되, 해사(該司)에서 의관 중에 의술에 정통하여 밝은 자 한 사람을 각별이 골라 확정하여 급급히 내려보내어 문위역관(問慰譯官)이 배를 타기 전에 이를 수 있도록 심상치 않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7월 초1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7월 초2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에 의관을 들여보내는 일로 비변사(備邊司)의 회계(回啓)가 윤택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먼저 이미 양 의사(醫司)에 분부하여 의술에 정통하여 밝은 자를 가려 급급히 망보(望報)¹⁴⁵하고, 한편으로 각기 그 장무관(掌務官)¹⁴⁶도 또한 와서 대기하여 한 사람을 상세히 물어 가릴 수 있게 하라고 하였는데, 전의감(典醫監)에서 어제 유시(酉時) 초에 망보(望報)하였고, 혜민서(惠民署)에서는 술시(戌時) 초에 망보가 왔으니, 망보하는 일에는 혜민서가 가장 늦었고, 장무관은 양 의사에서 모두 오지 않고 오늘 해가 뜬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림자조차 없어서, 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보내겠다는 뜻으로 입계하였으나 아직도 택정하지 못하여, 시급한 일을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는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추리하면 비록 이보

145) 망보(望報): 추천 인물 명단을 보고하는 문서.

146) 장무관(掌務官): 각 관청의 장관 밑에서 직접 사무를 맡아보는 담당 관리.

다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필시 과념하지 않을 터인지라, 극히 한심하고 뒤의 폐단이 염려되오니, 양 의사의 장무관을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유사에 명하여 엄중하게 죄를 줌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비변사(備邊司)에서 입계한 내용. 대마도에 들어 보낼 의관을 각별히 택정하라는 뜻으로 해조에 신칙하였더니, 이제 들으니 전 전의감정(典醫監正) 정신민(鄭信民)을 차정(差定)한다 하였는데, 그 의술이 어떠한지는 비록 상세히 알지 못하나 신 등은 그가 일찍이 의술로 저명하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또한 전 동래부사의 군관(軍官)으로 오랫동안 동래에 있다가 겨우 서울로 돌아왔기에, 왜인들이 필시 그 얼굴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이니, 이런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부당하고, 외의사(外醫司)의 의관 중에 정유각(鄭維覺)과 함득일(咸得一) 등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 이 두 사람 중에서 사고가 없는 자로 즉시 바꾸어 정하여 떠나 보냄이 마땅할 듯한데, 이렇게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 당해 제조(提調)에게 그가 말하는 바대로 일임하였는데, 구차하게 차출한 일은 매우 해괴하니, 엄중하게 추고하라” 하였음.

예조의 단자(單子).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한 내용으로 대마도에 들어 보낼 의원 정신민(鄭信民) 대신으로 혜민서 의원 함득일(咸得一)과 정유각(鄭維覺) 중에서 사고 없는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내라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두 사람 중에 함득일이 사고가 없고 의술이 조금 낫다고 하니, 이 사람을 급속히 밤낮없이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입계한 바대로 시행함.

임자 7월 초5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6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1척이 나왔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관수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신 중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이제 이번 비선이 나온 것은 다른 일은 없고,

이때이양(以醑養) 장로의 병세가 위중하여, 일본의 의원으로는 치료할 가망이 없으니, 조선의 좋은 의원을 동래부에 아뢰어 급속히 들여 보내달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통기를 날렸는데, 동 장로의 병세가 날로 점차 위중하여 아침저녁이 염려스럽기에, 조정에서 보내는 의원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형편인지라, 듣자하니 동래 영감이 데려온 군관 중에 의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서울 의원이 미처 오기 전에 동래 군관을 급속히 청하여 들여 보내라고 하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비록 동래 군관이라도 조정에서 분부하기 전에는 영감도 결코 마음대로 허락하여 보낼 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에도에서 나올 적에 대군(大君)이 친애하던 자인데, 만약 살려 내지 못하면 도주의 무안함이 어떠하겠는가. 이 일은 다른 청과 견주어 다름이 있다. 병세가 이렇게 위급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만약 돌봐 주지 않는다면 서로 후하게 지내자는 의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특별한 사례로 반드시 보내달라는 뜻을 동래영감 전에 고하고, 한편으로 장계로 알려져 들여보내어 때맞추어 치료할 수 있게 하면, 대군의 감격과 도주의 광채가 얼마나 크겠는가? 판사 등은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일일이 아뢰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으며, 동 노인(路引) 하나를 가져다 들이는 일"로 회언 운운 하였기로,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신이 데리고 있는 군관 이상후(李尙厚)는 의술을 대략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 비선이 와서 관수가 하는 말은 대개 이상후를 가리켜 들여보내기를 바라는 것이로되, 이미 서울 의관을 청하고 또 신의 군관을 청하는 것은 극도로 번거롭고 외람스러울 뿐 아니라, 외국에 왕래하는 일은 변방의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나, 단지 신의 군관만 보내고 서울 의관의 요청을 막을 수 있다면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 또한 무방할 것이로되, 이제 이번의 소망은 의도가 서울 의원에 있고, 회계(回啓)가 내려 오기 전에 하루가 급하기에 짐짓 먼저 와서 청하는 것이기로, 비록 데리고 있는 군관이지만 다른 나라로 들여 보내는 것은, 결코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부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말로 역관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회답하게 하였거니와, 서울 의원을 들여보낼지의 여부를 속히 하교하여 주시되, 과연 보낼 것을 허락하신다면 밤낮없이 내려보낼 것이 어떠할지. 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러한데, 바다를 건너가는 걸음이 이로 인하여 지체하여 기다림을 면치 못하기로 감히 우러러 품의하오며, 또한 역관의 말을 들으니 지난날 의원을 청하는 비선이 나온 뒤로 굴성진(橋成陳)이 재삼 역관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간청하는

것은 범상한 의관에 있지 않고 반드시 침과 약에 다 달통한 의관으로서 글과 문필이 넉넉한 사람을 구하려 함이니, 만약 용렬한 의원을 들여보내면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구차한 일이 있을 것이니 저희들로서도 또한 필시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기로 아울러 이렇게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복계한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이 때이양 장로의 병세가 더욱 위중하여 동래부사의 군관 중 의술이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조정의 분부가 있기 전에는 감히 보낼 수 없는 것은 그 형편이 굳이 그러하거니와, 서울 의관으로 침과 약을 아울러 아는 자를 이미 가려 보내어 불일간 저쪽에 도착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7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임자 7월 11일

동래부사 이하(李夏)의 장계. 이 달 초□일 아침에 왜의 구별할 수 없는 선박 5척이 물마루에 나온다고 부산참사가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제1선은 임자조(壬子條) 세견(歲遣) 제1선의 정관(正官) 등중차랑(藤重次郎)과 선주 등성진(藤成辰),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 40명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비선에 두왜 1인과 종왜(從倭) 15명과 격왜 20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도중에 제 1봉행(奉行) 삼촌채녀(杉村采女) 평성령(平成令)이 에도의 분부로 인하여 오래잖아 나오기로 이곳의 모든 일을 미리 정리해 두려고 우선 나왔으며, 저번에 장로(長老)의 병환으로 조선의 양의(良醫)를 청해 오는 일로 한편으로 에도에 통보하고 한편으로는 이곳에다 와 줄 것을 청하였는데, 장로가 이미 죽어 실망이 심하며, 다만 장로의 병을 구하는 일로 밤낮으로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대로 병을 얻어 여러 날 앓아누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극도로 걱정스러우니, 일찍이 청했던 의관이 아마도 이미 서울에서 길을 출발하여 오래지 않아 당도할 것인데, 그대로 들여보내어 한편으로는 장로를 위하여 들여보냈다는 뜻을 에도에 보여주시고, 한편으로는 도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면, 그 은덕에 대한 감사가 이보다 클 것이 없겠으니, 저희들

이 나온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온 것이라, 모름지기 동래에 아뢰어 장계로 알려 시행하되, 의관이 도착하는 곳에 거둬 알려서 속히 내려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확정된 명령이 나오면 아마도 경접위관(京接慰官) 및 일을 아는 역관이 내려오는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먼저 청할 필요는 없으나, 이번에는 도주가 관중(館中)에서 실화(失火)한 이후로 차인(差人)이 거처할 방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서, 네가 먼저 나가 일을 아는 역관을 청해다가 더불어 상의하여 정돈하라 하였으며, 이 사이에 또 미리 정해두지 않아서는 안될 일이 있으니, 한첨지(韓僉知)가 속히 내려와 머무르면서 그대로 차왜를 접대하도록 정녕 장계로 알려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평성령(平成令)이 나오는 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차왜가 요즈음처럼 빈번한 적이 없는 것은 일이 매우 타당치 아니한 것이고, 나온 뒤에 그 경중에 따라 접위관이 내려올 일이 있으면 당상(堂上) 역관이 또한 따라옴이 마땅한데, 어찌 반드시 미리 와서 기다리겠는가?' 라고 하였더니, 두왜 및 관수 등이 소리를 같이하여 말하기를 '차왜가 빈번한 것은 과연 판사(判事) 등의 말과 같으나 그게 부득이한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일은 판사들이나 저희들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대단한 차왜가 오면 미리 서울에서 접위관을 차출하여 내려보내어 중도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본디 규례이며, 수역(首譯)이 기일 전에 내려온 것은 한 두 번이 아닌데, 판사 등은 전날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할 것 없이 속히 장계로 알리라'고 하였으며, 전에 이른바 두왜는 평상시에 왕래하던 두왜와 견줄 바가 아니고, 일찍이 일대관(一代官)을 역임하고 바야흐로 도주 수하의 친근한 책임을 맡아서 한 시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노인만 전하고 또한 위의 두 가지 일만 말한 이외에는 발설하는 말이 없는 바, 그 차왜가 주간하는 바를 상세히 탐문하니 숨겨서 말하지 아니하기로, 다시 그 사정을 탐문할 계획임. 굴성진(橘成陳)이 또 말하기를, '문위역관(問慰譯官)의 행차는 이 달 초9일에 함께 발선(發船)하는 일로 이미 도중(島中)에 치보하였는데, 장로가 죽은 연고로 도중이 분주할 뿐 아니라, 도주 또한 병이 있기로 날짜를 조금 물려 오라고 하였으며, 제1선의 서계(書契)는 다례(茶禮)¹⁴⁷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함. 노인 한 개를 가져와 바치는 일'로 회연 운운 하였기에 받아서 올려 보낸다고 운운하였음.

147) 다례(茶禮): 부산에 온 왜의 공식 무역 사절을 맞이하여 조선 측에서 거행하는 간단한 접대 의식 절차.

추가로 훈도 김진하(金振夏)가 와서 고한 내용에, “어제 비선에 있었던 두왜 및 관수의 말이, ‘왜관에 와서 보니 차왜가 들어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혹 부산객사(客舍)를 빌리거나, 혹은 사정(射亭)을 빌리거나, 혹은 영가대(永嘉臺)¹⁴⁸를 빌리거나 변통을 해야 할 형편이니 또한 장계로 알려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김근행(金謹行)과 더불어 그것이 근거 없음을 말하기를, ‘이제 이번 차왜가 주간하는 일이 비록 무슨 큰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기도 전에 너희들이 무리한 말을 발설하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다. 너희들이 시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래에 머무는 차왜와 같이 하려고 하면 임의대로 할 것이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발설하여 장계로 알리라고 요구하는가? 긴요하지 아니한 차왜가 연속하여 나오는 것이 이미 극도로 부당한데, 만약 들어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염려되면 여러 차왜와 여러 송사(送使)들이 비록 날짜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속히 돌아가고, 그 방을 비워서 대접함이 마땅하거늘, 이렇게 무리한 말은 다시는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이는 형편을 보아 잘 조처할 것이나, 한참지(韓僉知)는 상의하여 조정할 일이 허다하게 있으니 속히 내려오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말하는 바가 형편없으므로 감히 번거롭게 수본에 진술하지 않고, 직접 나가 고하겠다고 하여 와서 고하였으며, 차왜 평성령(平成令)이 나온 연유는 숨겨서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수역을 미리 내려오라고 하였는바, 이는 전에 청한 것을 펴려고 먼저 주간할 일이 중대하다는 뜻을 보임에 지나지 않거니와, 의관을 청해가는 일은 장로왜(長老倭)가 이미 죽었음에도 다시 도주의 병으로 인하여 보내주기를 청하는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복계(覆啓)를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비선 한 척이 나왔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 두왜의 말이 도중의 제일봉행(第一奉行) 삼촌채녀(杉村采女) 평성령(平成令)이 예도의 분부로 말미암아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라고 하며, 또한 말하기를 일전에 장로의 병환으로 좋은 의원을 청하였으나, 장로는 이미 죽었고 도주가 장로 때문에 주야로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대로 병환이 들어 앓아 누워 있으니, 전에 청했던 의관이 아마도 이미 길을 떠났을 터인데, 그대로 들여 보내어 한편으로는 장로를 위하여 들여보냈다는 뜻을 보여 주고 한편으로는 도주의 병을 치료

148) 영가대(永嘉臺): 부산진성(釜山鎭城) 남문 밖 바닷가에 쌓았던 대의 이름. 조선시대 관원이 부산항을 통제하던 곳으로 왜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한다면 그 은혜와 감격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고, 또한 확정된 명령이 나오면 마땅히 경접위관(京接慰官)과 일을 아는 역관이 내려오는 규례가 있으니 미리 청할 필요는 없으나, 도주가 왜관의 화재로 거처할 방이 남아 있지 않으니 미리 나가서 일을 아는 역관을 청해다가 상의하여 정리하라 하였다고, 한첨지(韓僉知)가 속히 내려와 접대하도록 하는 일을 정녕 장계로 알려달라 하였다고 하는바, 평성령(平成令)이 장차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간할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관사(館舍)를 반드시 미리 정돈하고, 또 부산객사(釜山客舍) 등처를 빌려서 들어가겠다는 설은 극히 무리하며, 경접위관 및 일을 잘 아는 수역(首譯)만 하더라도 차왜가 와서 도착한 뒤에 소간사의 경중을 탐지한 뒤에 차출하여 보내어도 또한 늦지 않고, 도주 자신에게 병환이 있어서 또 의원을 보내주기를 청하는 것은 장로와 비교하면 보내주기를 청하는 일이 더욱 간절하고 긴급하니, 이전의 함득일(咸得一)을 그대로 급급히 들여보내게 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회의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7월 12일 우부승지 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임자 윤7월 24일

동래부사 이하(李夏)의 장계. 윤운. 왜선 2척이 관소(館所)에 돌아와 정박하였거늘,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대관 등의 말이, ‘에도에서 사용할 상품의 우황(牛黃) 5냥을 도중(島中)에서 무역 요구하였는데, 이는 병환 중에 급하게 사용하는 약이나, 어제 사정을 물을 적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였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가서 아뢰어 달라’고 이야기하기로, 직접 나가 고한다고 와서 고한다” 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우황은 이미 약용이라 말하여 전연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비록 5냥의 수량을 맞추지 않더라도 참작하여 무역하여 보냄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에도에서 사용할 상품의 우황 5냥을 도중(島中)에서 무역 요구하였는데, 이는 병환이 급할 때 사용하는 약이라고 윤운 하였는 바, 우황은 근년에 소가 돌림병으로 죽은 나머지 이 물건이 극히 귀하여 구하기가 쉽지 않으나, 저들이 이미 약용이라 말하여 전부 막기에

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황 2냥을 해조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구하여 부응하게 하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윤7월 25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8월 초7일

동래부사의 장계에 운운. 지세포(知世浦)에 표류한 왜선(倭船)이 돌아와 관소(館所)에 정박하였거늘,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다시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전날에 평성지(平成之)가 빌어 타고 돌아들어갔던 금년조 세견(歲遣) 제1선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왜인이 나온 수 및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전날에 묻은 사정과 다름이 없거니와, 관수 및 굴성진 등에게 봉행 등이 별도로 보낸 봉함 사신을 전달하였다’고 하거늘, 사신의 사연을 관왜 등에게 상세히 물었더니, 답하기를 ‘특별히 다른 일은 없고, 본국의 여러 지방에 큰 비가 잇달아 내려 바닷가의 주민들이 모조리 빠져 죽었다고 하며, 새 장로(長老)도 비에 막혀 오지 않았으므로 문위관을 청해 오는 것도 이로 인하여 늦어지기에 이런 연유로 비선을 보냈고, 도중에서 긴급하게 급히 약으로 사용할 곳이 있어, 백출(白朮), 창출(蒼朮) 각 5근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고, 전날에 무역을 요구한 우황도 또한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약을 속히 무역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아뢰어 달라’고 누누이 언급하였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치는 일”로 회언 운운하기로,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는 바의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은 받아 올려야겠으나, 그 중에 ‘유예하지 말기를 바란다[乞勿猶豫]’는 말이 있는데, 유예라는 두 글자는 서로 공경하는 도리에 흠이 있기로, 관왜에게 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고쳐 올리게 하였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창출과 백출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도중(島中)에서 긴급하게 급히 약으로 쓸 곳이 있다고 백출과 창출 각 5근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고, 전날에 무역을 요구한 우황도 또한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바, 창출과 백출은 원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본도에서도 산출되는 곳이 있으니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우황은 2냥을 이미 무역 허락하여 이제 바야흐로 구해보냈기로,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8월 초8일 동부승지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9월 14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8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거제(巨濟) 지경으로 표류한 왜선 2척이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뒤로 사정을 물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그 때 관수왜가, '봉행(奉行) 등이 별도로 봉한 서찰이 있는데 궐성진(橋成陳), 등성시(藤成時)와 함께 앉아 직접 말해야 하겠다'고 하기로, 역관 등을 시켜 다시 더 탐문하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 등이 직접 올린 수본 내용에, "소인 등이 왜관에 갔더니, 궐성진과 등성시와 일대관(一代官) 등이 관수(館守) 있는 곳에 모여 앉았다가, 봉행 등이 보낸 서찰 한 장을 내어 보여주기에 그 서찰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에도의 서찰 가운데, 명년 봄이면 도주가 전례에 따라 올라오는 일이 있을 터인데, 명년에는 아까마세끼(赤間關) 서쪽의 각 섬에서는 별도로 송차(送差)가 할 일이 있으므로, 다른 각 섬에서도 모두 올라오지 말라는 분부가 있어서 도주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였기로, 도주가 이미 친히 가지 않는다면, 금년 연말에는 마땅히 봉행 한 사람을 대신 에도로 보내어 해를 넘기는 문안을 해야 하는데, 그 때 보낼 매(鷹子)를 지금 이 때 미리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종전에 도주가 친히 갈 때 대군(大君) 전에 드리는 인삼은 대관(代官) 등이 무역하여 보내는 물건을 가려 사용하지만 매양 품질이 좋지 않으니, 이번에는 도주가 이미 친히 가지 않고 사람을 차출하여 대신 보내는 물건인지라 더욱이 정밀하게 가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 뜻을 관수와 궐성진이 동래 영감 전에 직접 진술하여 조정에 장계로 알려, 그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관가에 저축한 극상품의 인삼 200근을 특별한 사례로 무역을 허락받을 일'이라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인삼과 매 및 각종 잡물 중 조선에서 산출되는 것은 반드시 미리 구해 놓았다가 도주가 에도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은 조선에서도 아는 바인데, 이번에는 도주가 이미 친히 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기에 그 형편이 더욱 더 정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봉행 등의 서찰이 이러하고, 해마다 구청하는 매의 미수(未收)가 매우 많은데 이렇게 지급해야 할 물건을 어찌하여 일일이 들여 주지 않는지. 지나간 이야기 비록 뒤늦

게 허물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급속히 미납한 각 지방에 알려져 9월 스무날 이전에 전량을 들여 주어야 기일에 맞추어 들여보낼 수 있으며, 인삼도 근일에 상인들이 소지한 인삼은 모두 품질이 저열한 연조(連條)라, 대군 전에 올리는 물건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니, 비록 무거운 값으로 사더라도 반드시 품질이 좋은 것을 지극하게 골라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속히 장계로 알려 기일에 맞추어 내려 보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구청한 매[鷹子]는 과연 미수가 있으나, 근년 이래로 매의 병이 계속되어 혹은 도중에 죽거나 혹은 왜관에 도착하여 죽어 돌아가 다시 마련하며, 또 다시 이렇게 각관에 분정하는 것이 한 해 중에도 서너 차례나 되어, 오고 가면서 무사히 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므로 미수가 많은 것은 그 형편이 이러해서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 동래영감 전에 아뢰어 각관에 신칙할 것이거나와, 다만 인삼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라고는 하나 원래 관가에서 저축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예전에 캔 것은 이미 끝났고 새로 캐기에는 아직 멀었으니 200근의 수량은 결코 수합(收合)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공목(公木)을 쌀로 바꾸는 일을 다룰 적에, 관수 및 굴성진이 말하기를, '200근의 인삼은 비록 조선에 구한다고는 하나, 성신(誠信)으로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구해 주지 않아서는 안되거늘, 이제 값을 맞추어 사가는 데도 조정의 분부가 있기 전에 판사 등이 매양 중간에서 방색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것은 매우 극히 부당하니, 마음대로 하라 운운' 하면서 말씨가 난폭하였으며, 등성시(藤成時)는 '판사 등은 관가에 저축한 것이 200근의 수량이 못될까 염려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또한 이치가 없지는 않으니, 비록 200근의 수량이 안되더라도 만약 백 삼사십근을 구한다면, 그 나머지 부족한 수량은 혹 장사꾼들에게 사들여서 보충할 수도 있겠으니,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고 급히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수본 운운하였음.

인삼만 하더라도 저들이 이른바 상인들이 소지한 것은 모두 품질이 열등한 연조라서 예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설은 일의 형편이 혹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수량이 이렇게 과다하여 결코 이대로 부응할 수는 없겠기로 역관 등에게 다시 더 막았지만, 무역 허가의 다소는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처분하는 데 달려 있으며, 매[鷹子]는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여 각 읍에 재축하여 들여 줄 계획이로되, 금년에는 매 상인으로 서북 지방에 들어간 자가 모두 빈손으로 돌아와, 아직 한 마리도 팔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쪽 사람들의 재축은 이러하니, 일이 매우 염려스럽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왜인이 무역 요구하는 인삼이 200근이나 되기에 그 수량이 너무 많아 그 수량에 맞추어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먼 곳 사람의 무역 요청을 또한 일체 방색하는 것도 불가하고, 앞서 참작할 적에 혹은 태반으로 줄여 무역을 허락하거나 혹은 삼분의 일의 무역을 허락한 시기가 있었으니, 이제 이번 구청의 200근 중에서 70근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게 하여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9월 18일 우부승지 신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원 장계는 비국(備局)에 내려줌]

임자 10월 초5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9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어제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7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먼저 도착한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인데, 이관차왜(移館差倭)¹⁴⁹가 이미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서 나올 것이라고 통기하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임자조(壬子條) 제1특송사 정관(正官) 등일정(藤一政)이고, 제3척은 2선주 굴구지(橘矩之) 등이고, 제4척은 수목선(水木船)으로 격왜 20명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년 2특송선과 3특송선의 서계 또한 가지고 왔으며, 제5척은 이폐이양송사[以酏菴送使] 정관 등성정(藤成正) 등이고, 제6척은 동년조 세견(歲遣) 제4선 정관 굴상의(橘尙義) 등이 서계를 가졌으며, 동년조 겸대세견(兼帶歲遣) 제5선에서 제10선까지의 서계를 차례로 가지고 나왔거늘, 도주의 사정을 탐문하니 정관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귀국의 의관 함주부(咸主簿)는 도주를 침구(鍼灸)로 치료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아직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관수 및 여러 대관의 말이 ‘방금 도중(島中)에서 온 서찰을 보니,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인삼 등의 물건을 아직도 들여 보내지 않는다고 저희 등에게 책망하였는데, 동 무역을 요구하여 미수한 물건을 속히 재촉하여 들여달라는 뜻으로 동래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각 선박에서 가져 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에 따라 올리겠다’는 일”로 회언 운운하였기로, 동 노

149) 이관차왜(移館差倭): 왜관을 옮기는 일을 위해 대마도에서 특별히 차출되어 파견된 왜인.

인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위의 뒤쳐진 왜선 1척을 속히 찾아내어 통문을 날리라는 뜻으로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에게 다시 신칙하는 일로 치통하였고, 동 비선의 노인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며, 인삼은 다소간에 해조에서 내려 보낸다는 뜻으로 역관에게 명하여 대관 등에게 언급하게 할 것이거니와, 이관차왜(移館差倭)가 나오는 것이 수삼일 내에 있을 것이라면, 접위관(接慰官) 역시 미리 차출하여 짐을 꾸려 기다리게 하여야, 때에 임하여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이라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왜선 5척이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용에, “한 척은 이관차왜가 이미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바람이 순조로우면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이라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관수왜의 말이, ‘도중의 서찰을 보았더니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인삼 등의 물건을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저희들에게 책망하니 모름지기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운운 하였고, 인삼은 마땅히 내려보내겠다는 뜻으로 역관에게 명하여 대관 등에게 언급하게 하였거니와, 이관차왜가 나오는 것이 수삼일 안에 있을 것이라면 접위관을 차출하여 짐을 꾸려 기다리게 함이 궁색하고 다급할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일로 치계한다 하였는바, 전날에 요구한 바의 인삼 70근의 무역을 허락하는 일은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였으며, 접위관은 전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차왜가 내도한 뒤에 주간하는 일의 경중을 탐지하여 차출해 보내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이미 확정하였는데,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10월 초2일 우부승지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한다. 접위관은 차출함이 옳다”고 하였음.

임자 10월 초9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초2일 성첩한 장계. 아침에 분간되지 않은 왜선 1척이 물마루에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 및 대관 등에게 도중에서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지고 왔다’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사신 중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와 대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앉아 말하기를, ‘방금 도중의 서찰을 보니, 귀국의 의관(醫官)은 도주를 침주로 치료하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해 짐짓 머물러두었다고 하거니와, 도주의 병환에 사용할 약재 중 백출(白朮) 5근, 숙지황(熟地黃) 5근, 백작약(白芍藥) 5근, 생지황(生地黃) 3근, 오미자 2근, 우담(牛膽)과 남성(南星) 1부, 상기생(桑寄生)¹⁵⁰ 반근, 방풍(防風) 2근, 맥문동(麥門冬) 1근 등이 바야흐로 모자라니 속히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바, 전에도 약재의 무역을 요구할 때 각관에 분정하여 운반하여 줄 동안에 날짜가 자연히 오래 지연되어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 맞추지 못하여 극도로 민망하였으니, 이번에는 이전같이 하지 말고 각 아문에 저장한 약재를 추이(推移)하여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때맞추어 사용하자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잣 30섬, 호두 30섬, 마른 대구 2,000마리, 대추 3섬, 황률 3섬 등을 무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아울러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일시에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 하거늘, 소인이 말하기를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 두 번이 아니어서 결코 매양 수량대로 허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대구는 비단 제철이 아닐 뿐 아니라 장차 2,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것을 또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며, 약재만 하더라도 장계를 올린 뒤에 무역을 허락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관수 등이 말하기를 ‘약재는 이미 도주의 병중에 사용할 것이고, 대구 등의 물건은 곧 예도에서 사용할 것이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수량을 줄이기는 어려운 형편이거니와, 그 중 대구는 판사가 이렇게 다투어 고집하니, 1000마리만 수량을 줄이고, 1,000마리만이라도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노인 하나를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무역을 요구한 잡물 중 대구, 잣, 호두 등은 그 수량이 과다하며 약재 가운데 백출은 겨우 이미 무역을 요구하였으니 다시 분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상기생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하게 생산되니, 결코 이 수량대로 장계하여 무역을 청하도록 알리는 것은 불가하니, 다시 막아서 수량을 줄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방금 접한 역관 등의 수본 내에 “분부한 대로 왜관에 가서 여러 가지로 다투어 따졌더니, 대관왜 등이 답하기를 ‘예도에서 사용할 것이기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량을

150) 상기생(桑寄生): 뽕나무겨우살이의 줄기와 잎. 요통(腰痛), 하혈(下血) 등을 다스리는 약제로 사용한다.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대구는 이제 비록 제철이 아니지만 잡을 시기가 멀지 않으니, 비록 일시에 그대로 주지 못하더라도 차례차례 들여 주셔도 좋으며, 호두와 잣은 곧 귀국에 지극히 천한 물건인데 어찌하여 방색하는지. 또한 약재는 도주가 병중에 사용할 것이므로 비선을 보내었는데 이제 예전에 채집한 것은 이미 다 없어졌고 새로 채집하는 것은 거두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약물도 오히려 어렵다고 한다면, 두 나라가 서로 후하게 대하는 도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운' 하였고, 대구 2,000마리 내에 400마리를 줄이고, 호두와 잣은 30석 중 각기 10석을 줄이고, 백출은 5근 중 3근을 감하며, 상기생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는 뜻으로 갖추어 자세히 말하였는데 끝내 듣지 아니하고,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는다 연유"라고 수분을 하였는데,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을 모두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왜선이 나와 사정을 물었더니 관수 등의 말이, 귀국 의관은 도주의 침구 치료가 끝나지 않아 짐짓 머물러 두고, 도주의 병환에 사용할 백출, 5근, 숙지황 5근, 백작약 5근, 생지황 3근, 산약 3근, 산수유 3근, 황금(黃芩)¹⁵¹⁾ 3근, 택사 1근, 황기 2근, 오미자 2근, 우담과 남성 1부, 상기생 반근, 방풍 2근, 맥문동 1근 등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되, 각 아문에 저축한 것을 추이(推移)하여 무역을 허락하며, 예도에 사용할 잣 30섬, 호두 30섬, 마른 대구 2,000마리, 대추 3섬, 황률 3섬을 또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거늘, 대구 2,000마리는 비단 철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수량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1,000마리를 줄였으며, 또한 잣과 호두는 그 수량이 또한 많고 백출(白朮)은 겨우 이미 무역하여 보냈다는 뜻으로 타일러 막았더니, 대구 1,000마리 중 400마리를 줄였고, 호두와 잣은 30섬 중에서 각기 20섬을 줄였고, 백출은 5근 중 3근을 줄이고, 상기생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마지않는다고 하였는바, 대구 600마리, 호두와 잣 각 15섬, 대추와 황률 각 3섬, 백출 2근, 백작약과 산약과 산수유와 황금(黃芩) 각 3근, 황기(黃芪)¹⁵²⁾와 방풍(防風)과 오미자 각 2근, 맥문동과 택사(澤瀉)¹⁵³⁾ 각 1근, 우담(牛膽)과 남성(南星) 1부, 숙지황 5근, 생

151) 황금(黃芩):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초 속서근풀의 뿌리.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해열제로 사용한다.

152) 황기(黃芪): 황기의 뿌리. 원기를 돕고 방한(防汗)의 약재로 사용한다.

153) 택사(澤瀉): 택사과의 다년초 택사의 덩이뿌리. 이뇨(利尿)의 약재로 사용한다.

지황 3근을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상기생(桑寄生)은 요사이 매우 모자라 구하기가 어렵다고 다시 더 타일러 방색하며, 약재 중에서 두 가지 생지황과 숙지황, 우담과 남성은 본도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의사(醫司)에 명하여 구해서 보내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10월 초10일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이제 이번에 구하는 약재는 이미 도주의 병에 사용할 물건이고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며, 상기생이 비록 아주 모자란다고는 하나 전연 막기에는 또한 매우 매물차니,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옳다고 하교하신 일을 예조의 계목에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상기생은 구청(求請)한 원래 수량이 반 근인데, 비록 8냥의 수량에 차지 않더라도 얻는 대로 값을 주어 사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의사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10월 11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자 12월 18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11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6일 아침에 분명하지 않은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기 위해 왜관(倭館)으로 들여보냈는데, 회언 내에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 및 등성시(藤成時) 대관왜(代官倭) 등에게로 보내는 사신을 전달하였다’고 하거늘, 관수 등에게 가서 사신 가운데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이제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고 회언하였기로, 오늘 아침에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관수 및 등성시 대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앉아 말하기를, ‘도주의 병중에 사용할 살아있는 잉어와 붕어 각 30마리의 무역을 요구하여 급급하게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 바, 이런 얼어붙는 추위에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필시 어려우나, 이는 곧 병중에 사용할 것으로 가장 긴급하기 때문에 비선을 보내었으니, 이 뜻을 상세히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진작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장계로 알려 돌아내려오기를 기다린다면 날짜가 지연되어 긴급하게 사용할 시기에 미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한편으로 장계로 알리고 한편으로는 본부에서 산출되는 곳에 이문을 보내어, 급급히 들여달라는 뜻을 십

분 잘 아뢰어 달라'고 간절하게 말을 하여 마지않았으며, 또 말하기를 '이제 도중(島中)의 사신(私信)을 보니, 이전에는 매년 가을에 공목(公木) 대여섯 동을 정례로 들여보내어 도주가 두루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겨울철이 반이나 지나도록 아직까지 들여보내는 일이 없으니 그 연유를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책망하였으며, 구청한 매(鷹子)의 마리 수만 하더라도, 근래에 계속하여 들여 주고 있지만 이런 영성한 수량으로는 결코 에도에서 두루 사용할 수 없으니 동 미수(未收) 매(鷹子)를 급급히 재촉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책망하였는데, 이 뜻을 아올려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공목(公木) 및 미수 매(鷹子)를 남김없이 들여 주어 도중에서 책망하는 폐단을 면하게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산 잉어와 붕어 등의 물건은 비록 도주의 병환에 사용한다 하였으나, 지금 얼음이 얼어붙어 잡기가 어려운 듯하고, 조정의 분부가 있기 전에는 동래영감 또한 임의로 각 관아에 이문을 하여 구하기가 어려우며, 매는 근래에 각관에서 다수를 잡아 왔으나, 매의 버릇이 치열하여 중로에 죽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일일이 같을 수가 없다'고 운운하였다니, 관수(館守) 등이 말하기를, '무릇 우리가 무역을 요구하는 것과 정례로 주는 물건을 판사 등이 매양 중간에서 틀어막는 것을 일삼고 진작 시행하지 않아서, 저희들로 하여금 도중의 힐책을 면치 못하게 한다'고 힐책하면서 극도로 우려하고, '다시는 막지 말고 일일이 동래부에 가서 아뢰어 각항의 물건을 속히 들여달라'고 중언부언하였다"는 일이며, 동 노인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로,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매는 버릇이 매우 격렬하여 서북의 매 상인이 대개 실수하기 때문에, 비단 관가의 매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매 또한 전혀 없기에, 허다한 정례(定例) 지급의 수량을 충당해 줄 수 없어서 참으로 염려스럽거니와, 살아 있는 잉어와 붕어는 저들이 이미 도주(島主)의 병중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비선을 보냈을 뿐 아니라, 문정(問情)한 뒤 관수왜(館守倭)가 또 역관을 시켜서 신에게 말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물고기는 곧 병환에 사용할 것 인지라 하루가 다급하여, 결코 장계로 알리고 돌아서 내려오도록 기다릴 수가 없고, 영감이 만약 구해주려고 한다면 필시 구할 길이 있을 것이니, 장계로 알릴 필요 없이 본부에서 모조록 편리한 대로 마련해 주어서 진작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바, 그 절박하고 긴급한 형편을 알 수 있겠으나, 다만 잉어와 붕어는 모두 강물에서 산출되는 것인데, 근래에 강물이 이미 얼어붙어서 잡기가 실로 어렵고, 들으니 김해와 양산 등지에서는 간혹 간간이 잡는 곳이 있다 하는데 산채로 잡기에는 그 형편이 더욱 어려

우며, 조정의 분부가 있기 전에는 또한 본부에서 마음대로 이문을 하여 구하는 것이 불가하기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이 뜻으로 타일러 막을 계획이며, 저들이 이미 간절히 구하니 끝까지 모두 방색하는 것은 어렵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공목(公木)을 정례로 지급하는 기한이 이미 지나도록 미수(未收)된 매의 마리(鷹連) 수를 맞추지 못하였기에 저 사람들의 책망을 면하기는 어려우니, 속히 수량에 맞추어 들여보내어 다시 책망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산 잉어와 붕어는 곧 도주의 병환에 사용하는 것인지라 더욱 급속히 구해 주어서 긴급하게 사용할 때 미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니, 산출되는 지방에서 속히 구하여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1년(1672) 12월 초5일 우부승지 민(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임자 12월 19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13일 성첩한 장계. 이 달 11일 아침에 왜의 분간되지 않는 배 세 척이 물마루에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와 별차 박재흥(朴再興)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제1척은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의 수목선(水木船)이고, 제2척은 경술조(庚戌條) 겸대(兼帶) 2특송사(特送使) 1호선이고, 제 3척은 동 특송 2호선인데, 격왜 30명이 대관(代官) 중의 짐을 싣고 가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동 선박 등은 전에 이미 들어갔다 이제 또 나온 것으로 규정 외의 일이기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 등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말로 책망하고 노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며, 대관(代官) 등의 말이, ‘방금 도중의 사신을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녹두 300근, 마성(馬省) 300개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타이르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렇게 수량이 많은 물건은 결코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심분 타일렀더니, 동왜인 등이 답하기를 ‘이는 중대한 물건이 아닌데도 판사 등이 이렇게 막았더니, 녹두가 루 100근과 마성 100개는 줄이고, 그 나머지는 판사 등이 모름지기 중간에서 막지 말

고 속히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가게 해 달라'고 누누이 언급하기에, 동 수목선의 노인 하나를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며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상항의 녹두가루와 마성 등의 물건은 이미 예도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여 전연 막기 어려움이 있으니,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한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구하는 두 가지 물건이 과연 예도에서 사용할 것이라면 진작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니, 녹두가루 200근과 마성 100개를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주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한지. 강희 11년(1672) 12월 19일 동부승지 신 경(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1673) 정월 초3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12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운운. 표왜선(漂倭船) 3척이 어제 왜관에 도착한 뒤에 훈도 김진하(金振夏)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중한 수질(水疾)¹⁵⁴을 앓아서 사정을 묻지 못하였기로 당일 다시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김진하 등의 회언에, “왜선 3척은 임자조(壬子條) 만 쇼오영송사(萬松院送使) 정관(正官) 등성창(藤成昌) 등과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平義眞送使) 정관 등효항(藤孝恒) 등이라 하며,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송사 및 관수 등이 한 곳에 모여 앉아서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울적에 풍문으로는 문위역관(問慰譯官) 및 의관(醫官) 등이 이미 떠났다고 운운하였으며, 저희들이 나오는 날 바람 형세가 순조롭지 못해서 표류하여 거제(巨濟) 지경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겨우 왜관에 도달하였는데, 전에는 무릇 왜선이 표류하여 우도(右道)에 닿으면 대개 우대하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세포(知世浦)에서 각관의 포구를 거쳐 가덕(加德)에 이르니, 동 가덕진의 첨사(僉使)가 전선(戰船)에 나와 앉아 두 번 포를 쏘고는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는 양식이나 땀감 등의 물건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지라,

154) 수질(水疾): 배 멀미.

두 나라의 성신(誠信)의 도리가 어찌 이다지도 심하게 박대하는지 연유를 상세히 조사하여 회언해 달라'고 중언부언 하였으며, 대관 등이 또 말하기를, '방금 도중의 사신을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곳이 있어서 『동의보감(東醫寶鑑)』, 『오경대전(五經大全)』 각 1건, 극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대절 참먹 100홀, 중절 참먹 200홀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전날에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낸 붓과 먹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예도에서 사용하기에 합당치 않아 매양 낭패를 당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극도로 골라 사서 보내주시되 이 뜻을 동래영감 전에 고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은, '포를 쓴 한 가지 일은, 각 포구의 규례가 다른 배를 보면 포로 응함이 정례여서이지 어찌 뜻이 있어 그리 하였겠으며, 양식에 대한 일은 또한 동진(同鎭)의 하인 등이 몰라서 진작 거행하지 않은 소치이지, 이 어찌 첨사가 알 바이겠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양식은 굳이 바라지 않지마는, 땀감과 물도 지급하지 않으니 이는 박대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포를 놓은 것도 지세포 이후로 각 포구에도 모두 전선이 있었음에도 모두 이런 일이 없었거늘, 가덕에서만 홀로 한 것은 이 어찌 뜻이 없는 일인가? 운운' 하면서 노하여 마지 않는다"고 와서 고한다고 하였음. 상항의 가덕진에서 방포하였다는 설은 비록 곡절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또한 저들이 노한다고 인하여 조사 문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정례로 지급하는 양식과 땀감과 물을 전혀 들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먼 곳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에 참으로 매몰차기로, 도신(道臣)에게 논보(論報)하여 우도(右道)의 각 포구에 신칙할 계획이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서책과 붓과 먹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가덕에서 방포(放砲)방포(放砲)하였다는 이야기는 비록 그 곡절이 어떠한 지 알 수 없으나, 정례로 지급하는 양식과 땀감과 물을 전혀 들여주지 않은 것은 매우 심하게 매몰찬 일이니, 도신에게 명하여 조사하여 장계로 알린 뒤에 조치하며, 구하는 서책 중에 『오경대전』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여 기어코 방색하되, 『동의보감』 및 황모필 300자루, 대절참먹 100홀, 중절참먹 200홀은 수량에 맞추어 구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정월 초4일 우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정월 초10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초4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2일 아침에 왜의 분간되지 않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馳報)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차왜에게로 도중에서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으며, 대관 등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도주가 병중에 사용할 오미자(五味子) 3근, 맥문동(麥門冬) 2근 및 에도에서 사용할 극상품의 자필(咨筆) 50자루 등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되, 이전에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낸 자필은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에도에서 사용하는데 맞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전에 견주지 말고 극상품의 자필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여러 가지로 신척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보내달라고 누누이 마지않았다”고 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당일 동 첨사(僉使)의 치통 내에, “어제 분간되지 않은 배 5척이 나온 연유를 이미 치통(馳通)하였는데, 방금 초탐장(哨探將)의 치보(馳報)를 보니, ‘왜선 3척과 우리나라 문위역관(問慰譯官) 김근행(金謹行) 등이 탄 배 1척 도합 4척이 나왔기에 관소(館所)에 부쳐놓았는데, 5척이 나왔다는 사실은 필시 밤의 어둠 속에 봉군(烽軍)이 잘못 살펴본 일일 것이다’라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동 봉군 등을 한편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쳤으며, 한편으로 훈도 김진하(金振夏)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는데, 회언 내에 ‘1척은 문위역관 김근행과 정문수(鄭文秀) 등이 탄 배인데, 일을 마치고 돌아 왔으며, 왜선 3척 중 한 척에는 양국의 차지왜인(次知倭人) 굴성진(橘成陳) 등이 역관의 행차를 호위하기 위해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격왜 30명과 우리나라 의관 함득일(咸得一)이 데려간 하인 등이 함께 타고 회답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임자조(壬子條) 세견(歲遣) 제1선의 수목선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해 나왔다가 들어간 이후로 이제 또 나왔으니 이는 규정 외에 속하기로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 등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노인을 받지 않았고, 관수 및 대관 등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구청하여 미수한 매를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재촉하였으나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는 바, 에도에서의 소용이 심분 긴급하니 속히 재촉하여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 동 매 등을 이번 달 안으로 남김 없이 재촉하여 들여

주어 진작 도중으로 보내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여러 가지로 간청 하였으며, 굴성진이 가지고 온 서계 등본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면서 회언하였기로, 동서계 등본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상항의 규정 외에 나온 왜선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하였다는 일"로 치통(馳通)한다 하였음. 역관 김근행이 가져온 회답 서계 및 의관 함득일이 가져온 회답서계를 일시에 와서 바쳤기로,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매는 이제 바야흐로 각 고을에 재촉하였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오미자, 맥문동, 자필 등의 물건은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예조의 계목을 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병중에 사용할 오미자 3근, 맥문동 2근 및 예도에서 사용할 극상품의 자필 50자루 등을 속히 무역 허락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한다 하였으며, 문위역관을 호위하여온 차왜 굴성진의 접위관은 도내 수령 중에서 차출하여 정하는 일로 도신(道臣)에게 논보(論報)하고, 예단(禮單)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야 할 것인 바, 무역을 요구한 오미자와 맥문동과 자필 등의 물건은 해조 및 본도에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미수의 매는 본도에 명하여 다시 신칙하여 하여금 재촉해 들여보내도록 하되, 공목(公木)을 쌀과 바꾸는 한 가지 일은 본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좋을 대로 품의하게 하여 조치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정월 11일 동부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2월 초8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2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임자조(壬子條) 부특송사선(副特送使船) 3척이 다대포(多大浦)에 표류하여 정박한 연유는 이미 초1일에 우선 사정을 물어 치계(馳啓)하였거니와, 어제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별차 박재흥(朴再興)에게 명하여 다시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는데, 회언 내에 "세 배에 타고 온 인원과 역할, 선격(船格)과 수는 전날에 사정을 물은 것과 꼭 같이, 정관(正官) 등성구(藤成久)와 부관(副官) 평성우(平成友), 도선주(都船主) 등심창(藤謹昌), 2선주 원정승(源正勝), 유선주(留船主) 평정소(平正昭)라는 이름의 사람 등이며,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에 사례대로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대관 등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예도에서 사용할 약재로, 황금(黃

꼭) 30근, 모과 5근, 황기(黃芪) 30근, 상기생(桑寄生) 5근, 위령선(威靈仙)¹⁵⁵⁾ 10근, 아교(阿膠) 5근, 마황(麻黃)¹⁵⁶⁾ 20근, 산수유(山茱萸) 30근, 백출(白朮) 30근, 백렴(白蘘)¹⁵⁷⁾ 2근 등의 약재를 속히 들여달라'고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약재의 무역 요구가 또한 지루하여 결코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막았더니, 동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약재는 비록 수량이 많으나 도주가 긴요하게 사용할 물건인데 판사 등이 중간에서 방색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아뢰어 기어코 반드시 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거늘, 반복하여 타일러 그 중에서 황금, 황기, 산수유, 백출 등은 각기 20근을 줄이고, 마황은 10근을 줄이고, 상기생은 전 날 무역을 요구할 적에 겨우 반 근을 들어 주었거늘, 이제 또 거듭 청하니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더니, 동왜인 등이 말하기를 '비록 한 근이라도 오히려 색책하겠다'고 간절이 이야기하였다"고 회언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약재 무역의 요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아니하는데, 타일러 수량을 줄여도 그 수량이 오히려 많아서, 비록 일체 모두 막을 수는 없어도 또한 반드시 수량대로 구하여 줄 것도 아니니,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예도에서 사용할 약재 황금, 황기, 위령선, 마황, 산수유, 백출 각 10근, 아교, 모과 각 5근, 백렴 2근, 상기생 1근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바, 황금 등 9종은 모두 얻기 어려운 약재가 아니고 또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니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상기생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나 이는 희귀한 약재라서 맞추어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1근 중 절반으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12년(1673) 2월 초9일 우승지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55) 위령선(威靈仙):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초 으아리의 뿌리. 풍습을 제거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사용한다.

156) 마황(麻黃): 마황과에 속하는 상록 관목. 줄기를 해열제로 사용한다.

157) 백렴(白蘘): 낙엽 덩굴 나무 가위톱의 뿌리. 학질(瘡疾)이나 창독(瘡毒)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계축 4월 초2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3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5일 아침에 왜의 분간하지 못한 배 한 척이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 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사유와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차왜 및 대관 등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중에는 별로 다른 사정은 없다’고 하였으며, 대관 등의 말이 ‘이제 이번 비선에 온 봉행 등의 사신에는,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려고, 산 피꼬리 암수 각 5마리를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와서 말하였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 요구하는 산 피꼬리는, 다만 철이 조금 빠르고 피꼬리의 암수를 또한 변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철이 조금 이르고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지마는, 도중에서 이렇게 구하니 암수 간에 그 때를 기다려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달라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였으며, 노인 하나를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하였기로, 동 노인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무역을 요구하는 산 피꼬리는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제 동래부사 이하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산 피꼬리 암수 각 5마리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 하였다고 하는데, 이전부터 산 피꼬리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전대로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구해주라는 뜻으로 행회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4월 초2일 우승지 신 안(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4월 초7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28일에 나온 왜선 2척 및 29일에 돌아들어간 만소오잉송사(萬松院送使)가 탄 배가 모두 다대포에 표류 정박하여 관소(館所)로 끌어 왔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박

유년(朴有年)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임자조 만쇼오잉〔萬松院〕, 디아라노 요시마사 송사선〔平義眞送使船〕 2척이 격왜(格倭) 40명을 갖추고 노인을 가지고 돌아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관수왜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온 사신을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녹두가루 200근, 올이 가늘고 품질이 좋은 흰모시베 80필, 호두골(虎頭骨) 이빨과 턱이 하나도 파손되지 않은 것 8부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되, 이전에 무역을 요구한 녹두가루는 다른 가루와 섞여서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정결한 가루로 무역해달라고 하며, 흰모시베 또한 좋은 것을 골라 들여주고, 호두골은 극히 긴급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오늘 중에 들여 주어 도중에서 책망하는 걱정이 없게 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여러 가지 무역 요구가 이전보다 빈번할 뿐 아니라, 녹두가루는 전의 요구를 겨우 마쳤는데 또 200근이나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일이 매우 무리하며, 흰모시베만 하더라도 그 수량이 과다하고, 호두골은 범을 잡기가 쉽지 않아 또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빈번하여 불가한 줄 알지마는 모두 부득이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니 막지 말고 동래영감에게 잘 아뢰어 달라’ 하거늘, 다시 ‘수량이 많아서 결코 그대로 무역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굳게 막았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무릇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면 매양 수량을 줄여 다시 요구하는 폐단을 가져오니 참으로 민망하거니와, 판사 등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니 녹두가루는 50근을 줄이고, 흰모시베는 30필을 줄이고, 호두골은 3부를 줄이겠으니, 그 나머지는 극도로 가려서 속히 들여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 하였으며, 동 왜선 등은 그 정관(正官)이 돌아 들어간 뒤에 나왔는데 이는 규정 밖이기로 대관왜 등에게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말로 책망하고 노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회언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무역을 요구하는 녹두가루, 흰모시베, 호두골 등의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하의 장계를 보니 녹두가루 150근, 흰모시베 50필, 호두골 5부의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전부터 이런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제 이 녹두가루, 흰모시베, 호두골을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4월 초7일 우승지 신 안(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5월 초5일

동래부사 이하(李夏)의 장계.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한 척이 이 달 27일 나왔다.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박유년(朴有年)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동 선박의 동정은 어제와 같고, 사정에는 차이가 없으며, 대관 등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예도에서 구하는 대금선(大金線) 각색 대단(大緞) 각 20필, 선단(緞緞) 10필, 주사(注紗)·화사주(花絲紬) 각 100필, 각색 대사(大紗) 30필, 대홍전(大紅氈) 100냥, 극히 가는 생모시베[極細生苧布] 40필, 상상품의 각색 대나무 황모필 700자루, 각양 큰 참먹 700홀, 중앙피(中羊皮) 500령, 마성(馬省) 100개, 소유지(小油紙) 15권, 우산지(雨傘紙) 50권, 녹두가루 200근, 미선(尾扇) 100자루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 보내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감감 전에 잘 아뢰어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보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하는 청이 빈번하여 일이 지루하고 그 수량 또한 많아서 감히 번거롭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다투어 따졌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전에는 도주가 정례로 초여름에 예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잡물을 다 수 무역하여 예도의 여러 집정 등에게 뇌물로 사용하였는데, 금년에는 예도의 분부로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도주의 도리로는 인사를 온전히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집정 등이 이런 간절한 요구가 있기에, 종종 번거롭게 하는 것이 불가한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형편이 부득이하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공 등이 말하는 바가 비록 이러하나, 중국 물건은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소산은 혹 고할 수도 있으나, 그 중에 녹두가루는 무역 요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철이 어긋났으며, 붓과 먹과 마성만 하더라도 무역을 허락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곧장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일이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전날에 무역하여 보낸 붓은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참먹은 아래 한 치는 비록 유매(油煤)라도 그 위는 송연(松煙)¹⁵⁸을 섞었으며, 마성은 그 수량이 부족하며, 또한 대단(大緞) 등의 물건은 비록 중국 물건이라고는 하나 전에도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이 있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라 운운’하였는데, 소인 등이 시종 다투고 고집하여, 대단, 금선, 선단, 주사, 화사주, 녹두가루 등은 타일러서 모두 막았고, 중앙피, 홍전, 붓과 먹, 우

158) 송연(松煙):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 먹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산지는 반감하였으며, 이른바 각색 대나무의 상필(上筆)이라 하는 것은 곧 용편·반죽·화룡필이라 하며, 그 나머지 가는 생모시베[生細苧布], 마성, 소유지(小油紙), 미선은 수량을 줄이지 못했다”고 회언하였으며, 금도왜(禁徒倭)의 배 또한 관소로 돌아들어왔다고 치통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극도로 빈번하고 수량과 종류 또한 많은데, 중국 물건은 비록 모두 전부 막았지만, 그 나머지 줄이지 못한 것이 또 많아 일일이 부응할 필요는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하게 하여 처리할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제 동래부사 이하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가운데 필단 및 녹두가루 등의 물건은 타일러 전부 막고, 그 가운데 양피, 홍전, 붓과 먹, 우산지는 반으로 줄였고, 그 나머지 생모시베, 마성, 소유지, 미선은 수량을 줄이지 못했다고 하는바,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전후로 계속되어 모조리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그 원하는 것을 반으로 줄인다 하였으니, 마성 100개, 소유지 15권, 미선 100자루, 우산지 20권은 본도 및 전라도의 산출되는 각 관에 명하여 수량에 맞추어 분정하게 하고, 양피 250령과 홍전 40냥과 삼색 대나무 황모필 300자루와 참떡 300홀과 가는 생모시베 40필 등은 해조에 명하여 사들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5월 11일 동부승지 신 최(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9월 12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초7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5일 아침에 왜의 분간하지 못한 배 4척이 물마루에 나왔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제1척은 임자조(壬子條) 겸대(兼帶) 세견(歲遣) 제11선, 제2척은 동년조 세견 제12선, 제3척은 동년조 부특송 2호선, 제4척은 동 특송수목선(特送水木船) 등으로 각기 노인을 가졌는데, 부특송 2호선 및 수목선은 일찍이 나왔다가 이제 또 거듭 왔기에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 등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였으며, 제5척은 비선(飛船)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 많기로 급속히 무역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수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갔더니 관수왜가 도중에서 온 사신을 내어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잣 40섬, 대추 큰 것 5섬, 마른 대구 2,000마리, 담비가죽(貂皮) 50령, 산서피(山鼠皮) 150령, 노랑개가죽(黃狗皮) 150령 등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빈번할 뿐 아니라 물종도 너무 많고, 수량 또한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대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이 어긋나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결코 감히 고할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왜인이 말하기를 '매양 번거롭게 하여 불가한 줄 잘 알지마는, 이는 도주가 사사로이 쓰는 데 견줄 것이 아니고 모두 집정이 요구하는 것이라, 도주된 도리에 있어서는 힘을 다하여 부응해주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비선을 보냈으니, 동래영감에게 잘 아뢰어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되, 이른바 철이 어긋났다는 것은 대구 뿐이고, 이는 새로 산출될 시기가 가까이 있으니, 비록 혹 조금 늦추더라도 그중 다른 물건은 반드시 좋은 품질로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램에 부응해 달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여 간청하여 마지않기에, 사정을 묻는 것이 급하기에 먼저 와서 고하고, 무역을 요구하는 물목은 추가로 다시 다투고 따져서 수량을 감소할 계획이며, 노인 3개를 가져다 드린다"고 회언하였기로, 동 노인을 받아 올리며, 규정 외의 배는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할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즉각 훈도 박재흥(朴再興) 등이 와서 고하는데, "어제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그 수량이 매우 많았기로, 사정을 물은 뒤에 다시 왜관으로 가서 십분 다투어 따져, 잣 40섬 중 20섬을 줄이고, 산 고니〔活鶴〕 6마리 내 2마리를 줄이고, 대구 2,000마리 중 500마리를 줄이고, 웅담(熊膽) 및 피물(皮物) 등은 끝내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수량과 종류가 이렇게 과다한데도 공 등은 비록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나, 수량에 맞추어 부응을 허락할 리가 만무하니 이 뜻을 알아듣는 것이 옳다'고 하였더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이는 에도의 집정이 간절하게 찾는 물건이고, 종전의 무역 요구에도 매양 수량을 줄였기 때문에 두루 사용하지 못하여 다시 무역을 요구하는 지경이 되니,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 또한 그냥 주는 물건도 아니니, 이번에는 모름지기 맞추어 부응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와서 고하였음.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 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잣 20섬, 대구 1500마리, 웅담 16부, 노랑개가죽 150령, 청서피 40령, 자필 100자루를 속히 무역 요구하여 달라 하였다는바,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량이 매우 많기에, 잣 20섬 중 5섬을 줄이고, 대구 1,500마리 중에서 500마리를 줄이고, 웅담 16부 중에서 6부를 줄이고, 그 나머지 황구피 150령, 살아있는 고니 4마리, 대추 5섬, 담비가죽 50령, 산서피 150령, 청서피 40령, 자필 100자루 등의 물건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9월 13일 우부승지 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10월 16일

동래부사 이하가 이 달 11일 성첩한 장계. 이 달 초9일 아침에 왜의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제1척은 계축조(癸丑條)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선(平義眞送使船) 정관 평성향(平成鄉), 제2척은 임자조(壬子條) 겸대세견(兼帶歲遣) 제15선, 제3척은 동년조 겸대세견 제17선, 제4척은 계축조 세견 제3선인데, 전날에는 대관(代官) 중에 공작미(公作米)를 빌려 신고 들어갔다가, 그 정관(正官)이 타고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정관이 전에 이미 들어갔으니 이는 규정 외에 해당하므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관수왜 및 차왜 평성령(平成令) 등이 소인 등을 만나볼 것을 요구하여 말하기를, ‘도주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린 말을 간절하게 구하는데, 붉거나 검거나 간에 순색의 골격이 준수한 말로서 서너 살이 되는 것 한 필을, 동래영감 전에 잘 아뢰어 무역을 허락하여 간절한 바램에 부응하되, 이는 정례에 따른 무역 요구와는 다름이 있으니 바라건대 속히 구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동 무역을 요구한 말에 대하여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말의 무역을 요구할 때 이미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본도에 명하여 전례대로 구해 줌이 마땅한데 이렇

게 알림이 어떠할지. 강희 12년(1673) 10월 17일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 12월 23일

동래부사 이하(李夏)가 이 달 17일 성첩한 장계. 이 달 15일 아침 분간되지 않는 왜선 한 척이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별차 박유년(朴有年)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도중의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신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도주가 내년 2월 초에 에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사용할 녹두가루 300근, 대편석린(大片石鱗) 5근을 속히 무역 요구하며, 전에 일찍이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도주가 발행하기 전에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영감 전에 아뢰어 급급히 독촉하여 받아서 금년 내로 들여주어야 도주의 행차에 미칠 수 있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전에 무역을 요구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약간의 물건은 재촉하여야 하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각 지방에서 와서 들여주는데는 필시 여러 날이 허비될 것이니, 세전에 맞추어 받는 것은 형편이 미칠 수 없으며, 이제 이번 녹두가루는 그 수량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지금은 제 철이 아니라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그렇다면 비록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때를 기다려 무역하여 보내겠다는 뜻으로 회보하겠거니와, 내년 2월에 가서는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며, 석린(石鱗) 및 전에 무역을 요구한 잡물은 반드시 내년 정월 초순 전에 들여 달라’고 중언부언 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타일러서, 녹두가루 300근 중에 50근을 줄이고, 석린 5근 중 3근을 줄였으며, 노인 하나를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하였기로,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며, 무역을 요구한 녹두가루, 석린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에도에서 사용할 녹두가루 250근, 대편석린 2근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거니와, 석린 2편은 원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녹두가

루 250근 중 50근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해서(海西) 및 본도에 아울러 급속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3년(1674) 정월 초7일 우승지 신정(鄭)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이것은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닌데 줄인 데다 또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장계대로 진작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교하였음.

갑인(1674) 9월 초5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¹⁵⁹이 8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8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의 배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안신휘(安愼徽)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 및 교대차로 오는 응사왜(鷹師倭) 2인, 격왜(格倭)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중에서 급히 긴급하게 사용한다고, 인삼 100근, 붉은개가죽[赤犬皮] 200령, 녹두가루, 호두, 잣 등 무역할 물건의 발기를 내어보여주는데, 대관왜 등이 곁에서 ‘이것은 속히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힘써 말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국휼(國恤)¹⁶⁰을 당하여 상하 백성들이 모두들 분주하며 망극하거늘, 이런 요청을 어찌 감히 동래 부산 두영감 전에 품의하겠는가?’ 하고 이치에 근거하여 말로 책망하여 지금은 짐짓 막았으며, 노인 하나를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하였기로, 받아서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나라에 큰 상을 당하여 위 아래 사람들이 슬프고 황급한 날 허다한 무역 요청은 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십분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하였는데, 역관 등의 수본 내에, 도중에서 무역을 요구하는 5종 등의 물건은 끝내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다시 왜관에 가서 이미 막았다고 수본하였기에,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159) 어진익(魚震翼, 1625-1684): 자는 익지(翼之), 호는 겸재(謙齋), 본관은 함중(咸從)으로, 판관 한명(漢明)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과 지평을 거쳐 벼슬이 호조참의와 승지에 이르렀다.

160) 국휼(國恤): 국가의 중대한 초상. 이 때는 현종이 승하하였다.

갑인 11월 초10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초9일 성첩한 장계. 이 달 초1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은 왜선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 이상훈(李相勛)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안신휘(安愼徽)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오로지 무역요구를 위해 나왔다고’ 하기로, 그대로 대관왜에게 가서 그 무역 요구하는 물종을 물었더니, 동 대관왜 등이 2장의 발기를 내어보여주는데, 한 장에는 밀랍[黃蠟] 800근, 새끼양가죽[兒羊皮] 200령, 붉은개가죽[赤犬皮] 300령, 『오경대전(五經大全)』 각 2질이고, 한 장에는 웅담(熊膽) 15부, 참먹[眞墨] 30동, 황모필 1,000자루이거늘, 소인 등이 대관에 등에게 말하기를, ‘이번 국홀을 당한 때에 온 나라가 분주하여 물력이 바닥났는데, 이러한 무역의 요청은 결코 부응하기가 어려우며, 그 중 양가죽[羊皮]은 더욱이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도중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예도의 집정 등이 도주에게 간청한 물건인지라 예도에서 비선을 보내왔으니, 이 물건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불가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밀랍[黃蠟]과 양가죽[羊皮], 붉은개가죽[赤犬皮] 등의 물건이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비록 예도에서의 구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평상시와 다른데, 공 등은 어찌 말을 하여 막을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귀국의 사정을 모르지 않지마는 예도의 청 또한 괘시할 수 없다’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또 이번의 물종은 그 수량이 극히 많아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십분 다투어 고집하여, 『오경대전(五經大全)』, 웅담, 참먹, 황모필 등의 물건은 전량 막았으며, 붉은개가죽, 양가죽 등의 물건도 반으로 줄였으나, 밀랍은 끝내 감량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 말하기를 ‘이 물종은 세전에 미쳐 반드시 내려보라는 뜻으로 간곡하게 동래영감 앞에 아뢰어 지연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을 하여 마지않았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회언하였기에,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국홀을 당한 당초에 일찍이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있었으나 전량 막았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이 또 이렇게 번다하나 또한 모두 전연 막기는 어렵기로, 그 중에서 『오경대전』,

웅담, 붓과 먹 등의 물건은 이미 타일러 줄여 없애고, 붉은개가죽과 양가죽 등은 그 수량을 반으로 줄였으며, 밀랍은 끝내 수량을 줄이지 못했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하게 하여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비선 한 척이 무역하는 일로 나왔기에 그 무역할 물종을 물었더니 2장의 발기를 내어보이는데, 하나는 밀랍, 새끼양가죽, 붉은개가죽, 『오경대전』이고, 하나는 웅담, 참떡, 황필이거늘, 역관 등이 말을 하여 대관왜 등에게 타일러 『오경대전』, 웅담, 참떡, 황필은 전량 막고, 붉은개가죽, 양가죽 등의 물건 또한 반으로 줄였으며, 밀랍은 끝내 가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던 바, 교활한 왜인이 무릇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반드시 에도에다 무게를 돌리는 것은 그들의 계획을 이루고자 함인데, 이번에 요구하는 바가 비록 과연 에도의 청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요구하는 물건을 혹은 전량 막고 혹은 반을 줄여 없었으나, 밀랍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량대로 사들이려 한다 하였고, 붉은개가죽과 양가죽 등의 물건은 전에도 무역을 허락할 때가 있었으니 이미 반감하였다면 전례 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밀랍만은 800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역시 말을 하여 줄이고 그 중 이삼백 근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3년(1674) 11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인 11월 29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11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계하(啓下) 관문에, “해당 왜인이 무역 요구한 물종 중에서 『오경대전』, 웅담, 황필, 참떡은 전량을 막고, 붉은개가죽, 양가죽 등의 물건은 반으로 감하며, 밀랍은 끝내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붉은개가죽과 양가죽 등의 물건은 전에도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고 이미 반으로 줄였으니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밀랍 800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말을 하여 줄이고 그 중 이삼백근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다는 일”이라 하였기에, 관문에 근거하여 역관 등을 신칙하여 다시 타일러 그 밀랍의 수량을 줄이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안신휘(安愼徽) 등의 수본 내에, “소인 등이 가서 대관(代官) 등을 만나보고,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밀랍 800근은 수량에 맞

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놓아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예도에서 사용할 물건인데, 당초 물종을 태반이나 줄인 뒤에 이렇게 얻기 쉬운 물건을 또 줄인다면, 먼 곳의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너무 박절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형편이 비록 매우 민망하고 절박하나, 밀랍의 수량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200근은 줄여 저희들이 사사로이 무역하여 수량을 채우겠거니와, 그 나머지 600근은 결코 수량을 줄여서는 안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때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기로, 연유를 수분으로 한다"고 수분하였음. 이제 이번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수량과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혹은 전량 줄이고 혹은 반으로 줄였는데, 그 중 밀랍은 저들의 요구가 매우 간절하여 끝내 수량을 줄이지 않기에, 다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200근은 이미 수량을 줄였다 하는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당초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인의 무역을 요구한 물종 가운데 적견피, 양피 등의 물건은 반으로 줄였고, 밀랍 800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또한 말을 하여 그 중 이삼백 근의 무역을 허락한다고 전에 이미 분부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밀랍 200근은 이미 말을 하여 수량을 줄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이라고 또 치계하였는바, 이미 본조의 회이(回移)로 인하여 그 중 200근을 줄였으니, 이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3년(1674) 11월 30일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묘(1675) 4월 초8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3월 29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계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안신휘(安愼徽)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저희들은 오로지 무역을 요구하는 일로 나왔는데, 도주는 지난 2월 28일에 동무(東武)에서 떠났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상세히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

기를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올 기일이 4월 보름께에 있을 터인데, 도중의 사신을 얻어 보니,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을 급속히 무역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하며, 대관왜 등 10여인이 한 곳에 있으면서 소인 등을 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 비선이 나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은 시급하게 사용할 것이므로 두왜를 보내었다'고 하며 무역 요구 받기를 내어보여주거늘, 받기를 가져다 보니 백세저포(白細苧布) 60필, 생모시베[生苧布] 50필, 청서피(靑鼠皮) 100령, 담비가죽[貂皮] 100령, 녹두가루 500근, 양가죽 700령, 각색 대사(大紗) 30필, 대금선(大金線) 50필, 웅담 15부, 황모필 300자루, 대절참떡 50동, 잣 20섬, 대추 5섬, 마른 대구 2,000마리, 산서피(山鼠皮) 300령, 마성(馬省) 150개, 홍전(紅氈) 100냥, 산 담비[活貂] 2마리, 산 노루[活獐] 2마리 등의 물건이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을 요구하는 물종이 이렇게 수량이 많은데, 그 중 중국 물건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도주가 돌아오면 쓸 곳이 너무 많은데, 일찍이 전에도 무역 요구가 간혹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제 수량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도주가 귀국에게 바라는 본뜻이 아니다. 또한 중국 물건의 무역 허락은 또한 그 사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방색함은 얼마나 박절한 것인가?' 하기에,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른바 대금선, 대사, 양피, 홍전 등의 물건은 이미 중국 물건인데다가 근래에는 전혀 없는 형편임은 공 등이 다 아는 바이고, 산 노루와 산 담비는 사로잡기가 쉽지 않으며, 그 밖의 잡물 또한 맞추어 부응하기가 어렵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분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금선, 대사, 산 담비, 산 노루 등의 물건은 전량 막았고, 흰모시베, 청서피, 담비가죽, 잣 등의 물건은 각기 반으로 줄였으며, 생모시베 50필 중 30필은 줄이고, 양가죽 700령 중 300령을 줄이고, 대추 5섬 중 2섬을 줄이고, 대구 2,000마리 중 1,300마리를 줄이고, 산서피 300령 중에서 100령을 줄이고, 마성 150개 중에서 50개를 줄이고, 홍전 100냥 가운데 80냥을 줄였는데, 그 중 녹두가루, 웅담, 황모필, 대절참떡 등의 물건을 수를 줄이지 못하였거니와, 대관왜 등이 중언부언하고 간혹 성을 내어 말하기를, '중전의 무역 요구에도 대양 수량을 줄인 일이 매우 민망하였는데, 이제 이번 물종은 반으로 줄인 가운데 또 수량을 줄이는 폐단이 있어서 필시 도중에서 문책을 받을 것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4월 보름 이전에 미칠 수 있도록 속히 무역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친

다”고 회언하였기로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올려 보내며,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 혹은 전량 줄이고 혹은 반으로 줄인 것이 있으나, 그 중 줄이지 못한 물종은 또한 일일이 막기는 어렵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동래부사 어진익의 장계에 대마도의 비선이 나와서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발기를 가져다 보니 백세저포 60필, 생세저포 50필, 청서피와 담비가죽 각 100령, 녹두가루 500근, 양가죽 700령, 각색 대사 30필, 대선금 50필, 곰가죽[熊皮] 15부, 황모필 300자루, 대절참먹 50동, 잣 20섬, 대추 5섬, 대구 2,000마리, 산서피 300령, 마성 150개, 홍전 100냥, 살아있는 담비[活貂] 2마리, 살아 있는 노루[活獐] 2마리 등의 물건을 역관 등이 십분 다투어 고집하여, 금선, 대사, 산 담비, 산 노루 등의 물건은 전량을 막고, 흰모시베, 청서피, 잣 등의 물건은 각기 반으로 줄이고, 생모시베 50필 중 30필을 줄이고, 양가죽 700령 중 300령을 줄이고, 대추 5섬 중 2섬을 줄이고, 대구 2,000마리 중 1,300마리를 줄이고, 산서피 300령 가운데 100령을 줄이고, 마성 150개 중에서 50개를 줄이고, 홍전 100냥 가운데 80냥을 줄이고, 녹두가루와 웅담, 황모필, 대절참먹은 전혀 줄이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전부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종이 많고 수량이 많기로는 이와 같은 적이 없었으니, 역관들이 비록 줄였다고는 하나 줄이지 못한 수량 또한 너무 많아서, 장차 수량을 줄인 가운데 두 가지 모시베와 청서피, 담비가죽, 산서피, 잣, 대추, 마성, 대구 등 9종은 그대로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며, 그 중에 양가죽, 홍전은 본디 토산이 아니고 본디 중국 물건인데, 종전에 비록 간혹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더라도 근래에 이 물건이 희귀하여 구하기가 쉽지 아니하니,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며, 그 나머지 녹두가루, 웅담, 붓과 먹은 수량대로 맞추어 부응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14년(1675) 초9일 동부승지 조위명(趙威明)¹⁶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61) 조위명(趙威明, 1640-1685): 자는 회여(晦汝), 호는 송천(松泉),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구(綏)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와 대사간을 거쳐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예론에 밝고 글씨에 능하였다.

을묘 4월 24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1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계하 관문에 운운하였기에, 관문에 근거하여 동 양가죽[羊皮], 홍전(紅氈) 두 가지는 다시 타일러 기어코 전부 막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하였더니, 방금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안신회(安愼徽) 등의 수본에, “소인 등이 대관왜 등을 만나보고 예조 관문의 사연으로 십분 타일렀더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도중에서 절박한 용도가 있어서거니와, 양가죽과 홍전 역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닌데도 이제 줄이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러우나, 이미 해조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전량을 줄이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무역을 허락한 물종만은 이 달 그믐 전일까지 속히 들여 주어서 도주가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다”고 수본하였다는 일임.

을묘 8월 22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14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2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2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卞爾標)와 별차 안신회(安愼徽)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제 1척은 을묘조(乙卯條) 도서(圖書)를 받은 만쇼오잉송사[萬松院送使] 정관 등중정(藤重正), 도선주 곽승용(曺勝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수목선으로 격왜 15명 등이 사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수왜 및 대관왜 등의 말이, ‘전날에 도주가 나올 당초에 예도의 집정 등에게 뇌물로 사용할 잡물의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십분 간청하였는데, 근래에 들여보내는 물건은 품질이 매우 저열하고 수량 또한 부족하며, 그 중에 흰모시베와 생모시베는 더욱 심하여, 울이 거칠어 선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을 책망하여 일이 매우 민망하니, 동 흰모시베 30필, 생모시베 20필은 울이 가는 것으로 극도로 가려서 무역을 허락하며, 대사(大紗) 30필, 산서피(山鼠皮) 200령, 『춘추대전(春秋大全)』 1질, 호두 50섬, 녹두가루 500근, 양가죽 200령, 황모필 200자루, 대절참떡 70동, 잣 30섬 등의 물건을 수량에 맞

추어 무역을 허락하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생모시베와 흰모시베는 이제 이미 철이 지났을 뿐 아니라, 전에도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것이 또한 수량이 많고, 대사 및 양가죽은 중국물건인 관계로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춘추』는 판본이 산실되었으며, 산서피, 호두, 녹두가루 등의 물건은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기에 이제 계속하여 번거롭게 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붓과 먹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근래에 희귀하여 또한 그대로 부응하기가 어려우며, 잣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량이 많아서 는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심분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본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응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닌데, 판사 등이 매양 틀어막기를 능사로 하니 도주의 소망이 아주 매우 허전할 것이니, 위의 물건 가운데 대사, 산서피, 『춘추대전』, 호두, 녹두가루 등의 물건은 비록 무역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 6종은 반을 줄여 생모시베 10필, 흰모시베 15필, 양가죽 100령, 잣 15섬, 황모필 100자루, 참떡 35동은 시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고, 흰모시베, 생모시베는 쓸 곳이 긴급하니 반드시 다음달 내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주되, 값은 헤아리지 말고 극상품을 가려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다" 회언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 무역을 요구한 물종은 그 수가 번다한데 5종은 전량 막고 6종은 그 수량을 반으로 줄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가운데 대사, 산서피, 『춘추대전』, 호두 등의 물건은 역관 등이 이미 전량을 막았고, 생모시베 20필, 흰모시베 30필, 양가죽 200령, 황모필 200자루, 대절참떡 70동, 잣 30섬 등의 물건은 반으로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였는바, 근래에 무역 요구의 청이 빈번하여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원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14년(1674) 8월 23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묘 11월 27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21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8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은 왜선 3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 이상훈(李相勛)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내에, “제1척은 을묘조(乙卯條) 부특송(副特送) 1호선 정관 굴성구(橘成久)와 부관 굴성창(橘成昌), 도선주 등원창(藤元昌) 등이고, 제2척은 2호선인데 2선주 굴위원(橘爲元), 유선주(留船主) 굴성리(橘成里) 등이며, 제3척은 수목선인데 격왜 20명 등이 사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대관 등의 말이, ‘도주가 명년 봄에 에도로 들어가서 집정 등에게 선물로 사용할 것이 많은데, 근래에 귀국에서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은 전에 비하여 품질이 열등할 뿐 아니라, 무릇 무역을 허락함에도 한결같이 막았더니 매우 민망하며, 이제 이번에 구하는 물건은 더욱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받기를 내어보이는데, 녹두가루 300근, 붉은개가죽 100령, 운암지(雲暗紙) 10권, 도화지(桃花紙) 10권, 황국지(黃菊紙) 5권, 마른 대구 1,000마리이온바, ‘이는 전량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녹두가루는 이제 철이 지나서 무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성을 내고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제 이번 몇 종의 물건은 에도에서 사용하는 데 긴급하고, 귀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거늘 이렇게 방색하는 것은 아주 매우 타당치 못하다’고 운운 하여, 한나절을 다투어 고집하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기로, 이제 겨우 파하고 나왔다”고 회언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이제 이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수량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녹두가루는 이렇게 철이 지나 구해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대구만 하더라도 그 수량이 천 마리나 되어서 또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기는 불가하겠기로, 다시 역관에게 신척하여 기어코 수량을 줄이라고 하였더니, 방금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이 와서 아뢰기를 “녹두가루와 대구는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다시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대구 1,000마리 가운데 300마리를 줄였다 하는데, 녹두가루는 이제 철이 지나 부응하기가 어렵다면 내년 2월 사이에 수량에 맞추어 구해주어서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기 전에 미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와서 고하였음. 대구는 이미 그 300마리를 줄였고, 그 밖의 물종 또한 일일이 막기는 어렵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청하는 녹두가루 300근, 적견피 100령, 운암지 10권, 황국지 5권, 도화지 10권, 마른 대구 700마리 등의 물건의 무역을 요구한다 하였는바, 무역을 요구한 물중 중 삼색지는 요구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녹두가루, 붉은개가죽, 마른 대구 등은 그 수가 과다하니, 녹두가루 300근 중 100근을 줄이고, 붉은개가죽 100령 가운데 50령을 줄이고, 마른 대구 700마리 중 200마리를 줄여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4년(1674) 11월 29일 좌부승지 신 이동규(李同揆)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시행함.

병진 정월 초10일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이(李)가 초3일 성첩한 장계. 이 달 초2일 아침에 왜의 분간되지 않은 배 3척이 나오기에, 다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1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 한시열(韓時說)과 김진하(金振夏) 등이 탄 배로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왜선 2척 중 제1척은 차왜 굴성진(橋成陳)이 문위역관 호송을 위해 서계별폭(書契別幅)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갑인조(甲寅條) 세견(歲遣) 제6선인데 격왜 30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중에서 시급히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300개의 파리채(蠅鞭)를 만드는 데 들어갈 만한 백마 갈기를 이달 보름 전에 맞추어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여 광채를 내도록 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라’고 운운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무역을 요구한 백마 갈기는 그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무릇 무역 요구에 관계되는 물건은 본부에서 첩보로 예조에 알리면, 예조에서 순영(巡營)으로 분부하고 각관에 행회한 다음에 사들여 가지고 와서 본부에 들이고 있는데, 공문서가 오가는 도중에 걸핏하면 열흘이나 달포 가량 경과하니, 비록 허락하려 해도 어떻게 한 보름 내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운운할 즈음에, 동 왜인 등이 손을 내저으며 말하기를, ‘판사 등은 쓸데없이 막지 말고 곧바로 동래영감 전에 아뢰어 달라’고 운운하여 그대로 파하고 나왔으며, 가져온 서계 등본 및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이는 일’이라고 회언하였기로, 동 서계 등본 및 노인을 받아 동래로 보낸 일임.

병진 정월 25일

예조에서 상고한 일. 본부(本府)의 서장(書狀)으로 말미암은 비국(備局)의 복계(覆啓)임. 문위역관을 호송한 차왜 굴성진(橋成陳)의 인원과 잡역부 등에게는 이전대로 하고, 시봉(侍奉) 압물(押物) 각 1인과 반종(伴從) 10명에게 3번의 연례단자(宴禮單子)를 마련하여 계하였거니와, 동 장계 중에 데려온 인원의 다소를 거론하지 않아서 상세하게 알 수 없으니 상세히, 구별한 첩보를 올려 접대할 수 있도록 하며, 좌수사의 장계 중에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파리채 30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갈 만한 백마 갈기를 이달 보름 전까지 급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일로 치계하였는데, 본부의 장계에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며, 훈도와 별차 등이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의 사례는 본부의 치계가 있는 연후에 본조에서 무역을 허락하는데, 다시 상세히 장계로 알려서 무역을 허락하도록 할 것. 동래로.

병진 2월 15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이 달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5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은 왜선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 이상훈(李相勛)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지난 정월 10일에 들어간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신 중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니, 전날에 무역을 허락하였던 붉은개가죽, 색종이, 마른 대구 등의 물건을 용처가 긴 급하여 즉시 들여보내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의학정전(醫學正傳)』, 『화제국방(和劑局方)』 각 1질 및 녹용(鹿茸) 5냥, 약삼(藥蔘) 50근 등의 물건을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진작 무역 요구한다는 뜻을 서찰 가운데 누누이 말하였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무릇 서책을 새기고 인쇄하여 내는 일에는 동 판자(板子)를 즉시 철거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쇄해 내는 데는 그 형편이 어려우며, 인삼 50근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 맞추어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책관을 인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여러 질로 묶은 책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인삼은 약으로 사용하는 물건인데 어찌 하여 이렇게 방색하는지? 50근의 무역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다면 20근을 우선 무역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다음 달 보름 이전에 미칠 수 있게 하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고 회언하였기로, 동 노인을 받아 올리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며, 이번의 무역 요구는 어려운 물건이 아닌 듯하여, 또한 일일이 막기는 어렵겠는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도 중에서 무역을 요구하는 『동의보감』, 『의림촬요』, 『의학정전』, 『화제국방』 각 1질 및 녹용 5냥, 약삼 50근 등의 물건을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곧장 무역을 허락해 달라 하였으며, 그 중 인삼은 그 수가 너무 많아 맞추어 부응하기 어려우면 20근을 우선 무역하여 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왜인의 무역 요구가 근래에 매우 첩첩한데 이제 이번에 구하는 것은 원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닌지라 막을 필요가 없으니, 각양 물종을 해조와 의사(醫司) 및 본도에 명하여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5년(1674) 2월 15일 동부승지 신 김덕원(金德遠)¹⁶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진 2월 25일

예조에서 상고한 일. 방금 바친 혜민서(惠民署)의 첩정(牒呈)에 근거하여 왜인이 구청한 『화제국방(和濟局方)』은 여러 번 변란을 겪은 뒤로 전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또한 사용할 만한 곳도 없어서 과장(科場)에서 영구히 없애버렸기로 사대부 집안 및 있을 만한 곳에서 널리 구하여 값을 주고 찾아도 결코 구할 길이 없다고 양 의사(醫司)에서 이렇게 첩보하니, 비록 이미 계하하였지만 이 뜻으로 역관 등에게 관수왜를 타일러 기어코 막으라는 일로 거듭 밝혀 분부 시행하시기를. 동래로.

162) 김덕원(金德遠, 1634-1704): 자는 자장(子長)이며 호는 휴곡(休谷), 본관은 원주(原州)로, 판관 인문(仁文)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판서, 우의정에 이르렀다.

병진 7월 초1일

동래부사 어진익(魚震翼)이 6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2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은 왜선 7척이 물마루에 나온다는 부산참사 박문서(朴文瑞)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다. 회언 내에 “제1척은 갑인조(甲寅條) 겸대(兼帶) 2특송 1호선이고, 제2척은 동 특송 제2호선이고, 제3척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4선이고, 제4척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5선이고, 제5척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6선이고, 제6척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7선인데, 격왜 20명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 중 갑인조 겸대 2특송 1호선과 2호선, 제14선, 제15선 등 4척은 거둬 나왔는데, 이는 규정 밖이므로 속히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말로 책망하고 노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제7척은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9명, 의왜 1인 등이 함께 타고서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도주가 긴요하게 구하는 물건이 있어서 관수 및 대관 등에게 보내는 사신을 가지고 왔다’ 하거늘, 관수 및 대관왜에게 사신 중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극상품의 올이 가는 생모시베 20필, 올이 가는 흰모시베 30필, 마른 대구 500마리, 자필(咨筆) 300자루, 미선(尾扇) 100자루 등의 물건을 도주가 쓸 곳이 있어 긴급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는데, 두 가지 모시베는 지난 해에 무역을 허락한 것이 매우 심하게 올이 거칠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올이 가는 극상품으로 특별히 골라 무역을 허락하면 값은 다소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자필(咨筆)만 하더라도 서계(書契)를 쓰는 데 사용될 것이니 또한 정밀하게 만들어 무역을 허락하며, 위의 각종 물건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다음 달 스무 날 쯤 까지는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을 아뢰어 달라’고 하였으며, 노인 3통을 가져다가 드린다”고 회언하였기에, 동 노인을 받아 올려보내며, 규정 외에 나온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하는 일로 치통함. 규정 외의 배 4척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으로 하여금 엄하게 관수왜 등에게 신칙하였으며, 매년 무역 요구가 이렇게 빈번한데 도주가 긴요하게 사용한다고 값을 따지지 않고 간청하여 마지않는다 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하는 올이가는 생모시베 20필, 올이 가는 흰모시베 30필, 마른 대구 500마리, 자필 300자루, 미선 100자루 등의 물건을 쓸 곳이 긴급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모시베는 반드시 올이 가는 극상품으로 각별히 가려서 무역을 허락하며, 자필은 또한 정밀하게 만들어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였는바, 매년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이렇게 빈번하여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원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5년(1674) 7월 초2일에 우승지 신 정재송(鄭載嵩)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진 8월 11일

동래부사 이복(李馥)이 이 달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2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6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 박문서(朴文瑞)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연 내에 “제1척은 갑인조(甲寅條) 2특송1호선이고, 제2척은 동년조 동 특송2호선이고, 제3척은 동년조 3특송 1호선이고, 제4척은 동년조 동 특송 2호선이고, 제5척은 동년조 동 특송 수목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려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모두 규정 외의 배이기에 관수왜에게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이치에 근거하여 말로 책망하고 노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제6척은 병진조(丙辰條) 도서를 받은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선[平義眞送使船]으로, 1척에는 정관 등리차(藤利次),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40명 등이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도중의 봉행(奉行) 등의 사신에, 도주가 명년 정월에 예도로 들어가는 데, 여러 집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 많은 중에, 호두 100섬, 잣 30섬, 마른 대구 300마리, 대추 10섬 등의 물건을 반드시 금년에 산출된 것으로 사서 들여 달라고 운운하여 이 때문에 왔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호두와 잣이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대구는 겨울철에 잡아서 2, 3월에 말려 사용하는데, 어떻게 정월 전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말을 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대구 금년에 산출된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지난 해 잡은 것 가운데 별레로 손상되지 않은 것 100속을 극상품으로 가려 무역을 허락하며, 호두와 잣과 대추는 반

드시 새로 생산된 것으로 절반을 무역 허락하여 궁색할 염려가 없게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치 앓는다"고 회언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가 가지고 온 서계는 사례대로 다례(茶禮)를 배풀고 나서 받아 올려보낼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에 구하는 물건은 이렇게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대구는 500마리의 무역을 겨우 이미 허락하고 각 고을에 분정하여 미처 맞춰주지 못하고 있거늘, 천 마리의 요청을 또 이럴 즈음에 내는 것은 매우 지루하며, 역관 등이 사정을 묻고 회언한 것이 이러하기로 사유를 갖추어 우리러 진달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 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호두 100섬, 잣 30섬, 마른 대구 300마리, 대추 10섬 등의 물건을 역관 등이 말을 하여 타이름으로 말미암아 대구 100속을 줄여 정하였으며, 호두와 잣과 대추도 또한 절반으로 하였으나, 각종 물건의 수량이 아직도 과다하니, 호두 50섬 중 20섬을 줄이고, 잣 15섬 중에서 5섬을 줄이고, 대추는 그 줄인 수량대로 5섬을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되, 마른 대구는 비록 100속으로 줄여 정하였지마는, 500마리를 이미 겨우 무역 허락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맞추어 허락하는 것이 불가하니, 1000마리 중 500마리를 줄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잘 타이른 뒤에 또한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5년(1676) 8월 11일 좌부승지 신 정창도(丁昌燾)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병진 8월 27일

동래부사 이복(李馥)이 이 달 22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 동래부의 서장에 근거하여 계하(啓下)한 예조의 회계(回啓)에 운운한 일로 내린 관문이 이번 8월 19일에 도부하였거늘, 관문이 도착한 즉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잘 말을 하여 십분 타이르게 하였는데,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양홍도(梁弘度) 등의 수본(手本) 내에, "방금 전령(傳令)에 근거하여 예조의 관문 내용을 대관왜(代官倭)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이전부터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수량을 줄인 뒤에 무역을 허락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여기서 반감하기도 하고 혹

3분의 2를 줄이기도 하였는데, 또 수량을 줄여 아주 매우 민망하다. 그러므로 호두와 잣 등의 물건은 전에도 일찍이 상인이 사사로이 팔려오는 자가 있으면 여기서 사들여 보내더라도, 대구는 100속을 수량에 맞추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반드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여 때를 당하여 궁색한 염려가 없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는다고 운운한 일로 수본 한다" 하였음. 예조의 관문에 근거한 본도 감사의 관문에, "해당 예조의 관문이 있었으니 관문의 사연을 살펴서, 대구 500마리를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음에도 이제 또 무역을 청하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역관이 다시 타일러 기어코 줄여 정한 뒤에 첩보하면, 다른 물종과 일시에 분정하겠다"고 한 관문이 이번 8월 20일에 도부하였거늘, 즉시 또 훈도 등에게 전령하여, 조용히 타일러 기어코 반드시 줄이라고 하였는데, 훈도의 수본 내에, "전령의 내용을 가지고 또 언급하니, 동 왜인 등이 현저히 낙망하는 기색으로 모두들,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어제 이미 다 말하였거니와, 동 대구는 본디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가까운 각 지방 도처에 있는 것이거늘, 이렇게 방색하면 아주 매우 아득하며, 조정에서 이미 그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중에서의 형편 또한 매우 절박하니, 판사는 번거롭다 꺼리지 말고 이 뜻을 다시 동래 영감 전에 아뢰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않는다고 하는 일"로 수본하였음. 도중에서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도수가 너무 빈번하고 물종도 과다하여 매우 지루하다는 뜻은 신이 이 달 초3일의 원 장계에 이미 진달하였거니와, 이제 이번의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관문이 내도한 뒤에, 신이 조정의 명령을 재삼 타이르고 한편으로 그들의 기색을 살펴 그 실정을 헤아려보았더니, 이번의 청은 도주가 내년 봄에 예도에 들어갈 때에 여러 집정 등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거짓은 아닌 듯할 뿐 아니라, 바야흐로 그들이 처음 요구할 즈음에 조금도 위협하는 태도가 없었고, 이제 수를 줄인 이후에 와서도 또한 쾌락하여 함부로 하는 기색이 없는데, 이른바 이렇게 방색하는 것이 아주 매우 아득하다고 하는 말은 실로 한 때 실망한 소치로 나온 것이어서, 못난 부인이나 어리석은 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하여 발설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나, 그러나 말로 하자면 매우 대단한 것이 아니로되,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고급 국가에 이웃나라와 교제하고 적을 막는 방도가 어찌 한정될 것이겠습니까마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은 본디 큰 것에 있지 않아서, 여자가 뽕을 다투는 하찮고 미세한 일이라도 자꾸 쌓이게 되면 끝내 군사를 움직이는 화를 불러오는

것이니, 이제 이 대구 500마리의 증감이 뽕나무를 다루는 일과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이전부터 무역을 요구하면 반드시 수량을 줄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저들의 입에서 발설되었으니, 그들의 교활하고 독한 성품이 겉으로는 잠시 멈칫하더라도 안으로 쌓인 감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무역하는 물건은 일일이 값을 받고 모두 장부에 기록하는 처지이니, 주(周)나라 태왕(太王)이 피폐(皮幣)¹⁶³와 견마(犬馬)를 바친 것과는 또한 천만 다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잘 대우하는 것이 어찌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변방의 신하로서는 사정을 진술하여 품신하고 마는 것이 마땅하고, 이해를 구별하여 계획하는 데는 감히 옳다 그르다 하지 못할 듯하오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신이 본직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의 근심을 절박하게 범하였고, 이 명을 받은 이래로는 더욱 더 믿음을 쌓는 염려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무릇 왜인을 접대하고 변방의 중대한 사무에 수작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지혜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이, 맡기신 바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이번 무역 요구를 맞추어 허락하는 청에 있어서는 여러 왜인들이 간청하는 바가 모두 신에게 관계되지만, 이미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다 또 명백하게 조목조목 진달하지 않는다면 실정을 토로하지 않는 죄가 있으니, 신은 여기서 더욱 도말할 바가 없겠기로 망녕된 말을 하였다는 벌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러러 진달하오니, 동 대구어(大口魚)의 수량을 맞추어 허락하는 편의 여부를 속히 해조에 명하여 다시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하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호두와 잣, 마른 대구 등의 물건의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역관을 시켜 대관왜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더니, 이전부터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반드시 수량을 줄이게 하였는데 이제 또 수량을 감하니 아주 매우 민망하여, 호두와 잣은 이제부터 사사로이 무역하여 보내어야 할 형편이고, 대구는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여 임시로 궁색한 걱정이 없게 하도록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는다고 하며, 더구나 이 무역하는 물건은 일일이 값을 치르고 모두 회록(會錄)하는 처지이니 그대로 허락하는 편리 여부를 속히 해조에 명하여 다시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라 하였는데, 저들이 빈번하게 요구하는 물건을 매양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나, 바야흐로 처음 올 무렵에 조금도 위협하는 태도가 없고, 이제 수량을

163) 피폐(皮幣): 가죽과 비단으로 이루어진 예물.

줄인 뒤로도 역시 쾌락하고 소홀한 기색이 없으면서 아득하다고 하는 말을 실로 실망한 소치에서 낭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본조의 전례를 가져가 살펴보니 이렇게 서로 버티다가 그대로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동 대구 100속의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을 본도에 알려 거행하라는 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5년(1674) 8월 28일 동부승지 신 우창적(禹昌績)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진 11월 초8일

동래부사의 장계. 운운. 이제 이번에 거제(巨濟) 지경으로 표류한 왜선 8척 및 본진의 앞 바다에 와서 정박한 유관(留館)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한 척을 아울러 인솔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에 “소인 등이 관수왜에게 가서 그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이제 봉행이 보낸 사신을 보니, 도주가 내년 정월에 에도로 가는데, 전날에 무역을 요청한 잡물을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에도의 집정 등에게 사용할 화려한 물건 또한 매우 부족하여 일이 매우 애가 타니, 모름지기 즉시 무역을 청하여 다음 달 그믐 이전에 전에 무역을 요구한 것을 재촉하여 들여주기를 천만 부탁한다고 하였다’ 하면서 발기를 내어보였는데, 옥대(玉帶) 30매, 각색 엄품(嚴品) 대사(大紗) 30필, 극상품 큰 인삼 50근, 극상품의 생삼(生蔘) 3근, 황모필 300자루, 대절참떡 30동, 대홍전(大紅氈) 50보, 붉은개가죽 50령 등이거늘, 근래에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니어서 극히 부당한데다가 각항의 중국 물건은 또 이렇게 많으니 종종 무역을 허락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말을 하여 타일렀더니, 관수가 답하기를 ‘전에도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때는 이국(異國)의 물건을 매양 허락받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근래에는 연소한 판사들이 오직 줄이는 데만 힘을 써서 반드시 막고야 마니, 전혀 성신(誠信)의 도리가 아니니, 오직 진달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없게 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않기에, 다시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일 반복하여 말하였더니, 관수왜가 대관 등을 불러 서로 논란하고서는, 비로소 근래에는 화려한 중국 물건이 희귀한 줄 알고서는 말하기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면 저희들도 말을 하여 도중으로 회보하겠거니와, 귀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여 기일에 맞추어 들여달

라'고 운운하거늘, 소인들이 답하기를 '인삼은 장사꾼들이 사사로이 파는 것 중에 좋은 품질이 또한 많으니 무역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개가죽과 붓과 먹의 무역 허가는 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대관왜가 말하기를 '인삼은 장사꾼들이 가지고 오는 가운데 가려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라고 하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귀국에서 산출되는 개가죽과 붓과 먹이라도 반드시 다음달에 맞추어 주되, 요즈음 이른바 황필은 형체가 적고 털이 거칠며, 이른바 참먹은 탁하여 정밀하지 못하니, 이번에는 각별이 정밀하게 만들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다이라노 요시마사[平義眞] 송사의 고쳐 쓴 별폭(別幅) 및 병진조(丙辰條) 1특송1호선과 동 특송2호선, 2특송1호선, 2호선, 다이라도 요시마사 송사선 합 5척 등의 노인 5통을 가져와 들이며, 세견 제1선1호선, 동 송사 수목선, 이떼이양 송사선 도합 3척은 규정 이외인지라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돌려보내라고 책망하였다고 회언한다" 하였음. 다이라노 요시마사 송사가 고쳐온 별폭 및 각 배의 노인 5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위 항목의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 8종 중 5종은 역관 등이 이미 다투어 고집하여 전량 줄였는데, 그 나머지 개가죽, 붓과 먹 등 3종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하게 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시기를. 근래에 도주의 무역 요구가 첩첩하여 실로 부응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물건 가운데 5종은 동래부에서 이미 막았거니와, 그 나머지 3종은 원래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그들의 바램에 부응함이 마땅하니, 황모필 300자루, 대절참먹 30동은 호조에 명하여 모양이 크게 만들어 속히 내려보내며, 붉은개가죽 50령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는 일로 아울러 알려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15년(1676) 11월 초8일 우부승지 신 정창도(丁昌燾)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 (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 (경성대 교수)
국역감수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위 원 : 최해균 (항토사학자)
" : 강대민 (경성대 교수)
" : 김준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 홍연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 13
國譯 倭人求請 謄錄(Ⅲ)

2006년 6월 20일 인쇄
2006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부산광역시
편 집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인 쇄 :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